

연구보고서 2016-3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류정희 · 이주연 · 송아영 · 이근영 · 이미진

【책임연구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송아영 가천대학교 교수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미진 건국대학교 교수

연구보고서 2016-3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발행일 2016년 12월 31일

저자 류정희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가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393-3 93330

발간사 <<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학대에 취약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구축되어 온 개별적인 학대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과 재편이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대상집단별 보호체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보호에 있어서 공공의 개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인식하고 조금씩 강화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었던 개별 인구집단의 학대 및 폭력의 위기를 사회구성원 누구든 생애사적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위기로서 접근하고 학대 및 폭력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폭력의 현상을 ‘생애경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에서 경험되는 주요한 폭력 및 학대를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로 유형화하여 이러한 폭력의 상호 관련성과 중복성을 분석함으로써 폭력의 전이 과정과 순환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을 생애경로를 관통하고 있는 공통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공통의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방식의 보다 통합적인 정책 개입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통합적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대상과 범위의 방대함과 분석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출발에서부터 한계를 가지고 시작한 작업이다. 압축적 근대화과정에 비례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결과 가족 및 사회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근대화의 과정을 담보하며 돌봄과 부양 및 복지의 기능을 수행해온 가족은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만나 위기에 봉착했다. 이러한 상황은 폭력과 학대 위험성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의 위기에 대해 공적 책무성을 가지고 위기가족과 그 취약한 구성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가를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폭력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현행의 학대 및 폭력에 대응한 보호체계는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노인 등 대상을 중심으로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의 중복적 피해경험에 대해 예방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전달체계 간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 학대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사회적 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개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정희 부연구위원의 연구책임하에 이주연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 전문가로는 가천대학교의 송아영 교수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근영 부연구위원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이미진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자문을 제공해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희 선임연구위원과 대구대학교 노성향 교수, 그리고 명지대학교 이재운 교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학대·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
제1절 변화하는 가족과 부양의 사회적 책임	31
제2절 생애경로적 접근방법(Life Course Perspective)	45
제3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49
제4절 소결	56
제3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유형별 고찰	61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및 방임	64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87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114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132
제4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163
제1절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166
제2절 가정폭력 중복피해	172
제3절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전이	174

제4절 소결	180
제5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 및 보호요인 분석	183
제1절 연구방법론	185
제2절 분석 결과	187
제6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대응정책 현황과 문제점	205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207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220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237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251
제5절 전문가 조사 분석	26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91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93
제2절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정책대응 방안	307
참고문헌	321
부 록	353
부록 1. 노인학대 경험률 및 발생률 관련 부표	353
부록 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표	366

표 목차

〈표 2-1〉 국가 개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	36
〈표 2-2〉 사회적 개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37
〈표 2-3〉 일반 성인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추세	44
〈표 3-1〉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 및 유형	68
〈표 3-2〉 아동체벌의 폐지	72
〈표 3-3〉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아동과 주 양육자 응답	74
〈표 3-4〉 아동학대 측정도구	76
〈표 3-5〉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폭력의 형태별 발생률(133개국)	80
〈표 3-6〉 아동학대 발생률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83
〈표 3-7〉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전체)	85
〈표 3-8〉 아동학대 발생 장소	87
〈표 3-9〉 학교폭력 유형	93
〈표 3-10〉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	99
〈표 3-11〉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	100
〈표 3-12〉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여부	104
〈표 3-13〉 국내 가정폭력 유형	119
〈표 3-14〉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120
〈표 3-15〉 부부폭력 유형	121
〈표 3-16〉 연도별 부부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	126
〈표 5-1〉 학대 영역별 검색어 및 문헌 수	187
〈표 5-2〉 아동학대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196
〈표 5-3〉 학교폭력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198
〈표 5-4〉 부부폭력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00
〈표 5-5〉 노인학대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01
〈표 5-6〉 전체 생애주기별 학대·폭력 관련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01
〈표 5-7〉 생애주기별 학대·폭력 관련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중복	204

〈표 6-1〉 조기지원 사례와 일반 사례의 비중	213
〈표 6-2〉 2017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예산	219
〈표 6-3〉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정책 분야 및 추진과제	225
〈표 6-4〉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2012년)	227
〈표 6-5〉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2014년)	229
〈표 6-6〉 부처 역할 및 주요 추진과제	230
〈표 6-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소요 예산 현황 추이	236
〈표 6-8〉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이후 개정 과정과 그 내용	237
〈표 6-9〉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2013년)	243
〈표 6-10〉 여성가족부 2016년도 세부 사업에 따른 예산안	250
〈표 6-11〉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서비스 현황(2015년)	257
〈표 6-12〉 노인학대 예방 대책의 3차원	260
〈표 6-1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예산(2016-2017)	265
〈표 6-14〉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 개요	266
〈표 6-15〉 전문가조사 응답자 특성	267
〈표 6-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 항목	268
〈표 6-17〉 전문가가 인식한 우리 사회 학대·폭력의 심각성	269
〈표 6-18〉 전문가가 인식한 지난 20년간 학대·폭력의 발생 추이	269
〈표 6-19〉 전문가의 학대·폭력 관련 실태조사 적절성에 대한 의견	271
〈표 6-2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3
〈표 6-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4
〈표 6-22〉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5
〈표 6-2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6
〈표 6-24〉 대상별 학대·폭력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P) 필요 여부	288
〈표 6-25〉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국가행동계획 수립 필요 여부	288
〈표 6-26〉 전문가가 보고하는 인구집단별 학대·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중복학대경험률	290
〈표 7-1〉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특성 비교	297
〈표 7-2〉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06

〈표 7-3〉 학대 및 폭력의 공통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319

부표 목차

〈부표 3-1〉 지역사회 노인의 학대 경험률: 한국,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연구들 353

〈부표 3-2〉 시설 내 노인 학대 발생률: 한국 및 주요 국가 361

그림 목차

[그림 1-1] 중복피해경험의 개념의 유형과 범위	23
[그림 1-2] 연구의 진행 절차	27
[그림 2-1]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태도	40
[그림 2-2] 가족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실태	44
[그림 3-1] 본 연구의 대상 범위	64
[그림 3-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65
[그림 3-3]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2001-2015년)	69
[그림 3-4]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2001-2015년)	70
[그림 3-5] 혼자 집에 있는 빈도: 주 양육자와 아동 응답	74
[그림 3-6] 응답자 유형에 따른 생애기간 신체학대 발생률	78
[그림 3-7] 응답자 유형에 따른 생애기간 성학대 발생률	78
[그림 3-8]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2001-2015년)	82
[그림 3-9]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2015년)	86
[그림 3-10] 학교폭력 전체 피해 응답률	96
[그림 3-11]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	97
[그림 3-12] 학생 천 명당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98
[그림 3-13] 최근 1년 학교폭력 피해율(2012-2014년)	101
[그림 3-14] 학교폭력 피해 유형(2013-2014년)	102
[그림 3-15] 최근 1년 학교폭력 가해율(2012-2014년)	102
[그림 3-16] 학교폭력 가해 유형(2013-2014년)	103
[그림 3-17] 학교폭력 피해 장소	108
[그림 3-18] 학교폭력 피해 공간(2014년)	109
[그림 3-19] 2014년 학교폭력 피해 공간(학교 안)	110
[그림 3-20] 2014년 학교폭력 피해 공간(학교 밖)	110
[그림 3-21] 학교폭력 피해 시간(2013-2014년)	111
[그림 3-22] 부부폭력(IPV) 국제 비교 지도	128

[그림 3-23] 국내 주요 연구를 통해 살펴본 노인학대 발생률 추이	153
[그림 4-1] 중복피해경험의 개념의 유형과 범위	165
[그림 4-2]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개념적 모델	168
[그림 5-1] 학대폭력 관련 선행연구의 시계열적 경향	188
[그림 5-2]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아동학대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0
[그림 5-3]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학교폭력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1
[그림 5-4]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부부폭력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3
[그림 5-5]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노인학대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4
[그림 6-1] 아동학대 및 방임 빙산이론(Child abuse and neglect Iceberg Theory)	211
[그림 6-2] 미국의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	214
[그림 6-3] 아동보호체계 현황	216
[그림 6-4]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책 연계망	232
[그림 6-5] 부부폭력 수사 과정 및 사법처리 절차	239
[그림 6-6] 부부폭력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41
[그림 6-7] 부부폭력에 대한 ONESTOP 대응 체계	242
[그림 6-8]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추진체계	256
[그림 6-9]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74
[그림 6-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77
[그림 6-11]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79
[그림 6-12]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81



Abstract <<

An Integrated Approach to Abuse and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Recently, the traditional family values have been weakened and the burden of care has been slowly moving out of the family.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ho formerly have been protected within the family need to be protected at the social level, and which is true for the victims of abuse and violence. Researchers have studied various issues on abuse and violence in Korea, yet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specific population groups, for example children, women and seniors.

This study aims to compare definitions, types, prevalence rates, characteristics as well as effects of abuse and violence at various stages of the life cycle and to find out common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shared at each stage. It includes the family violence such as child maltreatment,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elder abuse, and peer-violence and bullying at schools.

Each life stage shares some, whereas has distinctive aspects of its ow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buse and violence. Comm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were listed. Among the results of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 analysis, it is highlighted that one

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of the common risk factors across the lifespan is victimization experiences. Also, this study discussed various policy measures to prevent abuse as well as to reduce the prevalence of the violence among family member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잇달아 발생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가족이 담당해왔던 돌봄, 보호, 부양의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적 차원의 보호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학대·폭력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의 학대연구는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별 학대문제를 중심으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즉, 인구대상별 특수성에 기초하여 학대의 정의, 유형화, 보호서비스 및 정책대응체계가 구체화되어 발달해 왔다. 그러나 생애주기에 따른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학대·폭력은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긴밀한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폭력 및 학대의 다양한 유형 중 단일 유형의 폭력 피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단일 유형의 학대·폭력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접근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학대·폭력 피해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수준

4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인구대상 집단별 학대의 이해와 정책대응으로부터 나아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대·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생애 전반에서 가장 주요한 학대폭력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기의 아동학대,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청장년기의 부부폭력, 노년기의 노인학대를 포함하고 있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유형별 고찰

1) 아동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역사적 사회문화적 상대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는 대부분의 경우 학대로 인식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법 규정에 기초해서 볼 때, 국내의 아동학대 정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 위해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의 주요유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가정폭력의 노출을 포함한 정신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정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유

교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학대의 정의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와 체벌(corporal punishment)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체벌을 아동훈육의 한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해왔다. 국제적으로 절반 이상의 OECD 국가는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체벌을 불법적인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관련법을 도입해 왔으며, 2014년 기준 122개 나라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38개의 국가(스웨덴, 핀란드, 독일, 덴마크, 뉴질랜드 등을 포함)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였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정의에 있어서의 두 번째 특수성은 아동방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방치는 아동방임의 주요한 하위 유형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관습적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홀로 집에 방치되고 있는 아동과 관련한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는 아동방치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은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상이하게 나타난다. WHO에 의해 수행된 국제비교연구(2014)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경우 39개 고소득국가군에서 47%, 73개 중위소득 국가군은 45%의 높은 발생률을 보여준 반면, 21개 저소득국가군의 경우 14%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신고되고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로 아동학대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은 0.18에서 2014년 1.10, 2015년 1.32로 증가, 2001년 대비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실태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25.3~46.1% 수준으로 편차가 있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주로 부모(80% 이상)이었으며, 행위공간은 주로 가정 내로 나타났다.

2) 청소년기

학령기 청소년들은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학교 환경에 주목하여 다른 생애주기와 차별화되는 청소년기 대표적인 폭력 경험으로서 학교폭력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법률적으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러한 법률적 개념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금씩 시대 흐름이 반영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 변화되어 왔다(김소영 등, 2013). 학교폭력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 특유의 맥락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간의 다양한 교육제도·문화적 맥락 간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조대훈 등, 2013).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신체적, 언어적 또는 심리적 행동들을 모두 포함하며,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을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추행·성폭행, 강제심부름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학교폭력 유형도 외모와 체중에 대한 놀림, 신체적 폭행, 사이버 폭력, 협박 등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미국의 학교폭력 관련 유형에는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총기 소지, 살인, 마약 거래 등이 포함되어 우리나라와의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조대훈 등, 2013).

국내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를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률은 해마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조사별 편차가 큰 편(2014년 기준 1.4~14.7%)이므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주요한 청소년기의 문제로서,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피해율과 가해율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외국에 비해 특별히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집단 괴롭힘, 사이버 폭력 유형의 증가 등은 국외에서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특수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그 원인이 복잡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단순화시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김규태 등, 2013). 학교폭력으로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더 심각한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가해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 국내 주요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장소는 ‘교실 안’, ‘복도’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하교 이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일차적으로는 피해 청소년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만,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족, 목격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폭력의 결과와 영향은 이전 아동기 학대 경험에 따라 더욱 확대되기도 하고 청장년기 학대 경험 및 세대 간 전이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학대가 중복되고 순환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가정에서 신체적 언어적 아동학대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가정 밖의 학교환경에서 또래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재엽 등, 2008). 청소년기 학교폭력이

청장년기 폭력으로 전이되는 것과 관련해 학교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경험에 영향을 주며, 결혼 후 가정폭력(부부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김동기, 사공은희, 2007).

3) 청장년기

부부폭력의 높은 발생률로 미루어보았을 때 부부폭력은 한국인이 청장년기에 빈번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폭력 유형이다.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는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부부폭력은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해외의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와 차별성이 있다. 국내의 경우 ‘가정’이라는 환경을 기반으로 제한적인 정의를 따르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스토킹을 주요한 부부폭력의 유형으로 포함시키며 남성 피해자 역시 부부폭력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성관계를 넘어서 동성관계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부부폭력의 유형에 있어 국내외 차이점이 존재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부부폭력은 현재 신체적 폭력, 정서적인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 폭력으로 구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부부폭력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로 구분하여 고찰한 반면, 미국 CDC의 경우 부부폭력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스토킹 및 정서적 폭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WHO는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

제적 행위로 구분하여 부부폭력을 세분화하였다.

국내의 부부폭력률은 주로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를 활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WHO의 통제 및 방임 행위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만 19세에서 만 65세의 부부폭력률은 지난 일 년간 45.5%로 나타났으며, 지난 일 년간 부부 사이의 신체적 폭력은 7.2%의 발생률을 보여주었으며 정서적 폭력은 36.1%, 경제적 폭력은 5.0%, 성학대는 4.9%, 방임의 경우 26.2%, 통제의 경우 47.7%의 발생률을 보였다.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부부폭력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측정상의 한계점(측정도구의 차이, 시점의 차이,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

부부폭력의 행위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 관계(사실혼 포함)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반드시 성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공간의 경우 연구가 부족하나 주로 부부 혹은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생활공간일 가능성이 높으며 예외적으로 스토킹의 경우는 주거공간 이외의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부폭력은 학대·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중심에 존재하며, 가정 내에서 폭력이 학습되고 순환되고 있다. 즉, 아동기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성년기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 아동학대 피해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역시 데이트 폭력이나 부부폭력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대·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맥락과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 기존 학대의 세대 간

전이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의 유형에 따라 전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성별에 따라 폭력의 전이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폭력의 세대 간 전이 효과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은 성인기 폭력 행위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며, 세대 간 전이 효과를 어렵게 만드는 보호요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노년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인학대의 정의와 관련해 학대행위자(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 노인학대에 포함되는 학대행위/유형의 범위(자기방임 등), 노인/노년기의 정의, 시설 내 학대와 가정 내 학대의 차별성, 시설 내 거주자 간 학대(resident-to-resident abuse) 등의 쟁점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노인학대는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

국내 연구 중 전국 자료를 분석하여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률을 보고한 연구들은 노인의 약 10%가 지난 1년간 노인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시설 내 학대 발생률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연구 결과마다 편차가 매우 커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국외의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률은 아일랜드가 2.2%로 가장 낮았고, 이집트(농촌지역)가 43.7%로 매우 높게 나타나 발생률의 격차가 매우 컸

는데, 이러한 격차는 조사 국가의 차이뿐만 아니라 노인집단의 연령 기준, 발생기간, 포함된 학대 유형 및 정의의 차이,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구 등 실질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시설 내 학대에 대한 국외 연구는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양적·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가정 내 학대 발생률에 비해 편차가 더 컸다. 학대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0%가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자기보고, 목격률이 70% 내외였으며 노르웨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는 87%, 목격률은 91%에 달하였다.

나.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전 생애과정에 걸쳐 학대·폭력의 경험은 피해-가해의 경험을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학대·폭력의 구조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한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다수의 아동들이 복수유형의 아동학대 및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복피해의 경험은 단일 형태 또는 유형의 학대·폭력을 경험한 아동에 비하여 전 생애 기간 동안 건강, 발달상의 부정적인 영향(예: 우울 및 심리적 불안증, 실업,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을 통하여 학대·폭력의 전이(Transmission of violence)가 발생한다. 아동학대-학교폭력 간의 관계성 연구는 일관되게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 경험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노인학대의 관계성 연구 결과는 노인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된 폭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폭력의 세대 간 전이현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대의 중복성 및 순환성 관련 일련의 선행연구 분석은 가정 내 다양한 폭력들은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성 및 순환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 및 보호요인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학대 영역별로 국내문헌연구의 계량적 서지정보를 추출하고 키워드 사이의 구조(빈도 및 관계)를 분석하여, 다빈도로 출현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맵을 통해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공통점과 차이를 파악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의 출현빈도의 시계열적 경향성을 살펴보았는데, 각 학대 및 폭력의 영역에서 주요한 입법화 시점이 학술논문 건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학대의 공통된 위험 및 보호요인과 관련한 분석 결과, 모든 4개의 폭력 및 학대 유형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차원의 위험요인은 가정폭력,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각 학대 유형별 관련법,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이 보호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3개 영역에 걸쳐 중복된 위험요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격성, 스트레스,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 장애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차원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경찰, 피해자 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이 보호요인으로 드러났다.

라.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예방 및 보호정책 현황

학대 및 폭력의 유형별로 법적, 제도적 대응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전문

가 조사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 정책 접근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책 개입의 근거로서 각 학대 유형별 법제화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에는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을 통해 신고를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이 점차 강화되었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관련한 법제화 과정은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으로 이를 근거로 지원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2012년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2011년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학교폭력은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청장년기 부부폭력의 법제화 과정은 다른 학대 및 폭력 유형보다 가장 빠르게 시작되었다. 1997년 말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어 1998년 시행되었으며 현재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의 법률안은 2016년 3월 2일에 개정되었다. 노인 학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노인학대 방지와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등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둘째, 각 학대 유형별 사회적 보호체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이슈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인력 등 공적 보호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의 미비가 가장 주

요한 문제점이다. 예를 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학대 피해자의 발굴, 보호, 조치, 사후관리의 전과정에 전문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각 전문보호체계는 폭력과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운영되어 공공성과 책임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로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치료 등 학대·재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현행 사회적 보호체계는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아동학대에 배정된 국비는 185억 원에 그쳤고,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예산은 178억 원, 노인학대보호예산은 6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3,61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비중을 높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이 발생하며 이러한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족이 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본단위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현행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는 “피해자 지원만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학대의 순환구조에서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 전체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가족 관련 전달체계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학대의 예방, 발생, 최초 개입에서 종료 및 사후 관리까지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아동보호체계, 노인보호체계, 청소년 보호체계, 부부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 현행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체계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가족서비스 제공 관련 체계 간 정보공유 및 협조 관계 제고를 위한 프로토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생애 초기에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므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학대 및 폭력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학대와 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학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미비한 데에 있으므로 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공공성 확립이 시급하며,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주요 용어: 학대, 폭력, 학대중복피해, 학대의 순환구조, 학대의 전이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잇달아 발생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아동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급격한 산업화와 가족주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가족주의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학대 및 폭력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부모 부양과 보호의 책임은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부양의 책임 주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담당해 왔던 가족주의의 변화는 보호와 부양의 책임 주체에 대한 논의에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주의는 ‘선성장 후분배 전략’으로 요약되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을 담보하는 기제였다.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가족은 국가의 경제성장 과정에 동원되어 양육, 부양과 보호의 일차적 책임과 복지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시기로의 전환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노동시장불안정 등으로 빈곤과 삶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폭력의 위험성은 (사

회) 불평등에 비례한다(the greater inequality, the greater the risk of violence)”는 정칙처럼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분노의 비등점은 하락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용인성은 커지고 있다. 특히 기능 과부하 상태의 피로한 가족의 위기와 갈등은 학대 및 폭력의 증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불안정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 고용에 따라 가족은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위기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혼, 가출 등 이른바 가족해체 등으로 나타나는 가족구조의 불안정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약화되고 붕괴된 결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완충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이 담당해 왔던 돌봄, 보호, 부양의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적 차원의 보호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학대 및 폭력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이 개인의 생애 전반에 미치는 치명적이며 장기적인 영향과 그 결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직접적 간접적 비용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학대연구는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별 학대문제를 중심으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즉, 인구대상별 특수성에 기초하여 학대의 정의, 유형화, 보호서비스 및 정책대응체계가 구체화되어 발달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학대는 폭력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긴밀한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로부터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한 통합적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대상별 학대 및 폭력 경험이 가진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동학대, 청소년·학교폭력, 배우자학대(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경험되는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역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권력의 의도적 사용과 위협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폭력을 “자기 자신, 타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힘 또는 권력의 의도적인 사용과 위협이며 결과적으로 상해, 죽음, 심리적인 해, 발육불량 또는 결핍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상원, 이양희, 2014, p.29).

둘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대상별로 분절화된 폭력의 경험을 생애과정에 따라 형성된 연결고리를 통해 역동적이고 복잡한 학대 및 폭력의 순환구조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아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과정에 걸쳐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교차하여 반복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학대 및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또래폭력, 따돌림, 청소년비행 등 다양한 청소년기 폭력의 중복경험(가해-피해를 아우르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점차 아동기 학대 중복피해경험은 생애사적으로 청장년기,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가정 내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폭력 및 학대의 다양한 유형 중 단일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단일 유형의 학대 및 폭력을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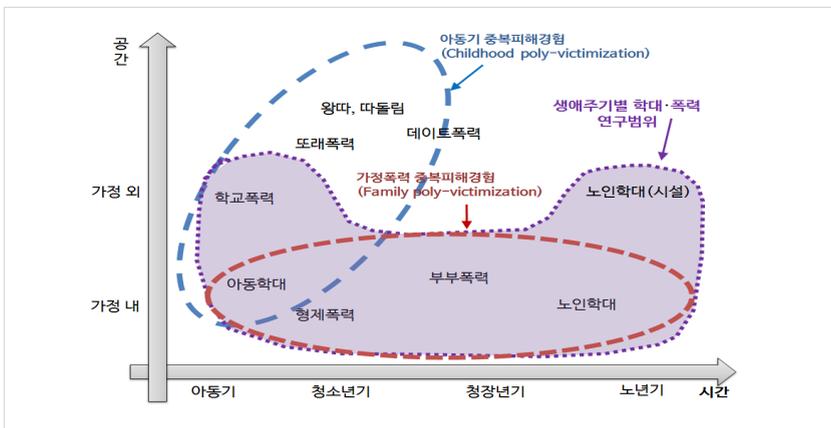
으로 하는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접근은 생애과정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 피해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 가지 학대의 피해 경험은 새로운 다른 학대 피해 경험의 전조이거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학대 경험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로인을 가진 취약가정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분석단위로 단일 유형의 학대만을 포함하는 경우, 중복피해의 경험과 증상을 단일 유형의 학대와 연관 짓게 되기 때문에 피해 경로와 수준에 대한 정확한 관련성을 밝히기 어렵다.

단일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과 비교할 때, 중복학대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이며, 전 생애에 걸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Finkelhor et al., 2007; Saunders, 2003;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CDC, 2010), 중복학대피해 아동의 규모를 밝히고 부정적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밀접한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생애주기 상 다양한 유형의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 개입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다양한 폭력 및 학대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며, 경제적인 불평등, 알코올 중독과 부적절한 양육 등은 아동학대, 청소년·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영역으로 분화되어 발전해온 기존의 학대에 대한 접근에서 나아가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인구대상 집단별 학대의 이해와 정책대응으로부터

나아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생애 전반에서 가장 주요한 학대 및 폭력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기의 아동학대,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청장년기의 부부폭력, 노년기의 노인학대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학대, 부부폭력과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애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이다. 학교폭력은 학령기 아동의 주요한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또래폭력으로 폭력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치명성, 그리고 아동학대 및 부부폭력 등과의 중복성 및 전이성 등을 고려할 때 생애사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폭력의 주요한 유형으로서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요한 폭력경험(아동학대+학교폭력)과 가정 내의 폭력 경험(아동학대+부부폭력+노인학대)을 생애과정에서 따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중복피해경험의 개념의 유형과 범위



연구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학대 및 폭력의 순환구조에 대한 탐색은 폭력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폭력의 순환구조는 피해자 측면과 가해자 측면이 교차하는 등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조를 이루며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전이현상(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측면의 경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정폭력 및 아동기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중복“피해”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포함하는 학대 및 폭력의 생애사적 전이를 포괄적으로 추적하는 가정폭력 중복경험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된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학대 및 폭력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본 보고서 전체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학대·폭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생애경로적 관점, 사회학습이론으로 나누어 학대 및 폭력의 전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는 데 할애되었다.

제3장은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형태별 연구로 채워져 있다.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의 학대 및 폭력 경험을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 있다. 각 학대 유형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학대 및 폭력이 정의되는지 그 사회문화적 상대성 또는 특수성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국내외 학대 현황 및 실태를 학대의 측정 방식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은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를 중심으로 학대 및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분석들을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피해(Childhood poly-victimization)와 가정폭력 중복피해(Family poly-victimization)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기 학대 및 방임의 경험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과 연관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복피해의 경험을 통해서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전이(Transmission of violence)를 특징으로 하는 학대 및 폭력의 순환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제5장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학대·폭력에 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을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아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공통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예방 및 보호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각 대상 영역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화 현황과 보호제도 현황, 예산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및 보호, 대응정책 현황 및 통합적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분석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연구 결과가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정책 대응을 마련하는 데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첫째,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개념과 유형, 발생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선행연구는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포괄하며 아동학대, 청소년·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폭력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학대현황과 측정도구 등의 국제적 동향 비교를 위하여 다양한 해외의 보고서와 연구자료 등이 비교분석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연구자료는 WHO의 Violence and Injury Prevention과 미국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University of Hampshire와 Department of Justice의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JVQ) 등을 포함한다.

셋째, 국내외 학대 및 폭력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이 진행되었다. 분석된 데이터는 2001-2015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데이터,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4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실태조사,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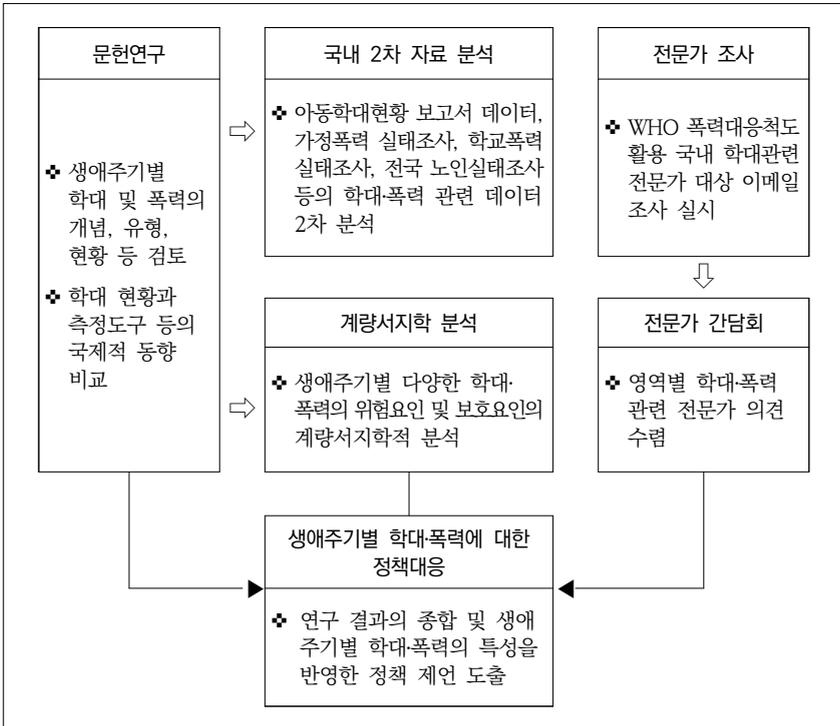
넷째, 생애주기별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분석을 위하여 계량서지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학대 유형별 포괄적 검색어로 관련문헌을 수집하여 키워드의 빈도와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고 간접관계 가중네트워크 처리 과정을 거쳐 검색어 사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 아동학대 및 방임, 학교폭력, 가정폭력, 노인학대 예

방정책 및 법제도의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3년 WHO에서 실시했던 violence response measures를 활용하여 학대 유형별 법제화 및 예방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문가그룹은 특정 학대 영역의 현장실무자, 관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여섯째, 본 연구의 접근이 학대 및 폭력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통합적 접근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관련분야 연구자로 구성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 쟁점 사항과 정책대응과 관련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림 1-2] 연구의 진행 절차





제 2 장

학대·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변화하는 가족과 부양의 사회적 책임

제2절 생애경로적 접근방법(Life Course Perspective)

제3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제4절 소결



2

학대·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제1절 변화하는 가족과 부양의 사회적 책임

1. 압축적 근대성과 가족주의

가족은 사회를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가족주의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담보해 온 중심 가치이며, 사회전반에 확산된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다. 서구에서 2-3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던 경제 성장과 사회변동을 불과 50여 년 동안 압축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동력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가족주의로부터 찾을 수 있다(장경섭, 2006).

가족주의는 가족제도를 중요시하는 전통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가족주의는 가족을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로 하며 개인은 가족을 통해서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장경섭(장경섭 등, 2013)은 가족주의의 형성적 특징을 기초로 이념적, 상황적, 제도적 가족주의로 구분한다. 이념적 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족주의 규범 및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가족주의를 의미한다. 상황적 가족주의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출현하여 도구적으로 작동하였던 가족주의로, 예컨대 군부 쿠데타, 산업화로 이어지는 급격한 격동 속에서 한국인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는데, 이때 작동한 것이 상황적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가족주의는 규칙 및 정책, 자원배분과 지배구조의 관행 등 제

도적 차원에서 가족적 차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생존방식을 지속시킨다(장경섭 등, 2015).

이처럼 경제, 사회, 정치, 문화에 걸쳐 가족중심성은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주의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체화시켜 나가는 일종의 기제”로 작용했다. 즉,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정에 동원되었으며 양육 및 교육과 부양 등 국가가 사회적으로 담당해야 했던 복지기능까지 담당해 왔다(최선영, 장경섭 2012; 유한희, 2015). 개발지상주의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 전략은 복지체계의 설계에 있어서는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유교적 가족부양 규범의 강화를 의미했다. 유교적 가족복지는 가족성원의 상호부양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 복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대신 가족은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의 부양과 보호를 위한 재정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 가족은 심각한 가족피로(Family fatigue)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한국 자본주의가 압축적 산업화를 거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시기로 전환되면서 가족기능의 과부화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신자유적 구조조정에 따라 비균질적인 일자리의 취약성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어졌고 한층 심화된 삶의 불안정성과 빈곤은 여성노동자, 저숙련 노동자, 청년실업자, 한부모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리하여 가족의 위기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가족은 긴장 및 폭력의 심화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족의 불안정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가출 등 이른바 가족 해체현상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탈가족화가 야기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학대·폭력의 증가현상은 가

족규범의 퇴락과 가족구조의 급속한 불안정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학대 및 폭력을 줄이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족이 수행해 왔던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사회와 국가가 분담하고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족과 국가의 책임분담에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국가 및 사회의 개입의 수준과 정도는 사회문화적 상대성을 가진다. 국가의 책임성과 개입의 상대성은 아동, 노인, 여성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인구집단의 의존성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2. 보호와 부양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인구집단을 아동, 여성 및 노인 등으로 구분하여 그 집단의 취약성 및 돌봄 및 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와 책임성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아동의 사회적 보호

오늘날 아동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적절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미숙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적이다. 현대 심리학에 의해 형성된 발달특성을 중심으로 한 아동기의 개념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아동기는 아동이 살고 있는 시공간에 의해 그 특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아리에스(2003)에 따르면, 중세에는 오늘날과 같은 아동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청소년의 개념도 특화되지 않는 등 아동들은 이른바 “의명의 상태”에 있었다. 아동이라는 용

어가 근대적 의미로 정립된 것은 17세기 중반 이었는데 이는 대중교육의 확립과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근대가족의 형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생기기 전 아동들은 7세부터 도제교육을 받았으며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근대 초, 학교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아동기가 발견되었으며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핵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이 형성되었다. 즉, 보편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됨으로써 아동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부모의 훈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아리에스, 2003). 아동기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원하고 느리게 진행된 혁명”처럼 발견되었고 근대적 가족의식이 형성되면서(Neil Postman, 1994; 정선아, 2002에서 재인용) ‘아동보호’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7세기 이전 아동은 성인과 동등하게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는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인식되었으며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했다. 아동기의 확립과 함께 수반된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은 대중교육에 편입되지 못한 아동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력착취 문제를 초래했으며 이에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근대적 아동권리운동(rights of child movement)이 시작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아동 삶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19세기 중반 아동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이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도입되었으며 아동을 자신의 사적 전유물로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다(엘킨드, 1999). 이후,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사회적 인식으로 오랫동안 작동해 왔으며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의 채택에 이르러서야 아동은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되게 되었다. UN 권리협약 및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보호의 개념은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향유할 권

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박세경 등, 2005, p.69).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보호 역시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 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의 책임을 갖는 주체와 그 역할에 대한 규정이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의 책임과 의무는 가족과 국가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가족(부모) 역할의 경계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국가와 가족의 공동책임성에 대하여 두 가지 대별되는 입장이 존재하는데 권위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이 그것이다. 권위주의적 아동보호는 국가는 가족생활과 가족 내에서의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중재 및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동보호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국가와 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아동학대나 폭력 등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위협을 받을 때에만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private troubles)를 공적인 문제(public issues)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비로소 가족 내의 부모-자녀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세경 등, 2005).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오랜 동안의 유교적 전통을 토대로 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적 아동보호에 대한 접근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순종을 강조하고 아동을 어른이 마음대로 좌우해도 좋다고 간주하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치관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김유경, 2008; 이봉주 등, 2007; 윤희미, 1997). 그 결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 훈육과 동일시되고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혜미(1997)는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소득수준, 교육정도, 자녀의 수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자각의 정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1-2명일 때,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때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74%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부모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거나 아동보호를 위해서 언제라도 제한 가능한 것으로 응답했다. 사회적 개입의 방향에 대해서는 가정 내 자체(32.6%)보다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응답(67.4%)이 우세했으며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경찰 구속에 대해서는 반대(54.4%)가 찬성(17.6%)보다 3배 이상 높ی 나타났다.

〈표 2-1〉 국가 개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응답예	전체(%)
부모의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4.0
극한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21.9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다	64.5
아동보호를 위해서 언제라도 제한가능하다	9.6

자료: 윤혜미(1997).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인식조사. p.410에서 재구성.

〈표 2-2〉 사회적 개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문항	응답 범주	전체(%)
아동학대 개입 방법	가정 내 자체	32.6
	외부 개입	67.4
치료와 처벌에 대한 태도	아동 치료 중심	68.1
	가해자 처벌	31.9
법적 대응에 대한 태도	민사만	48.2
	민사, 형사상	51.8
격리보호에 대한 태도	찬성	82.5
	모르겠다	11.5
	반대	6.0
치료명령에 대한 태도	찬성	84.9
	모르겠다	10.6
	반대	4.5
경찰 구속에 대한 태도	찬성	17.6
	모르겠다	28.0
	반대	54.4
프로그램 우선순위	법 제정	12.0
	아동보호기관	29.0
	부모치료기관	38.6
	인식혁신	18.7
	기타	1.7

자료: 윤혜미(1997).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인식조사. p.413에서 재구성.

보다 최근의 사회조사 결과로는 200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가 전 연령대 시민 1천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아동권리는 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권과 관련하여 학대·방임 및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베리타스, 2009; 홍순혜, 2014). 이는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고 2001년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이후 우리 사회 아동학대와 아동

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한 변화를 보여준다. 즉, 아동학대를 더 이상 남이 개입할 수 없는 가정 내부의 일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학대 위기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나. 여성의 사회적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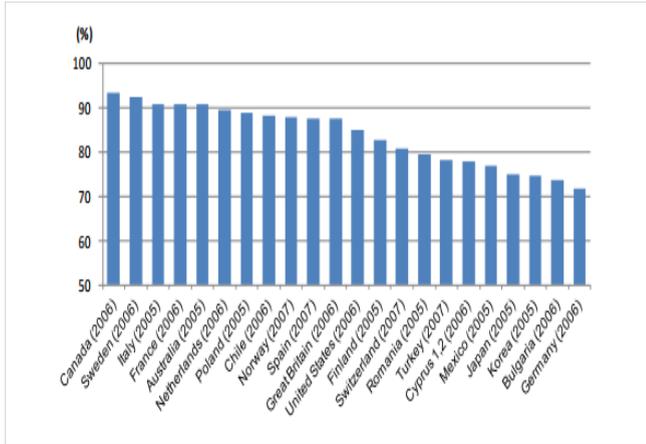
부부폭력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부폭력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폭력이 낯선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Davis, 2008).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부부폭력은 사회적인 문제 혹은 사법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사적인 가족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아동옹호운동, 시민권운동, 여성주의운동 등 사회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부부폭력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공적인 문제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Davis, 2008).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으로 명명되기도 하는 부부폭력문제는 민주주의의 발달, 여성주의의 신장, 그리고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발전이라는 배경 속에서 주요한 사회정책의 한 과제로서 인식되어왔다(Htun & Welton, 2012). 특히 1970년대 전후로 활발하게 진행된 여성주의 운동에 따른 여성인권의 신장과 사회적 활동의 확대는 부부폭력을 사회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만드는 데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다(Copelon, 2003; Htun & Welton, 2012; Riveram 1996). 여성주의

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불평등, 가부장적 가치관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배경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 및 접근성과 관련한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한다(Dobash & Dobash, 1979). 성불평등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 및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부부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거나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신장,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여성주의 운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 역시 성불평등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여성주의의 신장과 사회적 활동의 확대는 부부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회적 이슈화에 기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의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부부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과 관련한 주요 현안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Htun & Welton, 2012), 다른 인권 이슈에 비해 발전이 비교적 늦은 편이며, 현재까지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피해 여성에 대한 인식은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성주의의 신장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나 그 사회적 인식의 수준은 국가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2-1]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태도



주: '여성을 때리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에 대한 찬성하는 비율을 의미함.

이는 [그림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시한 [그림 2-1]을 살펴보면 '여성을 때리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에 대한 국가별 태도 차이가 막대그래프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OECD 국가별로 이를 비교하였는데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이에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독일, 불가리아, 한국, 일본, 멕시코 등은 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약 74% 정도만이 이에 찬성하였으며 26% 정도의 인구는 여성을 때리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WHO(2013)에서 보고한 부부폭력 발생률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즉, 고소득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주로 보이고 이는 또한 낮은 부부폭력 발생률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의 부부폭력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2013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13년 실시되었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부부폭력 유형별로 나누어 부부폭력의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는데 그 응답이 흥미롭다.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부폭력이라고 95.1%가 응답하였으며 배우자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은 86.3%로 경제적 폭력에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82.6%, 성폭력의 경우도 82.4%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부폭력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방임에 해당하는 문항은 69.7%로 부부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부폭력인식률이 모든 문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조사에서 가정폭력 관련법 및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인지도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본 법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부부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부부폭력이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구체적인 처벌 조항에 대한 인식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의 인식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그림 2-1). 부부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은 결국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부폭력 주요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인식, 부부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부부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사회적 합의는 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부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법 제정 및 사회적 대응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서구사회에서 부부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운동의 기여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주의 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그 성과로서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 설립이 이루어지게 된다(허민숙, 2011). 이는 사적 공간에서 머물던 부부폭력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토대로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부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가정 내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기존에 강력하게 유지되던 가사불개입(家事不介入)원칙이 근본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성홍재, 2011).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성홍재(2011)는 부부폭력이란 문제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부폭력에 대한 이슈가 공론화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요약하면, 부부폭력에 대한 공적 개입은 여성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기초로 하며,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부폭력은 더 이상 사적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법적 대응이 가능한 범죄행위로서 규정되는 공적 문제로서 인식되어졌다.

다. 노인의 사회적 보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경로효친'의 가치관이 보편적이고 지배적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내의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쇠약하고, 나이가 들에 따라 지적, 인지적인 능력이 약화된다고 인식하고 있다(한정란, 2000; 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이윤경, 2007). 노인차별은 노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에 기인하며(Cook and Kunkel, 2006) 노인학대 역시 노인 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상이다.

노인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노인을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년기 취약성으로 인해 도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온정주의적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형 노인학대 유형 정의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이윤경 등, 2015), 일반노인은 타 연령층에 비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설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38.4%, 긍정적인 응답 36.2%로 나타나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 중심에서 노인과 국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2002년 사회조사에서는 노인부양이 가족책임이라는 응답이 70.7%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2014년에는 이 범주의 응답이 31.7%로 절반 이상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44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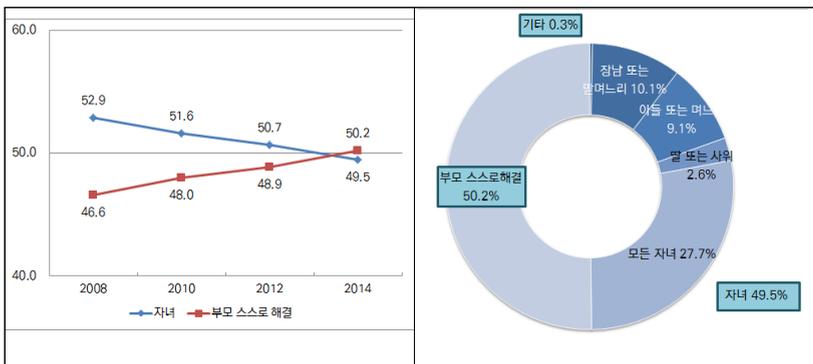
〈표 2-3〉 일반 성인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추세

	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 사회	정부 사회	기 타
2002	100.0	9.6	70.7	18.2	1.3	0.2
2008	100.0	11.9	40.7	43.6	3.8	0.0
2010	100.0	12.7	36.0	47.4	3.9	0.0
2012	100.0	13.9	33.2	48.7	4.2	0.0
2014	100.0	16.6	31.7	47.3	4.4	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결과.

노인부양에 대한 견해의 변화와 맞물려 가족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실태를 보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노인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201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가 가구주 부모의 생활비를 제공한다는 응답률은 2008년 52.9%에서 49.5%로 하락한 반면, 노부모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응답률은 2008년 46.6%에서 50.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가족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실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노인의 80% 이상이 거의 모든 노인학대 문항에 대해 노인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정경희 등, 2010). 그러나 노인학대 목격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에 노인 중 30.2%만이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0.0%는 직접 도움을 주거나 29.6%는 그냥 지나친다고 응답하였다. 2008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피해 노인들의 대응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역시 대응하지 않음이 약 60%, 끝날 때까지 참음이 15.0%인 것으로 나타나 절대 다수가 노인학대에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애저, 2008).

인권과 관련한 노인보호의 책임을 묻는 조사에서는 노인보호의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였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형 노인학대 유형 정의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이윤경 등, 2015), 일반 성인과는 별도로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은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65.1%에 달하였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부양이 가족책임이라는 입장에서 가족과 국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추세이며,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성인과는 다른,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생애경로적 접근방법(Life Course Perspective)

학대 및 폭력의 양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코호트, 기간, 연령(aging) 효과 등의 시간적인 변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학대의 결과와 원인이 단선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순환구조임을

고려할 때 학대에 대한 생애경로적 관점의 접근은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생애경로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는 생애발달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며,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 환경적 요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김정석, 2007; Allen et al., 2000; Elder, 1998). 생애경로이론은 인간의 발달 및 노화는 생애 전체에서 지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전 생애에 걸친 발달이론인 동시에 인간 발달의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는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생애경로이론은 학대의 시간적 맥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생애경로 관점은 학대에 대한 이론적 틀로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생애경로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과거가 현재에,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며, 생애과정을 학대 및 폭력과 같은 중요한 생애사건들의 연속 및 이행 과정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생애과정경로(life course pathway)에서 발생한 선행사건은 그 생애사별 특성에 따라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있는 아동의 빈곤과 학대의 경험은 중장년기 성인의 학대 및 폭력의 경험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와 연관될 수 있다. 이처럼 생애경로적 접근은 개인의 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 생애과정경로(life course pathway)를 통시적으로 포괄함으로써 개인발달의 역동성(dynamics)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둘째, 생애경로이론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인간발달의 과정을 개인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한다(McDonald, 2011). 개인의 생애과정이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구현된다고 보는 생애경로적 접근의 이론적 관점은 학대 및 폭력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의해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압축

적이고 역동적인 고성장시대를 거쳐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과 가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는 삶의 불안정성은 가족갈등과 긴장, 폭력의 심화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생애경로적 접근은 개인과 가족 간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이 어떤 전이(transitions)와 궤도(trajectories)¹⁾에 따라 가족 간에 연계되어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즉, 생애경로이론은 가정 내 부부폭력의 간접적인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이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되거나 아동학대의 피해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한 후 자신의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 부모가 되는 세대 간 전이 등을 설명해 준다.

또한, 전이 과정이나 발달궤도에 대한 이해는 노년기 학대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는 연령규범, 가족역할의 전이, 세대 간 돌봄 및 책임의 변화양상 등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비정상적인 전이나 발달궤도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갈등관계가 강화되면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자녀를 갖는 등의 독립적인 가정생활을 가지지 못하는 성인 자녀는 노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성인 자녀가 반대로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전도 역시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긴장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중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애경로적 접근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잘 연계시킬 수 있으며, 정책이 미치는 영향, 동년배 효과, 기간 효과, 타인과의 관계 등

1) 이행은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위(status) 혹은 상태(state)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행은 학대 및 폭력 같은 단일한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일련의 사건이 상호연결되는 방식-시점, 순서, 기간(spread)-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궤도는 이행보다 장기적인 것으로 다수의 이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기되고 궤적 간에는 상호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문혜진, 2010, p.354).

을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생애경로관점은 다른 이론이나 모델에 포함되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학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스트레스이론에 생애경로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면,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현시점이 아닌 학대 피해 노인과 부양자 간의 생애과정을 고려하여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부양자가 노인을 부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인과 부양자 간의 현재 의존성의 역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 학대행위자와 노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Wolf, 2000). 실제 노인학대 사례를 보면 과거 피해 노인이 가족부양에 성실하지 않았고(예: 외도, 이혼 등) 이로 인해 성인 자녀들이 노인을 부양할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 방임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런 사례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 생애사의 부정적인 사건(예: 자녀의 돌연한 죽음)이 노인의 의존성, 취약성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인이 심리적으로 취약해짐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자기방임을 행한다는 설명 역시 스트레스이론에 생애경로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설명이다.

생애경로관점을 학대 및 폭력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적 학대 경험을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나, 국내외 연구에서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종단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국내의 연구에서 이전 생애 경험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장미희, 박창기(2012)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 41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대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언어·심리적 학대를 받을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 질적 연구들은 노인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된 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유진, 2015; 전지형, 강선경, 2015). 김유진(2015)에 의

하면 노인학대는 오랜기간 지속되었던 가족 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들은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문제, 이혼이나 미혼 등을 노인의 탓으로 돌리고, 주로 술을 마신 후 폭력을 휘두른다. 어떤 사례에서는 남편, 아들, 손자에 의해 폭력을 당한 여성 노인도 있었다. 전지형, 강선경(2015)은 폭력의 세대 간 전이현상이 있음을 질적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송영민(2003)은 학대 피해 여성에 대한 생애사적 고찰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존성'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를 포착하고, 이 변화와 학대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제3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학대에 대한 이론은 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세대 간 폭력의 전이, 사회학습이론은 학대현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폭력을 학습한 결과로 학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학습된 폭력가설(the learned violence hypothesis)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해 폭력이 사용되는 것을 경험, 관찰한 아동은 성인이 된 후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폭력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사회 심리적 발달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발달의 부정적인 결과는 성인기에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의 가족에게 폭력 및 학대를 행하게 되는 등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한동희, 김정옥, 1994; 한은주, 김태현, 1997; Gordon & Brill, 2001). 또한 학대의 양

상은 상호학대(mutual abuse)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중년기 여성이 학대나 폭력의 피해자인 것과는 다르게 남성, 여성 노인 모두 아동학대를 받고 자란 성인 자녀로부터 학대받을 수 있다(Kosberg, 1998; Gordon & Brill, 2001에서 재인용). 시설 내 학대행위자는 가정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illemer & Moore, 1989)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경험은 가족 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전반에 폭력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학습되고 세대를 통해 전이된다는 주장은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으며,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이는 몇 가지 경험적 연구에서도 뒷받침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Sengstock과 Liang(1982)의 연구에서 디트로이트의 노인학대 사례 77건 중 약 10%는 가족 간의 상호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Jones et al., 1997). Reay & Browne(2001)의 연구에서는 19개 노인학대 사례를 신체적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학대행위자가 아버지로부터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신체적 학대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다른 연구로서 Korbin, Anetberger, Austin(1995)은 23명의 노인학대 행위자와 21명의 아동학대 행위자를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의 행위자들은 공통적으로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비해 강도 높은 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Korbin et al.(1995)은 세대 간의 폭력순환이 노인학대보다는 아동학대에 더욱 유용한 이론적 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시간적인 근접성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성인이 부모가 되어 학대를 하는 데에는

20-30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는 반면, 아동기에 학대받은 성인이 노부모를 학대하는 것은 약 40-5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이기에 행위자의 아동학대 경험 이외에 보다 많은 다른 요인들이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학대 행위자와 노인학대 행위자의 차이는 Korbin et al.(1995)의 지적처럼 기억의 차이일 수 있다. 세대 간 폭력전이로 인해 아동학대 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다 널리 퍼져 있는 반면, 세대 간 폭력전이와 노인학대와의 연관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 Korbin et al.(1995)은 이들 두 집단의 차이를 폭력에 대한 세대, 연령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단순히 훈육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인정이 보다 용이한 데 반해, 노인에게 대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애주기별 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그 원인으로 보았다.

세대 간 폭력전이와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까지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소규모 표본의 연구 결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어린 시기에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당수 노인학대 행위자는 노인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학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이론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국외연구에서도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사람은 노인을 학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자녀를 학대하는,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근거가 제시되기도 하였다(Payne, 2002).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폭력의 세대 간 전이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아동기 학대 경험

이 대인관계에 있어 폭력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Lachs & Pillemer, 2004;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실제 국외 연구에서는 대규모 표본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경험적 근거가 발견되었다. 2년간 수집된 버지니아주의 2142개의 학대 사례의 대규모 표본을 분석한 Jackson & Hafemeister(2011)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는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특징과 함께, 신체적 학대 피해 노인이 아동기에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방임의 피해 노인 역시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타 학대와 경제적 학대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학대 피해 노인 역시 오랜 기간 학대를 받아 오고,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 반면 경제적 학대만을 경험한 피해 노인은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이 연구 결과는 신체적 학대, 방임과 경제적 학대의 위험요인은 이질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노년기 신체적 학대, 방임의 위험요인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전국 노인학대자료를 분석한 결과(Acierno et al., 2010)에 의하면 IPV나 가정폭력과 같은 트라우마적인 생애사건을 경험한 노인이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나 성적 학대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같은 트라우마적인 사건과 노인학대의 원인에 공통분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학대 피해 여성 노인에 대한 질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리뷰한 Finfgeld-

2) 다만 신체적 학대는 다른 위험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는 트라우마적인 생애사건이 위험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방임이나 경제적 학대 역시 트라우마적인 생애사건과는 관련이 없었음.

Connett(2013)에 의하면 많은 학대받은 여성들은 가정폭력이 여러 세대 간 문제였던 가정환경에서 살아왔으며, 여러 가지 형태(신체적, 성적, 언어적 학대 등)의 학대를 받아왔다. 오랜 기간 학대를 받아 온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라왔고 젊은 시절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학대에 대해 논의하는 걸 꺼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름의 적응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힘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신체적, 성적 학대는 줄어드는 반면 심리적 학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노화와 함께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대두되면서 의료서비스의 혜택 등을 악의적으로 부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대문제가 생겨났다.

한편 아버지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라난 성인 자녀들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학대나 폭력을 종식시키지 못했던 어머니를 원망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부와 유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노인들은 자신이 양육을 위해 희생해 왔던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학대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대 피해 여성은 자신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많은 여성들이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그들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모멸감을 느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학대 상황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으며, 외부 도움의 요청은 학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학대 피해 노인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경찰은 노인학대에 개입하기를 꺼렸으며 서비스 기관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운전 등을 할 수 없는, 이동상의

문제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오랜 학대로 인한 후유증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노인부부는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이기에 관계의 단절이 쉽지 않은 특성을 보였으며, 남성학대행위자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장기간에 걸친 학대의 역학관계가 바뀌기도 하였다.

국내 연구 역시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해 주는 근거들이 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고 자란 행위자가 노인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은, 2004; 배진희, 정미순, 2008). 조애저 등(1999)의 연구에서 학대행위자의 28%는 가정폭력을 목격하였고, 20.0%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호(2002)의 연구에서도 학대행위자가 학대를 목격한 경우는 19.6%이고,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2013에서 재인용). 이미진, 김혜련(2016)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이 노인학대 위험요인이라는 경험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가정폭력 경험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 사회학습이론을 검증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사회학습이론은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 배우자 학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노인부부의 폭력을 연구한 국내 연구에서는 폭력 가해자는 과거에 폭력을 행사한 경험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이후 노년기 폭력 가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승용, 2002; 이서원, 조성상, 2005; 최정혜, 2000). 더 나아가 노인부부의 폭력을 조사한 최정혜(2000)의 연구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두 아동기 부모로부터 폭력을 받은 피해 경험이 노인학대 피해 경험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

나라 학대 피해 노인은 과거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가정폭력 실태를 분석한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직업의 유무는 아내 구타와는 연관이 없는 반면 과거 아내 구타 경험이 있었던 남성 노인은 그렇지 않은 남성 노인에 비해 가정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노년기에 갑자기 발생하기보다는 이전의 폭력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현재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가족력, 생애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자료를 분석한 이현주(2013)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대행위자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형제자매로부터도 학대를 받았으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아픔을 갖고 있었다. 형제자매들과 가해 자녀와의 관계는 마치 동화의 미운 오리새끼의 형제들처럼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성인 자녀 학대행위자는 학대 경험으로 인해 피해 노인에 대해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 노인에 대한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학대행위자는 알코올중독 이거나 배우자, 자녀, 노부모에게 동시에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배우자와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행위자들은 이러한 삶의 실패를 노인의 탓으로 여기고 있었다.

학대의 발달은 가해자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배우자 가출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가해 자녀와 피해 노인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부터이며 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강도 높은 신체적 학대가 발생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 피해 노인은 신체적 폭력의 두려움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자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가해 자녀는 노부모로부터 과거 아동학대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어 하지만 노부모는 사과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노부모는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길 바라고 자식과의 인연을 유지하고 싶은 소망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노인학대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는 다양하게 발견되었지만, 단순히 아동학대-가정폭력-노인학대 사이의 인과관계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예컨대, 성인기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의 많은 사례는 학대행위자의 유년기 학대가 경험만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4절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시기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급격하게 약화되고 다양한 사회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해왔으며, 사회의 학대 및 폭력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WHO에 의하면 폭력(violence)을 “물리적 힘 또는 권위의 의도적인 사용, 위협이나 혹은 실제적 사용을 모두 포함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사용이나 다른 사람 혹은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한 사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손상, 죽음, 심리적 해, 발달 저해 혹은 박탈 등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WHO는 폭력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자해·자살 혹은 이러한 시도 및 자기학대 등 자신에 대한 폭력, 둘째, 가족구성원 혹은 파트너 간의 폭력과 학교폭력, 시설 내 폭력 등 타인 간의 폭력을 포함하는 대인 간 폭력, 셋째, 사회적 갈등에 따른 집단 간 폭력, 전쟁 등 정치적 폭력, 경제

적 폭력 등을 포함하는 집단 간 폭력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그중 두 번째 범주인 가족과 타인을 포함하는 타인 간 폭력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생애경로적 접근은 개별적이고 대상별 접근의 분절성을 넘어 학대의 순환적 구조(Cycle of violence)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나 가정 내 폭력은 일반적인 의미의 집단 간 폭력에 비하여 연속성, 습관성, 순환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그 순환성의 고리는 일련의 생애사적 과정에 대한 종단적 접근을 통해서만 분석되어질 수 있다. 즉, 생애발달적 관점은 가족을 주 단위로 하여 가족의 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역동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생애사적 접근은 다양한 대상별로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는 폭력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폭력의 요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생애경로적 접근은 가족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아동의 청소년기 생애발달과정에서 ‘학교’라는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학령기 이후 아동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며, 선행연구는 가정과 학교 공간에서의 폭력 및 학대 경험의 전이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에서의 학대 및 폭력경험은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원 간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폭력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반면, 청소년기 학교에서의 폭력 및 학대의 경험은 폭력의 수평적 전이를 특징으로 하며 가정폭력과 대별되는 고유한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주 공간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 및 학대 경험을 중심으로 생애경로적 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사회화습이론은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학대 및 폭력의 기제를 설명하

고 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Violence begets violence)”는 언명이 시사하듯 아동기 사회화과정에서 경험된 폭력 및 학대는 학습되고 내면화 또는 외면화된다. 가정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의 권력불평등은 가정이라는 생활공간 내에서도 반영되고 구조화되어 작동한다. 오랫동안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외면되어 왔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학대는 권력관계에 기초한 지배나 억압의 사회적 관계가 가족 내 연령별 위계와 성별 차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 의식세계가 생활경험을 통한 사회적 학습에 의해 재구성된다고 보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3)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경험되는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중복학대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동기의 경험이 생애사 전반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성년기에 이르러 부부폭력 또는 노인학대(부모학대)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학습이론은 이를 폭력의 내면화와 모방학습의 측면에서 해석한다. 즉, 아동은 학대 및 피해의 경험을 통해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도덕적으로 내면화하고 폭력의 전략 및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의 학습과 내면화 과정을 거친 아동은 성장기에 가정 또는 외부세계나 사회에서 분노와 좌절, 무력감에 직면했을 때 가족원에 대한 가해행위나 폭력으로 학습된 폭력의 경험을 외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폭력 피해자로서의 예측성, 순응성, 수동성, 무력감을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성인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능력을 결여한 채 습관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사회학습이론은 생애사 전반을 관통하는 학대 및 폭력의 연속적 순환구조를 통해 작동하

는 기제를 설명해 줌으로써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제 3 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유형별 고찰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및 방임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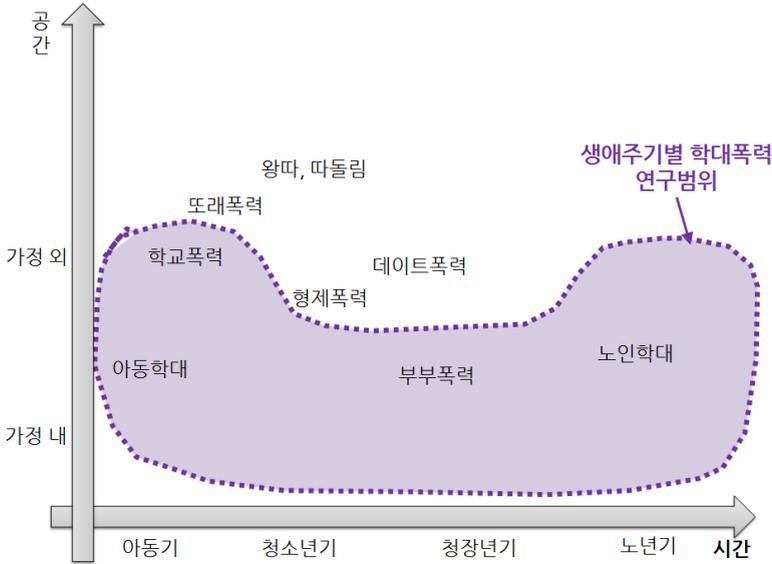
3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유형별 고찰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주요 유형들은 아동기의 아동학대,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청장년기의 부부폭력, 노년기의 노인학대 등을 포함한다. 아동학대,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은 공통적으로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과거 가정폭력은 ‘아내구타’와 동일시되었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김문조, 1998).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해당사회의 폭력성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가족구성원이 생애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의 주요 유형인 아동학대 및 방임, 부부폭력,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을 유형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가정 내 폭력과 함께 생애주기별 아동발달과정에서 아동들의 주생활공간이 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한다.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아동의 보호권 중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학교폭력으로 인터넷, 휴대전화의 확산에 따라 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 복수충동에 의한 2차 피해의 가능성(홍순혜, 2014) 등 학교폭력이 낳을 수 있는 폭력의 반복적 순환성을 고려할 때 생애주기별 주요한 폭력 유형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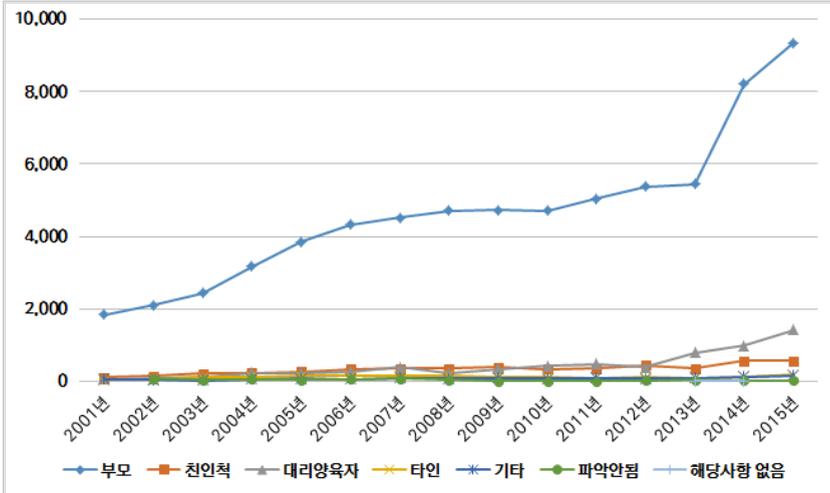
[그림 3-1] 본 연구의 대상 범위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및 방임

본 연구에서 아동기의 학대·폭력경험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폭력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약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부모가 주 학대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와 함께, 형(언니)의 어린 동생에 대한 형제폭력 등이 아동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폭력 유형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한다.

[그림 3-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

1. 정의 및 유형

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상대성을 가진다. 아동양육과 보호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사회적 차이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는 데 주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책임의 정도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특정 사회의 고유한 가치와 태도에 따라 다양하며 보편타당한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회·문화적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는 대부분의 경우 학대의 명확성으로 인해 학대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학대의 개념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졌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초기에는 주로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 가해지는 신체적 상처

에 중점을 두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나, 점차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와 부적절한 수준의 양육 및 보호를 포함하는 방임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훈육 등과 같이 약한 정도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해서는 국가 및 사회, 집단별로 학대에 대한 인식수준과 용인의 정도에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안재진 등, 2011).

세계보건기구(WHO)의 폭력에 대한 정의는 UN의 아동폭력연구(Global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등 다양한 학대연구의 준거로 활용되어 왔다. WHO에 의하면 “폭력은 자기 자신, 타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힘 또는 권력의 의도적인 사용과 위협이며 결과적으로 상해, 죽음, 심리적인 해, 발육불량 또는 결핍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WHO, 2002; 김상원, 이양희, 2014). 이러한 정의에 근거해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은 부모의 의도성과 상관없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해악을 미치는 직접적인 가해행위(act of commission) 또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비행위(태만)(act of omission)로 정의된다. 의도성(intent)은 학대를 정의하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며, 학대의 주요유형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와 방임(neglect)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가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주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Gilber et al., 2009).

일본의 경우 2004년 아동학대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을 개정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며, 나아가 부부폭력을 목격하는 것까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이상희, 하승수, 이혜원, 2008).

국내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는 것과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서 아동방임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법 규정에 기초해서 볼 때, 국내의 아동학대 정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 위해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주요유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가정폭력의 노출을 포함하는 정신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수정, 이재연(2011)은 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을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 호주, 캐나다, 대만, 일본, 한국에서 신고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4가지 유형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국가에 따라서는 가정폭력노출(일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 부모의 약물남용(미국 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주), 아동포르노그라피

를 포함한 성 착취(미국, 캐나다, 대만), 유기(한국, 대만, 캐나다, 미국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등 추가유형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국내의 아동학대 유형별 정의는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표 3-1 참조). 아동학대의 하위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는 아동방임은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등 다른 모든 형태의 학대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모든 유형의 아동학대(act of commission)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인 반면, 아동방임(act of omission)은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인 비행위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아동방임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호교차적(intertwined) 특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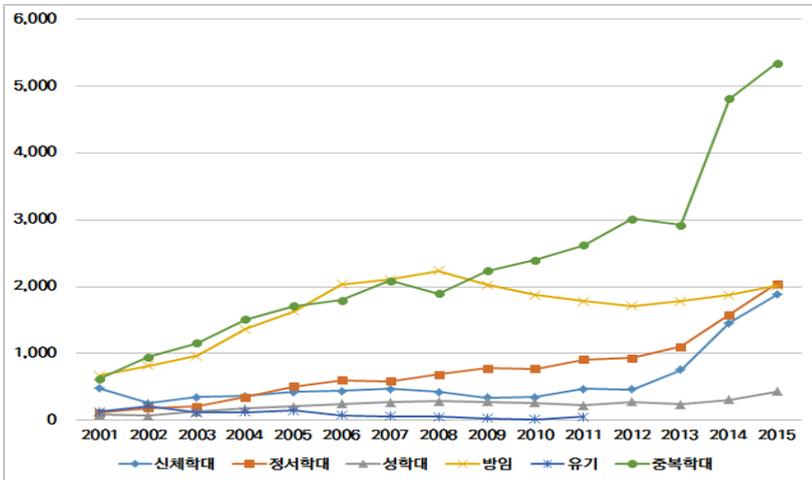
〈표 3-1〉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 및 유형

유형	정의	
신체학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포함됨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포함함	
성학대	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방임	물리적 방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협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
	교육적 방임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의료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
	정서적 방임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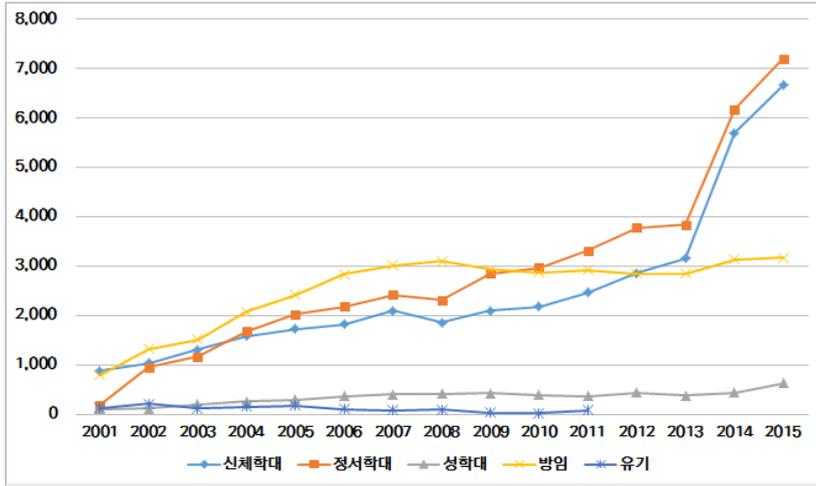
중복학대는 이처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이래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발생 추이를 비교해 보면 중복학대의 급격한 증가가 특징적이며, 중복학대를 제외했을 때 방임과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가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발생하였다. 한편, 중복학대를 미분류했을 때 2009년까지는 아동방임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학대 유형이었으나 2010년 이후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 신체학대가 뒤를 이어 발생함으로써 2012년 이후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의 순으로 유형별 학대 발생률이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그림 3-3]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2001~2015년)



주: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그림 3-4]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2001-2015년)



주: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다. 국내 아동학대 정의의 특수성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정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유교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학대의 정의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와 체벌(corporal punishment)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체벌을 아동훈육의 한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해 왔다. “훈육은 단체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시키거나 규율위반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의 교정”을 의미하며 “체벌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써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corporal punishment)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학 사전, 1995;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p.14 재인용). 훈육 목적의 신체적 처벌은 학대행위로 인식되지 않고 관대하게 수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훈육이라는 의도성이 신체적 학대행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윤혜미, 1997). 그러나 아동학대의 보편적 정의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의도(intent)에 상관없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위해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Straus는 체벌이 아동에 대한 위해의 의도는 없었으나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여전히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로서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행동교정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Straus, Physical Violence in families and the welfare of children, 1997; 윤혜미, 1997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체벌은 학교에서만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훈육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로 구분되어지는 반면, 36개월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체벌만이 신체학대에 포함된다(이유진 등, 2014). 국제적으로 절반 이상의 OECD 국가는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신체적 처벌을 불법적인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관련법을 도입해 왔으며, 2014년 기준 122개 나라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38개의 국가(스웨덴, 핀란드, 독일, 덴마크, 뉴질랜드 등을 포함)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였다(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체벌의 법적 금지는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 행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olotor and Puzia, 2010).

7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표 3-2〉 아동체벌의 폐지

	제정법 유형	도입연도		제정법 유형	도입연도
호주	0	-	한국	0	-
오스트리아	1	1989	룩셈부르크	1	2008
벨기에	0	-	멕시코	0	-
캐나다	2	-	네덜란드	1	2007
칠레	0	-	뉴질랜드	1	2007
체코	3	-	노르웨이	1	1987
덴마크	1	1997	폴란드	3	-
에스토니아	2	-	포르투갈	1	2007
핀란드	1	1983	슬로바키아	2	-
프랑스	0	-	슬로베니아	2	-
독일	1	2000	스페인	1	2007
그리스	1	2006	스웨덴	1	1979
헝가리	1	2004	스위스	0	-
아이슬란드	1	2003	터키	0	-
아일랜드	3	-	영국	0	-
이탈리아	1	1996	미국	0	-
일본	0	-			

주: 0 - 아동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거나 알려지지 않음, 1 - 특별법(specific legislation), 2 - 특별법을 계획하고, 초안을 작성하거나 검토 중, 3 - 비특별법(non-specific legislation)

한국 사회 아동학대 정의에 있어서의 두 번째 특수성은 아동방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방치행위와 관련해 단순하고 일괄적인 나이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적 제재에 앞서 부모들이 아동을 홀로 둘 때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아동에게 적절한 관리감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아동방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부적절한 감독의 규정은 아동의 나이, 성숙도, 물리적 상황, 부모부재 시간의 길이, 가정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미국의 3개 주에서 아동방치와 관련한 최소연령 규정을 명문화시키고 있는데, 예컨대 일리노이에서는 14세 미만, 메릴랜드에서는 8세 미만, 오리건에서는 10세 미만의 아동이 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영국의 경우 아동의 방치행위와 관련하여 나이와 관련한 법적 제재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https://www.gov.uk/law-on-leaving-your-child-home-al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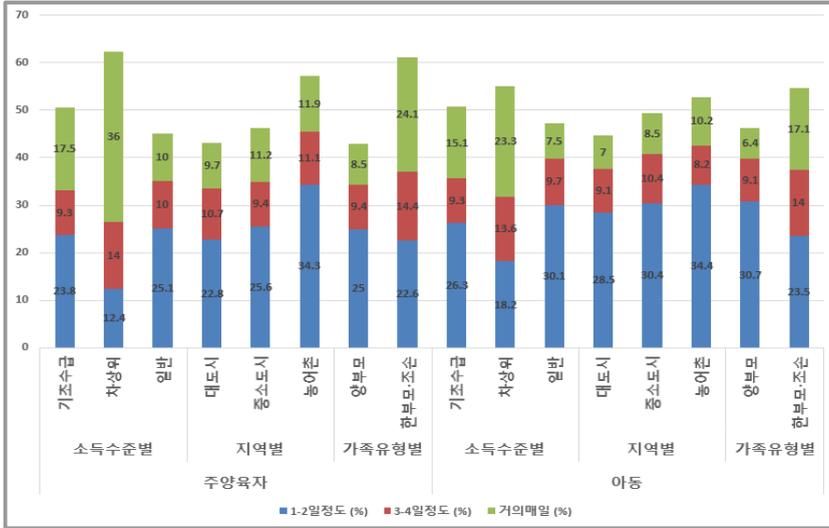
- 12세 미만의 아동은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있기에 충분히 성숙하지 않음.
- 16세 미만의 아동을 밤새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됨.
- 영유아는 홀로 있어서는 안 됨.
- 아동이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보호 감독되지 않고 방치될 때 부모는 법적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아동방치는 아동방임의 주요한 하위 유형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방치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관습적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홀로 집에 방치되고 있는 아동과 관련한 최근의 실태조사는 아동방치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아동방치를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주 양육자는 45.5%에 이르렀으며, 아동의 경우 47.5%가 나 홀로 집에 있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으로 나누어 보면, 차상위 가구(부모: 62.4%, 아동: 55%)가 아동방치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음으로는 한부모 조손가족(부모: 61.1%, 아동: 54.6%), 농어촌지역의 가구(부모: 57.3%, 아동: 52.8%)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는 아동은 양부모보다 한부모·조손가정아동이 3배 정도 많았다. 방과 후 나 홀로 시간에 대해서

74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는 아동의 20% 이상이 한번에 3시간 이상 혼자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3-5] 혼자 집에 있는 빈도: 주 양육자와 아동 응답



자료: 보건복지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혼자 집에 있는 빈도: 아동 응답, 주 양육자 응답,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13_H242&conn_path=I3dptj.

<표 3-3>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아동과 주 양육자 응답

(단위: %)

방과후 홀로 보내는 시간	아동	주 양육자
1시간 미만	46.7	48.2
1-2시간 정도	31.0	31.5
3-4시간 정도	16.6	15.6
4시간 이상	5.8	4.7

자료: 보건복지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아동과 주 양육자 응답,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13_H242&conn_path=I3dptj.

2.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

가. 발생률

1) 학대 현황 추정방법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발생률은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상이하게 나타난다. 부모나 형제자매에 의한 학대, 부부폭력 등 학대 및 폭력의 목적, 학교폭력, 따돌림, 지역사회폭력 등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된 아동학대 및 폭력연구의 경향성은 아동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나 연구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상원, 이양희, 2014). 아동학대 발생률의 추정은 학대의 조작적 정의의 차이뿐만 아니라, 학대 측정지표 및 선별도구, 조사설계, 조사 대상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의 발생률은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정확한 빈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아동학대 발생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이에 기초하여 아동학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과 대응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아동학대의 측정과 관련한 방법론적 이슈들은 크게 학대 측정지표, 조사방법과 응답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의 측정지표는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정서·심리적 학대로 구분되는 아동학대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측정도구는 Straus et al.(1998)에 의한 Conflict Tactics Scales(CTS)의 부모-아동버전으로 6-20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과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문항

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Assessment(CAPA)-Traumatic Life Events section과 Service Utilization and Risk Factors(SURF) 등도 각각 9세-16세, 9세-17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경험에 대한 주요한 조사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아동학대 측정지표의 가장 큰 이슈는 해석의 문제에 있다. 예컨대, 체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명확하게 신체적 학대로 규정하기 어렵다. 또한 방임은 일회적인 보호 및 돌봄의 태만 또는 부주의가 아니라 일정한 패턴과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자기보고를 통해 입증하기 어렵다(Hamby & Finkelhor, 2001).

〈표 3-4〉 아동학대 측정도구

도구	지역 사회/ 학교 폭력	가정 내 아동 학대	간접적 폭력 목격	성학대	문항수	응답자 연령	생애 또는 기간	발생률 데이터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Assessment (CAPA): Traumatic Life Events section	X	O*	X	O	4	9-16	생애	O
Conflict Tactics Scales(CTS): Parent-Child version(Straus et al.,1998)	X	O*	X	O	33	6-20	생애/기간	X
Service Utilization and Risk Factors(SURF)	X	O*	X		8	9-17	생애	X
ICAST								

주: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질문 문항 구성함.
 자료: Hamby & Finkelhor(2001). Choosing and using child victimization questionnaires.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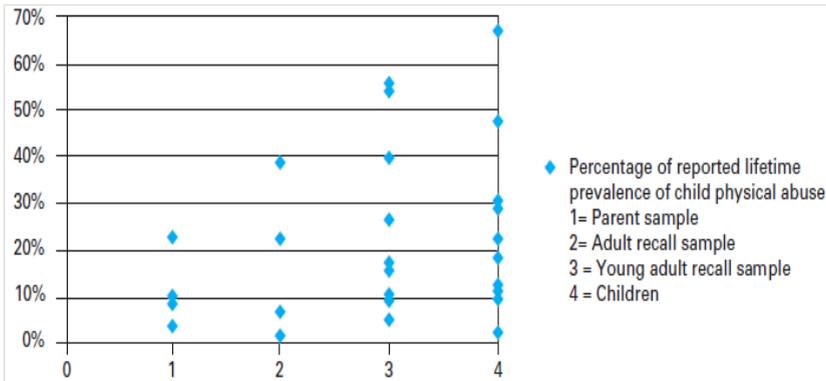
둘째, 아동학대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하나의 요인은 조사방법이다. 인터뷰 방식은 노동집약적이고 높은 비용을 요하며 응답자에게

아동학대 피해 경험 등 사적인 문제를 노출해야 하는 강한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기입식 설문(self administered surveys)은 아동·청소년 응답자의 연령제한이 따르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9-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질문지는 가장 단순한 포맷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집되는 정보의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조사설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전향적 종단연구(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이나 이는 특히 아동학대 연구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이에, 대안으로서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학대 경험을 보고하는 후향적 회고연구방법(retrospective recall method)이다. 과거에 학대의 경험이 있음에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답을 하는 사회적 반응경향(social response bias)의 영향으로 학대받은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는 거짓 부정(false negatives)의 오류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Pereda et al., 2009; 김아림, 탁영란, 2016). 또한 성인의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에 대한 회고적 측정(retrospective recall method)은 회상,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적인 경험 등을 함으로써 어린 시절 경험의 정확한 시점과 구체적인 기억의 어려움(Hardt & Rutter, 2004)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는 현재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가, 보고의 정확성 및 부정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Widom, Raphael & DuMont, 2004). 예를 들면 현재의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과거의 부정적 학대 경험을 건강한 사람보다 강하게 기억하며 자신의 과거 학대 경험을 우울증, 약물의존성 등 현재의 문제점들과의 연관성을 과장할 수 있다(Widom, Raphael & DuMont, 2004). 이처럼 자기보호에 기초한 회고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응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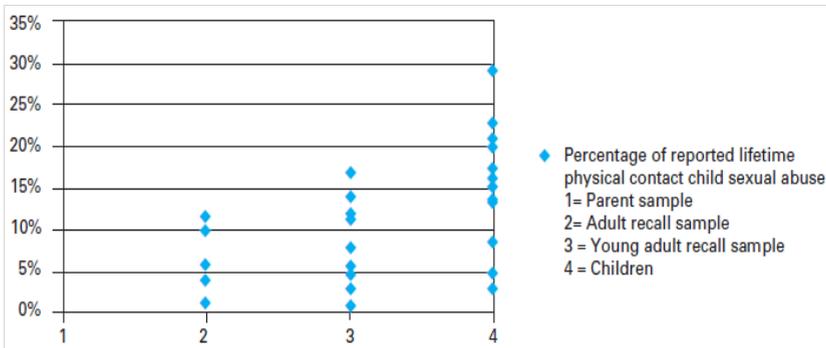
타당성과 거짓부정의 오류 가능성이 실증연구에서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ardt & Rutter, 2004).

[그림 3-6] 응답자 유형에 따른 생애기간 신체학대 발생률



자료: UNICEF(2012). Child Maltreatment-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그림 3-7] 응답자 유형에 따른 생애기간 성학대 발생률



자료: UNICEF(2012). Child Maltreatment-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발생률은 응답자의 유형(아동, 성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과 [그림 3-7]에서 나타나는 응답자 유형에 따른 발생률의 차이를 보면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보고가 성인의 보고보다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학대 발생률의 국제 비교

이처럼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한 학대 발생률 추정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아동학대 발생률의 국제 비교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reporting), 조사(investigating), 범주화된 학대(categorizing abuse)의 상이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률 추정은 학대의 범주화된 대상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OECD, 2011). 이러한 여러 가지 아동학대 실태 파악의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아동학대 지표를 개발하고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OECD국가의 아동학대와 방임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on agencies)에 신고된 아동학대신고율(annual rates of reported child maltreatment),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판정된 비율(rates of substantiated maltreatment), 부모 또는 아동의 자기보고에 기초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모두 다른 편차를 가지고 나타났다. 연간 아동학대 신고비율은 영국 1.5%, 캐나다 2.2%, 호주 3.3%, 미국 4.8% 수준으로 나타났다(Gilbert et al., 2009). 아동학대로 판정된 비율은 캐나다가 2.2%로 가장 높았고, 이스라엘 1.8%, 미국 1.2%, 네덜란드 0.4%, 영국 0.2% 순으로 나타났다(Euser et al., 2010). 한편, 아동 혹은 부모가 심각한 자녀폭력을 자기보고(self-reporting)한 연간비율은 핀란드, 이탈리아, 뉴

질랜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 내에서 4%에서 16%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성적 학대의 경우, 아동생애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학대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을 기초로 성적 학대로 보고된 비율은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는데, 여아의 경우 1~49%, 남아의 경우 1~28%로 나타났다(Pereda et al., 2009).

다른 한편으로, WHO에 의해 수행된 국제비교연구(2014)는 전 세계 133개국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성폭력, 청소년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의 영역에 걸쳐 학대 및 폭력의 발생률을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의 경우 39개 고소득국가군에서 47%, 73개 중위소득 국가군은 45%의 높은 발생률을 보여준 반면, 21개 저소득국가군의 경우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주요하게는 국가의 소득수준별 국가적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신고 및 보호체계의 구축 수준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공적 아동보호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진 고소득군의 국가에서 아동학대 발견율(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ی 나타날 수 있다.

〈표 3-5〉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폭력의 형태별 발생률(133개국)

(단위: %)

Type of violence	High-income	Middle-income	Low-income
Armed violence	13	11	10
Child maltreatment	47	45	14
Elder abuse	34	11	5
Intimate partner violence	58	62	38
Sexual violence	47	53	52
Youth violence	47	18	14
Survey covering all types	45	27	14

3) 국내 아동학대 발생률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아동학대 발생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신고되고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매년 아동학대현황(2001-2015)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실태 파악에 있어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2015년 개정 아동학대법 이전에는 병원이나 경찰서 내에서만 처리되고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견율은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크다(정익중 등,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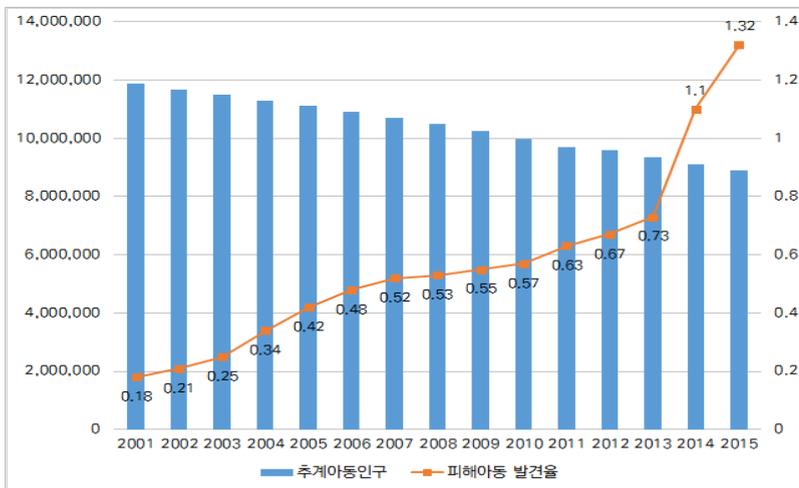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보고된 전국아동학대(2001-2015) 현황 분석 결과, 아동학대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은 0.18에서 2014년 1.10, 2015년 1.32로 증가, 2001년 대비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를 의미하며 “아동인구 1000 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를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사, 조치된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고위험도의 학대 피해 아동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위험도의 학대위기에 놓인 아동의 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그림 3-8 참조).

부모 또는 아동에 의해 보고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가정폭력실태조사(2013)를 포함한다. 첫째, 아동학대실태조사는 Straus et al.(2009)에 의해 개발된 Conflict Tactics Scales Parent-Child Version(CTSPC)을

8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활용하였다. 대상자(아동, 주 양육자), 학대 기준(제한적, 포괄적 기준), 학대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발생기간(연간학대, 평생학대)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5.3%(만 0-6세는 주 양육자 응답, 만 7세-18세 미만은 아동 응답 기준)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이 1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서적 학대(10.9%), 신체적 학대(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는 중학생의 발생률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발생률이 19.9%로 가장 낮았다. 아동이 보고한(만 7-18세 미만)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제한적 기준으로 27.5%, 포괄적 기준으로 60.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 양육자가 보고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제한적 기준에 의해 25.1%, 포괄적 기준에 의해 55.6%로 나타나 아동이 보고한 학대 발생률보다 낮았다(표 3-6 참조).

[그림 3-8]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2001-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

〈표 3-6〉 아동학대 발생률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전국아동학대현황조사 (2001-2015)	아동학대실태조사 (2011)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가족폭력실태조사 (2013)
대상	-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학대의심사례	- 아동(만 7-18세 미만) 아동 및 주 양육자 - 미취학아동(만 0-6세)의 경우 부모의 대리응답	- 아동(만 9-18세 미만) 아동 및 주 양육자 (전 연령대)	- 아동·청소년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척도	-	부모-자녀갈등척도 (CTSPC)	부모-자녀갈등척도 (CTSPC)의 간략본	부모-자녀갈등척도 (CTSPC)
전체 N	8,885,533명	5,051명	4,002	1,015명
발생률				
학대 피해 아동 전체	0.13	25.3	42.2	46.1
신체학대	0.07(37.7%)	7.1	11.9	18.3
정서학대	0.08(40.7%)	10.9	6.1	42.8
방임	0.03(18.0%)	15.4	40.7	5.0

주: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아동학대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가족폭력실태 조사의 결과를 재구성.

둘째,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는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조사로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아동성장환경, 발달주기별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2013년 두 번 조사가 이루어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아동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직접 가구방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방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Straus et al. (1998)이 개발한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Conflict Tactics Scale-Parent Child: 이하 CTSPC) 중에서 방임과 관련된 질문 5문항, 신체학대 관련 5문항, 정서학대 관련 3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조사 결

과, 아동방임의 발생률이 정서적 학대와 신체 학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아동(9-18세)이 보고한 경험률(피해)은 방임 40.7%, 정서학대 11.9%, 신체학대 6.1%로 나타났으며, 주 양육자가 보고한 경험률(가해)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임 38.4%, 정서학대 8.8%, 신체학대 3.9%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피해 및 가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방임 및 학대 발생률이 취약계층에서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를 근거로 2007년 이래 3년 주기로,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부부폭력, 부모·형제자매 등에 의한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등 가족 내 학대 및 폭력에 의한 피해를 포괄하고 있다(황정임 등, 2014). Straus et al.(1998)의 PCCTS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중 신체폭력 관련 8문항, 정서폭력관련 2문항, 방임관련 4문항, 총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2013년 실시되었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응답자’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는 46.1%를 차지했고, ‘응답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는 31.3%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응답자에 의한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가 42.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신체적 학대가 18.3%로 나타났다. 응답자 배우자의 자녀학대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28.8%, 신체적 폭력이 10.1%로 나타났다.

〈표 3-7〉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전체)

구분	자녀폭력 발생률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분석 대상수)
		경한폭력	중한폭력	경한+중한 폭력			
내가 자녀에게	46.1	17.5	4.8	18.3	42.8	5.0	(1,380)
배우자가 자녀에게	31.3	9.8	2.6	10.1	28.8	3.8	(1,333)

자료: 황정임, 강동욱(2013).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통해 본 자녀학대 실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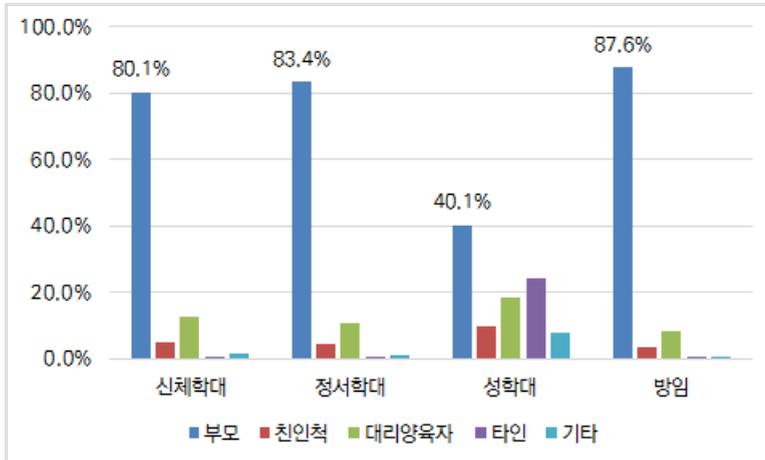
나. 행위자-피해자 관계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및 기타로 구분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2015년 기준 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79.8%에 이르렀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학대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임 사례의 경우 부모의 방임비율이 87.6%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학대의 경우 83.4%, 신체학대는 80.1%의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친부 또는 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9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부/모 또는 양부/모의 비율은 나머지 6%에 불과했다. 부모의 빈곤, 실업, 낮은 교육수준은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9 참조).

가해자와 관련하여 가족구성원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3분의2 이상인 2012 전국아동학대보고서와 달리 김상원, 이양희(2014)의 연구에서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뿐 아니라 또래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었다. 2012 전국아동학대보고서에서 아동과 비슷한 연령 범주의 가해자로 ‘형제·자매’만을 포함한 반면 ICAST-R은 친구, 남자/여

자친구(boyfriend/girlfriend) 등 또래 가해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Dunne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또래 가해자가 상당 비율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또래에 의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폭력의 가해자를 양육자에 한해 보지 않고 있는 흐름(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1)과 같다. 물론 또래에 의한 학대 또는 폭력은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지역사회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의 이름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의 폭력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9]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2015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다. 행위공간

학대 발생 장소는 아동의 연령별 특수성이 중요한데 학령기 이전의 아동은 외부 활동이 적고 주생활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동학

대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학대 사례의 82.3%인 총 9,641건으로 학대 피해 아동 10명당 8명의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학대 경험을 한 것으로 해석되며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 같은 아동보육교육기관의 학대 발생률은 7.7%를 차지했다.

〈표 3-8〉 아동학대 발생 장소

발생 장소	건수	비율
가정 내	9,641	82.3
집 근처	213	1.8
친척집·이웃집	97	0.9
어린이집	432	3.7
유치원	207	1.8
학교	258	2.2
학원	68	0.6
병원	49	0.4
복지시설	362	3.1
기타	388	3.2
계	11,715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1. 정의 및 유형

청소년기는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면서 점차 가정 외 또래와의 관계가 확대되고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시기이다(이인선,

최지현, 2014).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폭력은 청소년의 발달에 따라 아동기 학대 경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확장되면서 이들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체계에서 다양한 폭력에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아동기에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내 학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들에게 주된 사회적 환경은 가정보다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이화숙, 2016). 따라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로부터의 폭력이나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존속폭력, 형제폭력도 청소년기 폭력의 양상이지만, 다른 생애주기와 차별화되는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폭력 경험은 특히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학교는 차별 없는 공정한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믿음에 반하여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죽음을 고민할 정도의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학교라는 환경의 독특한 맥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 스스로 괴롭힘의 사실을 감추려 하고 또래 집단 내 특유의 배타성으로 인해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은폐되기 쉽다는 점과, 학교 안의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즉 학생들 간의 다툼을 ‘폭력’이 아닌 미성숙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성장통’으로 간주하는 경향성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조대훈 등, 2013).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징적 환경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집중하여 청소년기 폭력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학교폭력의 정의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폭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가하거나 당하는 금품이나 물건의 강탈, 폭행, 공갈, 협박 및 성폭행 등을 지칭한다. 한편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은 대개 우발적으로 한번 폭력을 행사하고 마는 경우보다는 상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DSM-5(미국정신의학회, 권준수 등 역, 2015)에서는 ‘비사회화된 공격적 품행장애’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그런 행동이 학칙이나 법에 위반될 때 이를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부르고,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범죄행동’이라 부른다(장수한, 2010).

국내 연구에서 학교폭력은 집단괴롭힘, 집단따돌림, 왕따, 또래폭력,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 박효정 등(2006)은 ‘의도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한편, 이것이 일정기간 동안 반복되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의 범위 안에 학생 간의 폭력뿐 아니라 체벌 등 교사에 의한 폭력, 교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춘재, 1999)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Olweus(1995)는 학교폭력을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하였고, Bosworth 등(1999)은 ‘한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것’, 또는 ‘한 명 또는 한 집단의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학대’라고 정의하였다(이상균, 정현주, 2012 재인용).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

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교폭력의 내용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동에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있다. 다음의 세 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이 성립된다면, 그 행동은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의성으로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괴롭히는 말과 행동이며, 두 번째는 반복성으로 어쩌다 한번 일어난 행동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이며, 마지막은 힘의 불균형으로 힘이 더 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상급생이 하급생을, 다수의 학생이 한 두명 소수의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다(Coloroso, 2003: 송재홍 등, 2013 재인용).

이러한 학교폭력은 일반폭력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데, 우선 일반폭력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학급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가해자, 피해자가 마주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일반폭력은 폭력의 당사자 외에는 제3자가 알기 어려우나, 학교폭력은 당사자 외에도 같은 학교, 학급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지게 되므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반폭력은 연속성이 없으나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끊임 없이 특정 학생에 대해 행해지고, 문제의식 없이 학생들 사이에 학교 내 하나의 잘못된 문화처럼 형성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러한 법률적 개념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금씩 시대 흐름이 반영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 변화되어 왔다. 제10차 개정(2012. 1. 26.)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에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켰으며(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따돌림의 정의도 신설되었다. 또한 제11차 개정(2012. 3. 21)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고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시켰다. 이는 정보통신기기의 발전과 이용이 증가함으로 인해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학교폭력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 특유의 맥락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간의 다양한 교육제도·문화적 맥락 간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school violence'로 통칭되지만, 유럽 지역에서는 'bully'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Devine & Lawson, 2003, 조대훈 등, 2013 재인용). 엄밀히 따지면 'school violence'가 'bully'에 비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간주되지만 협의의 개념인 'bully'의 개념마저도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의 학교폭력 연구에서 사용된 'bully'의 개념이 물리적인 괴롭힘과 놀림의 의미에 가깝다면 우리나라의 집단따돌림

개념과 유사한 일본의 이지메 연구에서 사용된 ‘bully’의 개념에는 사회적 고립, 불순함, 수치심과 같은 함의가 더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조대훈 등, 2013).

나.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부정적인 행동은 신체적, 언어적 또는 심리적 행동들을 모두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구타와 같은 신체적인 공격, 언어적인 공격(욕설, 별명 부르기), 얼굴을 찌푸리거나 심술궂은 제스처를 취하는 것, 협박, 조롱, 비방, 모욕, 물건을 훔치는 것,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 집단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Smokowski & Kopaz, 2005).

Olweus(1996)는 학교폭력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폭력의 유형에는 위협, 조롱, 때림, 발로 찌기, 들볶음, 꼬집음, 따돌림 등 물리적이거나 비물리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장수한, 2010 재인용).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폭력에는 학생과 학생 간,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포함되며, 학생 간의 폭력 중에서도 처음에는 학생 개인 대 개인 싸움, 학교 대 학교, 또는 학교 내 집단싸움 등 신체적인 가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했지만, 이후 심리적 위협과 집단의 따돌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힘의 우위에 있는 개인 또는 패거리들이 주위 학생들에 대해 언어적 위협, 놀림, 소지품 은닉, 따돌림, 집단에 의한 무시, 신체적 폭력, 성추행, 금품갈취는 물론, 기물손괴 등의 행동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위 학생들이 심리적인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겪고, 신체적인 상처와 물리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라면 학

교폭력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송재홍 등, 2013).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가장한 행위도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학교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조대훈 등, 2013).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매년 2회씩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추행·성폭행, 강제심부름으로 규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다음의 <표 3-9>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외국의 학교폭력 유형도 외모와 체중에 대한 놀림, 신체적 폭행, 사이버폭력, 협박 등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미국의 학교폭력 관련 유형에는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총기 소지, 살인, 마약 거래 등이 포함되어 우리나라와의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조대훈 등, 2013).

<표 3-9> 학교폭력 유형

유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관련	예시
신체 폭력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상해, 폭행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약취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 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명예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로 퍼뜨리는 행위

94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유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관련	예시
	모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언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로 퍼뜨리는 행위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로 겁을 주는 행위
금품 갈취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 돈을 걷어오라고 시키기
강요	강제적 심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따돌림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꿀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성폭력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을 휴대전화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 자료집'.

2. 학교폭력 현황 및 실태

가. 발생률

1) 국내 발생률

국내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는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6개월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2001년 이후 매년 전국 규모의 표집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김경준 등, 2014).

가) 2016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³⁾

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5년 9월부터 조사 참여 시(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6개월간 학교폭력 관련 피해·가해 경험에 대한 온라인조사가 이루어졌다. 전체 456만 명 재학생 중 432만 명(94.8%) 학생이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유형을 심한 욕설과 놀림, 헐박/ 강제 심부름/금품갈취/ 폭행, 감금/ 강제추행, 성폭력/ 집단 따돌림/ 컴퓨터,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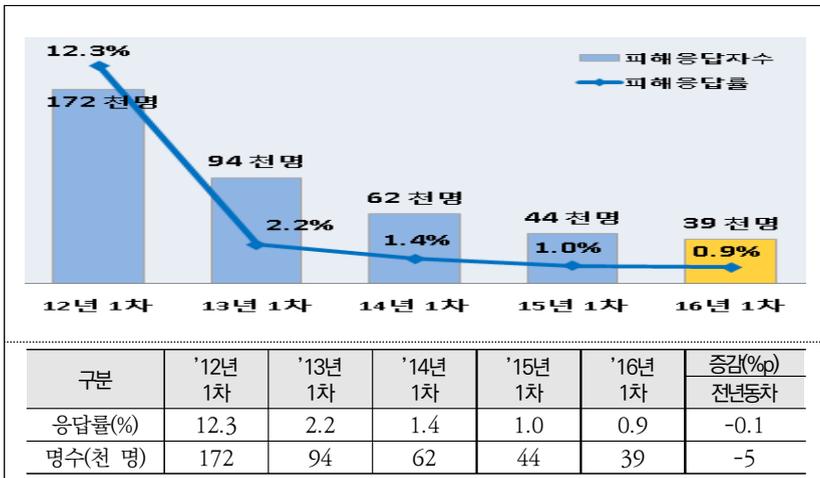
3) 교육부의 2016. 7. 28. 보도자료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예방 대책'에서 제시한 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음.

을 이용한 괴롭힘/ 스토킹으로 구분하여 피해와 가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을 준용한 것이다.

① 피해율

2016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0.9%(3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차 대비 0.1% 포인트(5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학교폭력 전체 피해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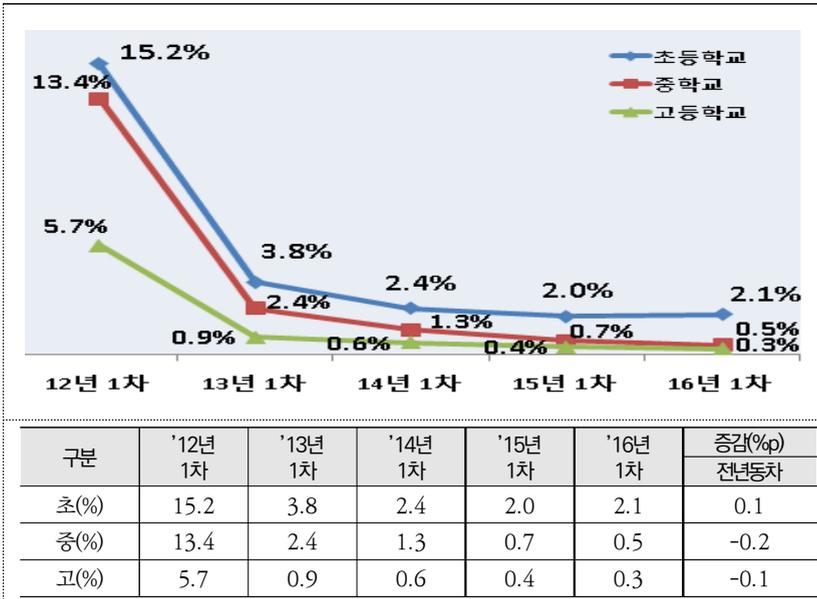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2016).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예방 대책. 2016. 7. 28. 교육부 보도자료.

이 결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 현재 피해율은 1% 미만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설문 참여율을 높이려는 무리한 행정압력과 비밀 보장 침해 문제, 조사 결과를 교육청 이미

지 홍보에 활용하려는 각 시도교육청의 경쟁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머니투데이, 2016. 7. 18.).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등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심을 높이고 있다(데일리모닝, 2016. 7. 26.). 특히 95%에 다다르는 온라인 실태조사의 응답률을 볼 때, 이는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지나치게 높은 수치이므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조사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따라서 새로운 조사방법의 도입으로 지금보다 신뢰로운 통계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피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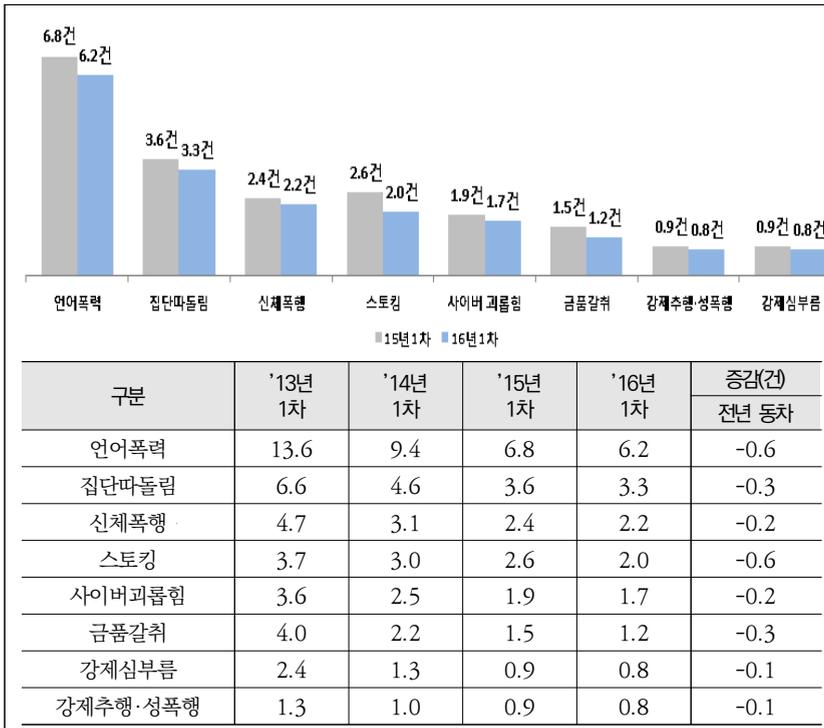
[그림 3-11]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



자료: 교육부(2016).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예방 대책. 2016. 7. 28.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로 전년 동차 대비 중학교의 감소 폭(0.2% 포인트)이 컸으며, 고등학교는 소폭 감소(0.1% 포인트), 초등학교는 소폭 증가(0.1% 포인트)했다.

[그림 3-12] 학생 천 명당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자료: 교육부(2016).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예방 대책. 2016. 7. 28. 교육부 보도자료.

학생 천 명당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는 2015년 동차 대비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였고, 언어폭력(6.2건), 집단따돌림(3.3건), 신체폭행(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가해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응답률은 0.4%(1만 6천 명)로, 전년 동차 대비 0.06% 포인트(3천 명) 감소하였다. 가해율 또한 피해율처럼 매년 조사 때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가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1.0%, 중학교 0.2%, 고등학교 0.1%이며, 중학교의 응답률이 전년 동차 대비 소폭 하락(0.1% 포인트)하였다. 피해 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67.4%)이 대다수이며, 같은 학교 학생의 비율은 75.6%, 다른 학교 학생의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표 3-10〉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

구분		'13년 1차	'14년 1차	'15년 1차	'16년 1차	증감(%)
						전년동차
전체	가해 응답률(%)	1.1	0.6	0.4	0.4	0.06
	명수(천 명)	47	27	19	16	-3
학교급별	초(%)	1.9	1.1	1.0	1.0	0.0
	중(%)	1.3	0.6	0.3	0.2	-0.1
	고(%)	0.4	0.2	0.1	0.1	0.0

자료: 교육부(2016).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예방 대책. 2016. 7. 28. 교육부 보도자료.

③ 목격률

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응답률은 2.5%(10만 9천 명)로, 전년 동차 대비 0.5% 포인트(2만 4천 명)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5.5%, 중학교 1.5%, 고등학교 1.1%이며, 중학교의 응답률이 전년 동차 대비 큰 폭으로 하락(0.8% 포인트)하였다.

〈표 3-11〉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

구분		'13년 1차	'14년 1차	'15년 1차	'16년 1차	증감(%)
						전년동차
전체	목격 응답률(%)	7.6	7.2	3.0	2.5	-0.5
	명수(천 명)	317	325	133	109	-24
학교급별	초(%)	9.5	10.6	5.7	5.5	-0.2
	중(%)	8.9	7.6	2.3	1.5	-0.8
	고(%)	4.9	4.1	1.5	1.1	-0.4

자료: 교육부(2016).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예방 대책. 2016. 7. 28. 교육부 보도자료.

나) 2014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⁴⁾

이 조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및 오프라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총 5천 95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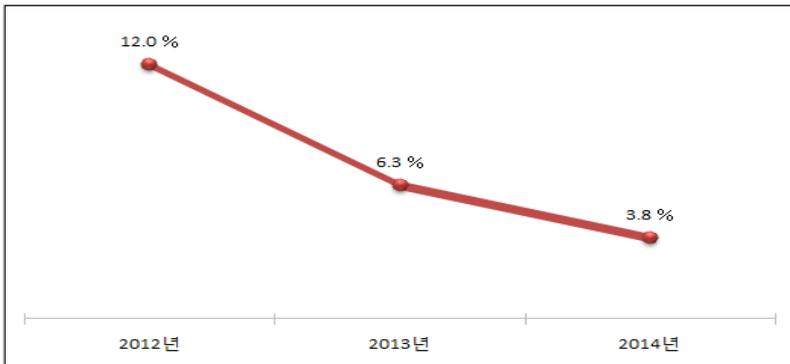
이 조사에서 학교폭력 유형은 맞았다/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겼다/협박이나 위협을 당했다/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괴롭힘(지나치게 괴로운 장난)을 당했다/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강요, 강제심부름(서틀)을 당했다/사이버폭력을 당했다/성적인 접촉을 당했다로 구분하여 피해, 가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앞서 소개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과 큰 범주로는 유사하나, 사이버폭력이나 성적인 접촉의 학교폭력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5. 5. 22. 보도자료,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서 제시한 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음.

① 피해율

2014년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3.8%로 나타나 2012년 12.0%, 2013년 6.3%보다 낮아 학교폭력 피해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3] 최근 1년 학교폭력 피해율(2012-2014년)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피해 유형으로는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14.8%로 2013년에 비해 1.1% 증가하였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괴롭힘' 등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나 집단적인 학교폭력 피해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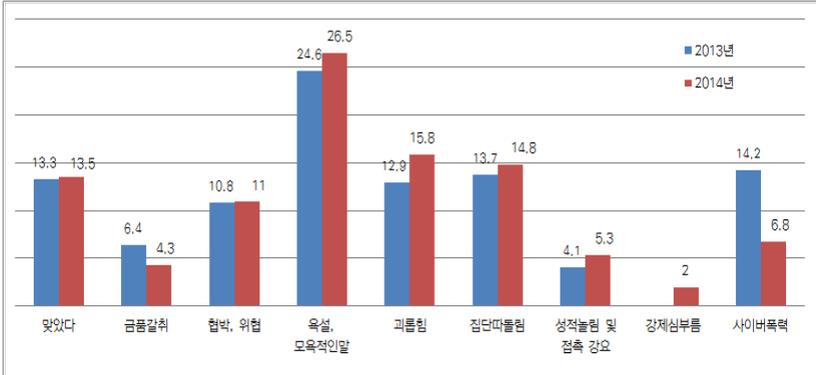
② 가해율

2014년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3%로 나타나 2012년 12.6%, 2013년 5.6%에 이어 학교폭력 가해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5 참조).

10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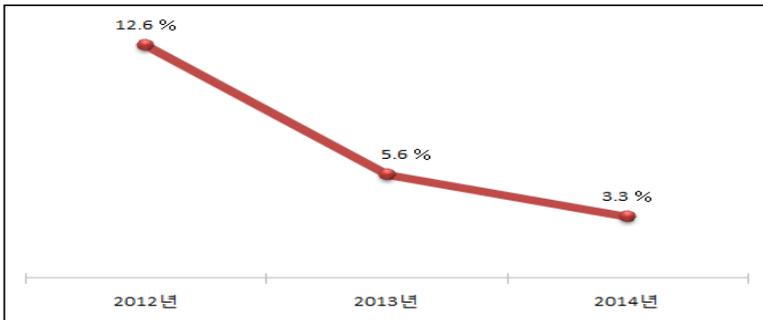
[그림 3-14] 학교폭력 피해 유형(2013-2014년)

(단위: %)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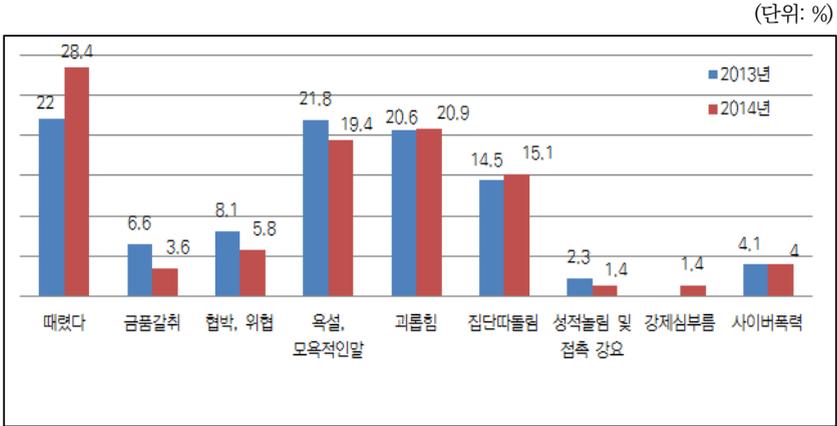
[그림 3-15] 최근 1년 학교폭력 가해율(2012-2014년)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학교폭력 가해 유형에 있어서 대부분 유형이 2013년 대비 거의 비슷하거나 감소한 데 반해 ‘때렸다’, ‘괴롭혔다’, ‘집단적으로 따돌렸다’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그림 3-16] 학교폭력 가해 유형(2013-2014년)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다)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 수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만 48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구분한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심한 욕설, 모욕/폭행, 구타/따돌림/금품갈취/협박/성적인 희롱(놀림), 추행/강제 심부름 등으로 이전의 조사와 유사한 범주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이버폭력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당한 폭력 중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일 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14.7%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7%였다. 폭행이나 구타를 ‘일 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5.8%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1.1%였다.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일 년에 한 번 이상’이 5.1%,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0.9%였으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는 ‘일 년에 한 번 이상’이 2.3%,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0.3%였고, 협박

을 당하는 경우는 ‘일 년에 한 번 이상’이 2.5%,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0.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한 경험은 ‘일 년에 한 번 이상’이 2.7%,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0.8%였다. 강제적인 심부름 경험은 ‘일 년에 한 번 이상’이 2.1%,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0.4%였다(김경준 등, 2014).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이었고, 다음으로 폭행·구타, 따돌림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여부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85.3	9.1	2.9	1.4	1.3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94.2	3.6	1.1	0.5	0.6
3) 따돌림을 당함	94.9	3.4	0.9	0.5	0.4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97.7	1.5	0.4	0.2	0.1
5) 협박을 당함	97.5	1.5	0.5	0.3	0.2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97.3	1.4	0.5	0.4	0.4
7) 강제적인 심부름	97.9	1.4	0.4	0.2	0.2

자료: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p.336.

이러한 국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학교폭력률은 해마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별 편차가 큰 편(2014년 기준 1.4~14.7%)이므로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국외 발생률

외국의 학교폭력 실태는 김동현, 서미(2014)가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노르웨이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1980년대 이후부터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지역은 1990년대 이후부터 실태조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가) 유럽 학교폭력 실태조사

노르웨이는 Owelus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로서 실태조사 및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국가이기도 하다. 1983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56만 8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피해율 9%(5만 2000명), 가해율 7%(4만 1000명), 피해-가해율 1.6%(학교폭력으로 피해도 입는 동시에 가해도 하는 인원, 9000명)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5%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05~2006년에 실시한 학생건강행동조사에서는 11세, 13세, 15세 학생 469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했는데 피해율은 11세 남학생 13%, 여학생 9%, 13세 남학생 9%, 여학생 6%, 15세 남학생 7%, 여학생 6%, 가해율은 11세 남학생 8%, 여학생 1%, 13세 남학생 5%, 여학생 1%, 15세 남학생 10%, 여학생 3%로 나타나 1983년조사보다 다소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은 2006년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하였다. 학생 4772명, 학부모 2160명, 교사 323명이 응답했으며 피해율은 69%에 이른다(외모와 체중에 대한 놀림 56%, 신체적 폭행

50%, 사이버폭력 7%). 부모의 74%가 학교의 예방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의 68%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응답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북미 학교폭력 실태조사

캐나다에서는 1997년 Paul과 동료들에 의해서 1학년부터 8학년까지 474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율 15%, 가해율 6%, 피해-가해율 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약 20% 학생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에 Nansel 등이 6~10학년 학생 1만 56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율 10.6%, 가해율 13%, 피해-가해율 6.3%로 나타났다. 이후 2009년 Wang 등이 6~10학년 학생 71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피해율은 신체적 피해 12.8%, 언어적 피해 36.5%, 관계적 피해 41%, 사이버 피해 9.8%였으며, 가해율은 신체적 가해 13.8%, 언어적 가해 37.4%, 관계적 가해 27.2%, 사이버 가해 8.3%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미국에서도 상당한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두 조사를 비교해 볼 때 미국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자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피해율과 가해율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외국에 비해 특별히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집단괴롭힘, 사이버폭력 유형의 증가 등은 국외에서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행위자-피해자 관계

학교폭력에 있어서 행위자-피해자 관계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그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단순화시켜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김규태 등, 2013).

박순진(2009)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중복피해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 청소년의 54%가 가해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가해 청소년의 44%가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청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

신혜섭(2005)은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학부모 344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을 연구한 결과, 중복경험 청소년은 가해 집단보다 폭력 가해의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 집단보다도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경험 집단은 가해 집단과는 공격성 측면에서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재엽 등, 2015 재인용).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청소년은 타 학생을 가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여 ‘두 세계에서 가장 최악(worst of both worlds)’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Juvonen, 2008, 김재엽 등, 2015 재인용). 결국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서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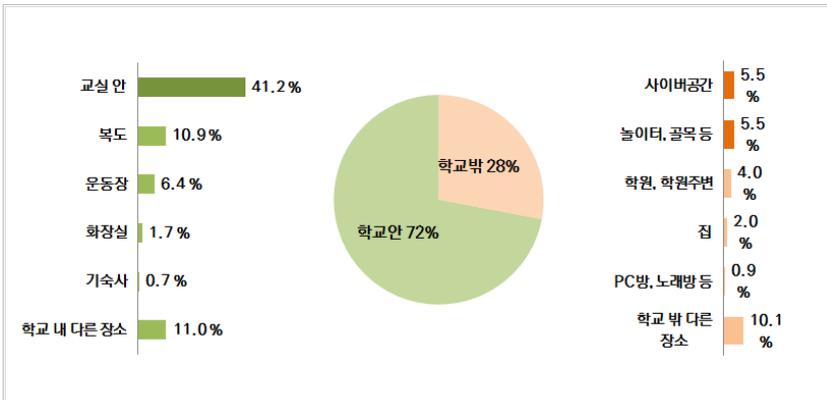
이렇듯 학교폭력으로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피해 청소년이나 가해 청소년들보다 더 심각한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피해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 행위공간

2016년 1차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장소는 ‘교실 안(42.1%)’, ‘복도(10.9%)’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72%)’에서 발생하였고,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9.4%)’, ‘하교 이후(16.4%)’, ‘점심 시간(10%)’, ‘하교시간(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학교폭력 피해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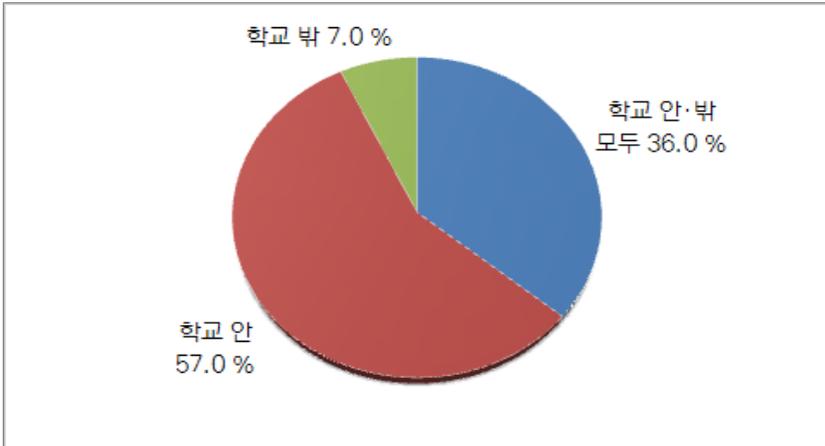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6. 7. 28.).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예방 대책'.

한편, 학교폭력 피해 장소에 대한 2014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57%의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당했다고 응답했고, ‘학교 안·밖 모두’에서 당했다는 학생도 36%로 나타나 학교폭력 발생은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8 참조).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안에서는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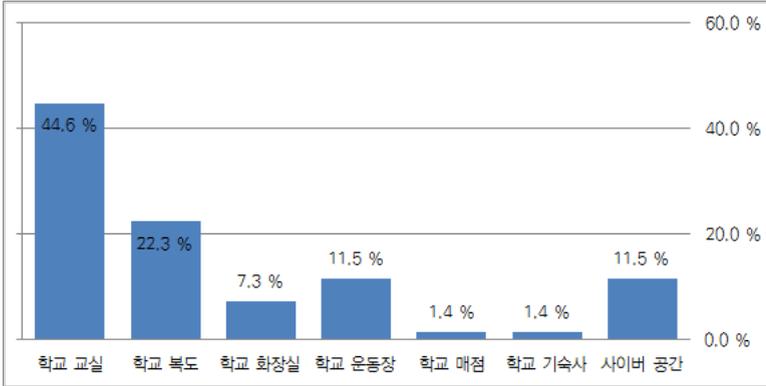
교실'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고, '학교 복도'가 22.3%로 그 뒤를 이었다. 학교 밖의 경우에는 '사이버공간' 20.5%, '기타' 18.8%, '놀이터'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소로는 길거리와 상점, 집주변 등의 응답이 있어 '사이버 공간'과 같은 은폐된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도 학교폭력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9, 20 참조)

[그림 3-18] 학교폭력 피해 공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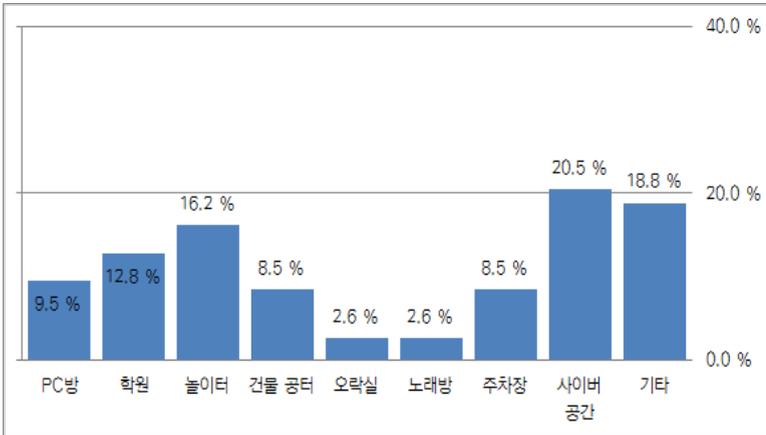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그림 3-19] 2014년 학교폭력 피해 공간(학교 안)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그림 3-20] 2014년 학교폭력 피해 공간(학교 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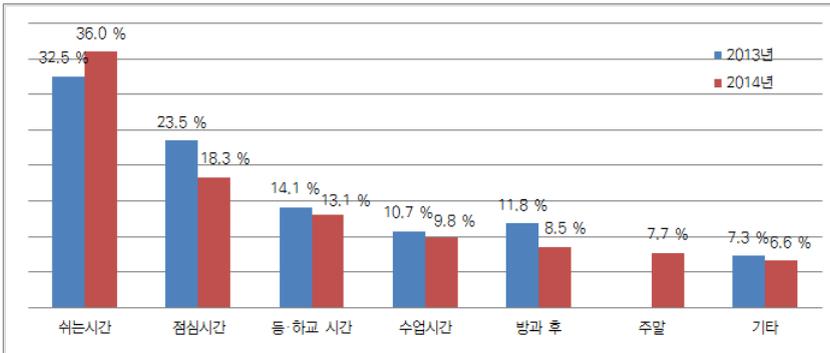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학교폭력 피해 시간에 있어서는 ‘쉬는 시간’이 36%로 가장 많았고, ‘점심시간’이 18.3%로 그 뒤를 이었다. 학교 내에 있는 시간 외에도 ‘등·하교 시간’, ‘방과 후’, ‘주말’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29.3%에 달해 학

교를 벗어난 시간에도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타’ 응답으로는 ‘만나는 시간마다’, ‘하루종일’, ‘항상’ 등의 답변이 나타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림 3-21] 학교폭력 피해 시간(2013-2014년)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3. 학교폭력의 결과 및 영향

학교폭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중요하다. 학교폭력은 일차적으로는 피해 청소년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만, 이뿐만 아니라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족, 목격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끼치게 된다.

가. 피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은 피해 청소년의 신체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

신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한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처음에는 학교 가는 것을 꺼리고 식욕이 줄어들며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최태진 등, 2006). 폭력을 당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악몽을 꾸며 머리나 배가 아픈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잦은 결석과 집중력 저하로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대인기피 증상으로 사회적 적응이 쉽지 않게 된다(곽금주, 2006).

또한 피해 청소년은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2.3%는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이근영, 2010). 피해 청소년들의 특성상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며, 이들이 만약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친구관계는 더욱 어려워진다. 피해를 목격한 친구들은 피해 청소년을 도와주었다가 힘센 가해자들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해 청소년들은 더욱 고립되는 것이다(김동현, 서미, 2014).

그리고 피해 청소년들은 언제 다시 폭력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정서와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생활하며 높은 우울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김재엽, 정윤경, 2007; 윤명숙, 조혜정, 2008). 결국 학교폭력 발생 이후 학교적응이 어려워지며 자신감을 상실하고 집중력과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 또래관계에서 고립감을 경험하며, 폭력에 대한 불안,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사 등 지지체계가 없을 경우, 학교생활이 즐겁지 못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며 학교에 부적응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김동현, 서미, 2014).

나. 가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은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해 청소년에게도 문제를 초래한다.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적 모멸감과 자괴감을 심어 주어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송재홍 등, 2013).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은 싸움, 갈취, 절도, 위조, 폭행, 강간 및 살인 등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아동기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아동은 이후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사법처리 대상으로 쉽게 옮겨간다. 가해 청소년들은 평생에 걸쳐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만성적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실업, 범죄, 자살 등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기 쉬운 것이다(Tremblay, 2000).

또한 가해 청소년들도 피해 청소년들처럼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데, 우울과 자살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학교적응에 문제를 보인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가해 집단 또는 힘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가도 언제 배척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가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 학교규칙이나 질서 등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힘이 든다. 무단 지각, 잦은 결석, 낮은 학업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학교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다(김동현, 서미, 2014).

다.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은 피해 청소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 피해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에서 겪는 부정적 정서를 가정에서도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와 형제자매들도 이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낙담하기 쉽고 또한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고치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강제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피해 청소년 가족들은 폭력 사안 처리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분노, 억울함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피해청소년 가족들은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분노를 나타낼 수 있고,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대비해 무책임한 가해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태도에 큰 분노와 적개심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 청소년 가족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의 고통을 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경험한다. 더욱이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들은 커다란 상실감과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장시간 경험한다.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가족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차적인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김동현, 서미, 2014).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청장년기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시기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청장년기에도 다양한 학대를 경험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및 부부

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그리고 다른 사회환경 속에서의 학대 및 폭력 경험 등 다양한 폭력의 유형에 노출된다. 청장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학대 유형 중에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에 집중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은 청장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폭력 경험일 뿐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경험하는 학대 경험들과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의 가정폭력 경험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그 발생률이 매우 높아 청장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폭력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domestic)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자매폭력 등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양한 가정폭력 중에서도 청장년기에 증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대 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 유형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에서 발생하는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청장년기의 학대 경험을 논하고 타 생애주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학대 경험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의 및 유형

가. 부부폭력의 정의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국내 부부폭력의 정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

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본 법에서는 가정구성원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현재의 특례법에서는 부부폭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가정폭력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부부폭력에 해당하는 대상을 특례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부부폭력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법적 부부폭력의 정의를 정리하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범위를 좁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는 국내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부부폭력은 가정폭력의 한 유형이 아닌 친밀한 사이(intimate relationship)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력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지며 하나의 주요 폭력 유형으로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Intimate Partner Violence(IPV)란 이름으로 정의된다. 대표적으로 WHO와 미국의 CDC에서의 IPV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PV란 여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폭력으로서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성적, 그리고 정서적 폭력과 통제 행위를 포함한다. (*Intimate partner violence is one of the most common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includes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 and controlling behaviors by an intimate*

partner.)' (WHO, 2012, p.1)

'IPV란 현재 혹은 지난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성적, 스토킹, 그리고 정서적 폭력(협박의 행위 포함)을 말한다(*Intimate Partner Violence describes Physical violence, sexual violence, stalking and psychological aggression (including coercive acts) by a current or former intimate partner.*)(CDC, 2015, p.11)

WHO의 경우 IPV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피해자로서 여성을 대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CDC는 그 정의에 있어 특별히 특정 성(gender)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IPV의 가장 대표적인 관련 법인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 없이 적용되며 (National Task Force to End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2006) 남성 피해자 역시 본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친밀한 관계의 범위를 이성관계(heterosexual relationship)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관계(homosexual relationship)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assinger, 2010; Sorenson & Thomas, 2009).

현재 CDC에서 제시한 intimate partner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Emotional connectedness
- Regular contact
- Ongoing physical contact and/or sexual behavior
- Identity as a couple

- Familiarity and knowledge about each other's lives

국내의 부부폭력은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규정되어 법적 가정의 범위 안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며 해외의 경우 특별히 폭력의 발생 환경의 물리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계적 측면에 보다 초점을 두어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부부폭력은 '가정폭력 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가정'이라는 공간적, 물리적 환경의 범위가 비교적 뚜렷한 것에 비해 미국의 경우 VAWA의 영향을 받아 공간 혹은 물리적 환경 중심이 아닌 대상자 및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보인다. VAWA는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폭력의 유형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WHO나 CDC 모두 IPV의 유형으로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의 CDC의 경우 스토킹을 주요 IPV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WHO의 경우 통제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스토킹의 경우 국내에서는 심각한 범죄로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해외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 주요 범죄 행위로서 다루어진다. 특히 스토킹은 신체적, 정신적 혹은 성적 폭력과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Basile, Arias, Desai, & Thompson, 2004) 폭력적 관계 종료 후(postseparation) 다른 유형의 폭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스토킹이 증가할 수 있어 (Mechanic, Weaver, & Resick, 2000)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폭력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나. 부부폭력의 유형

부부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위에 정리한 정의에서 어느 정도 단서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부부폭력 유형에 대한 정리는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본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부폭력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표 3-13〉 국내 가정폭력 유형

유형	설명
신체적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는 것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성적인 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협상황에 방지하는 것

자료: 찾가쉬운생활법령.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5&ccfNo=1&cciNo=1&cnpClsNo=1>에서 인출.

국내의 부부폭력은 법적으로 가정폭력의 유형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신체적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그리고 방임이 포함된다. 법적인 유형 외에 학술적인 유형은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화를 시도하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은 신체적 폭력(경한 폭력, 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이렇게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4〉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부부폭력의 유형		부부폭력의 개별 행위
신체적 폭력	경한 폭력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배우자의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중한 폭력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배우자를 현대,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정서적 폭력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성학대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배우자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위 배우자가 병원에 가야 할 때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통제		배우자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의 가족(친정식구/본가)와 접촉을 못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는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위

자료: 2013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해외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IPV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CDC의 경우 크게 4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스토킹과 정서적 폭력 이렇게 네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포함하지 않은 스토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 3-15〉 부부폭력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폭력 (Physical violence)	죽음이나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의 의도적인 사용 (the intentional use of physical force with the potential for causing death, disability, injury, or harm.)
성적 폭력 (Sexual viol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간 혹은 성기의 삽입 (Rape or penetration of victim) • 다른 사람과의 성행위 강요 (Victim was made to penetrate someone else) • 신체적으로 강요되지 않은 원치 않은 성관계 (Non-physically pressured unwanted penetration) •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 (Unwanted sexual contact) • 원하지 않은 비접촉적 성적 경험 (Non-contact unwanted sexual experiences)
스토킹 (Stalking)	지속적이고 의도에 반하며 피해자 혹은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안전에 대한 공포 혹은 두려움을 야기하는 관심과 접촉 (a pattern of repeated, unwanted, attention and contact that causes fear or concern for one's own safety or the safety of someone else (e.g., family member or friend).
정서적 폭력 (Psychological Aggression)	타인을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상처주기 위한 그리고/혹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적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The use of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with the intent to harm another person mentally or emotionally, and/or to exert control over another person)

자료: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retrived from: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intimatepartnerviolence/definitions.html>).

WHO 역시 비슷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CDC와 다른 점은 WHO의 경우 stalking 유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통제행위(Controlling behaviors)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WHO는 IPV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신체적 폭력: 때리거나 치거나, 발로 차거나 구타하는 행위(slap-ping, hitting, kicking and beating)
- 성적 폭력: 강요된 성관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성적 강제(forced

sexual intercourse and other forms of sexual coercion)

- 정서적 폭력: 모욕하거나 하찮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창피하게 하거나, 위협하거나, 해칠 수 있음을 협박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하는 행위(insults, belittling, constant humiliation, intimidation(e.g. destroying things), threats of harm, threats to take away children)
- 통제적 행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이동 및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경제적 자원, 취업, 교육 혹은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isolating a person from family and friends, monitoring their movements, and restricting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employment, education or medical care)

다양한 부부폭력에 대한 국내외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신체적 폭력, 정서적(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차이들이 발견되었는데 국내의 경우 경제적 폭력 및 방임을 따로 구분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반면 CDC에서는 이에 대한 유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WHO의 경우 경제적인 통제는 통제 행위에 포함하여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DC의 경우 스토킹을 주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였으며 WHO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통제적 행위를 따로 구분하였다.

현재 국내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현재 유형화는 2007년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처음 사용되어 현재 2013년도 실태조사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7년에 신체적, 정서적, 성학대의 유형 외에 경제적 폭력과 방임의 유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경제적 폭력과 방임을 추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 경제적 폭력과 방임의 경우 새롭게 대두되고 있

는 폭력 유형이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가 필요하다고 근거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경제적인 폭력과 방임이 타국의 부부폭력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독특한 형태의 폭력 유형이 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WHO의 통제 행위에서 경제적인 폭력과 비슷한 문항이 발견되나(경제적 자원으로의 접근 제한) 국내 부부폭력 유형에서는 경제적 폭력을 독립된 폭력 유형으로 규정하고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부부폭력 현황 및 실태

가. 부부폭력 발생률

부부폭력에 대해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 2항에 따라 3년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공인한 부부폭력 발생률 통계로서 그 의미가 크며 발생률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유용성이 크다. 현재 한국의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인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013년도 부부폭력 발생률 조사에서 나타난 만 19세 이상의 한국인이 경험하는 부부폭력 발생률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1년간 6가지 유형의 부부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3-15>에서 제시된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내용에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의 부부폭력률은 Straus (1996)의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CTS2)를 활용하여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는데 CTS2는 현재 부부폭력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로 1979년도에 개발한 CTS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 유형에는 설득(negotiation), 심리적(정서적) 폭력(psychological aggression),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 성폭력(sexual coercion), 상해(injury)가 있다. 원 CTS의 경우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4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CTS2에서는 하위 차원도 5개로 증가하였으며 문항 역시 39개로 대폭 증가하여 다양한 폭력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CTS2는 다양한 폭력의 내용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항의 개수가 많고 실제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하기 쉽지 않아 short-form CTS2가 개발되었다(Straus & Duglas, 2004). 이는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TS2와 같이 5개의 하위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신체적 폭력 7문항, 정서적 폭력 3문항, 성폭력 2문항의 총 12문항을 CTS2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선택 과정이나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밖에 가정폭력실태조사는 CTS2 외에 세계보건기구(WHO, 2005)에서 활용한 통제 및 방임 행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WHO는 이를 국제 비교를 위해 활용한 바 있다. 경제적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측정도구 개발 과정이나 근거는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폭력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경험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앞의 부부폭력의 법적 정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부부폭력은 현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로부터 경험한 폭력을 포함하나 현재의 부부폭력실태 조사 지침은 전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살펴보는 데

한계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부부폭력률은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발생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폭력률은 43.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만 19세에서 만 65세 사이의 부부폭력률은 45.5%이고 만 65세 이상 기혼 남녀의 부부폭력률은 34.7%로 비노인집단에서의 부부폭력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부부폭력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의 모든 유형의 가정폭력을 포함한 발생률로 이를 학대의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약 7.2%의 부부폭력 발생률을 보였으며 정서적 폭력은 36.1%, 경제적 폭력은 5.0%의 발생률로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4.9%, 그리고 방임의 경우 26.2%, 통제의 경우 47.7%로 나타나 부부폭력 유형 중 통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학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활용한 부부간 방임의 문항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다”, “병원에 가야 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의 두 문항이었으며 통제와 관련한 문항은 5문항으로 그 예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였다” 등이 있다.

이렇듯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부부폭력은 성인 기혼 남녀의 경우 거의 절반의 인구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2007년부터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6〉 연도별 부부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

구 분	부부 폭력률 (1)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경한 폭력	중한 폭력	전체 신체 폭력				
2013년	45.5	7.2	0.6	7.3	37.2	5.3	5.4	27.3
2010년	53.8	16.3	3.3	16.7	42.8	10.1	10.4	30.5
2007년	40.3	11.1	4.8	11.6	33.1	4.1	10.5	19.6

주: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2013년의 내용을 재구성함.

한국인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40.3%, 2010년 53.8% 그리고 2013년 45.5%로 2010년에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3년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률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40%가 넘는 발생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부부폭력은 빈번하게 경험되는 청장년기의 대표적인 학대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은 비단 한국만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2013년의 WHO의 국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WHO는 이미 부부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보건(public health)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부폭력을 여성인권, 혹은 범죄로 인식하던 시각은 이제 보건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부부폭력의 경험이 죽음 혹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 그리고 장애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Salzman et al.,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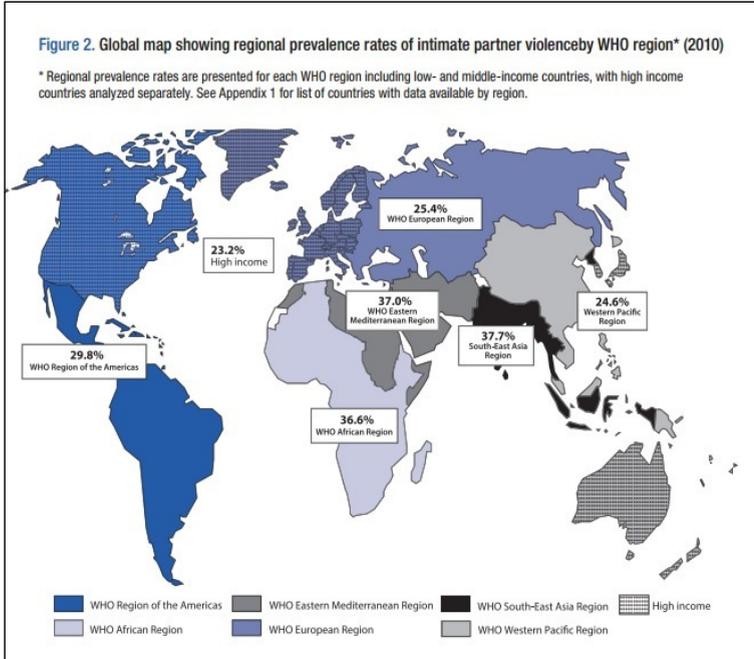
WHO 조사 결과가 국내 가정폭력실태조사와 다른 점은 지난 1년간의 폭력 경험이 아닌 전 생애(lifetime) 폭력경험을 조사하고 있어 조사 대상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해당 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는 폭력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만 포함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다른 유형의 폭력경험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 배우자 혹은 이전 배우자 및 파트너와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을 전 생애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다.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3명 중 한명의 여성이(30%) 살아가면서 배우자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소득국가(high-income countries)와 저소득국가(low-income countries)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고소득국가에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이 해당되며 이들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며 다시 지역에 따라 아프리카, 미국대륙, 동지중해지역, 유럽, 동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부폭력률은 고소득국가의 경우 23.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발생률을 보여준 반면 저소득국가의 경우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부폭력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다음 그림은 WHO의 결과를 주요 지역별로 구별하여 표시한 것으로 신체적 그리고 성폭력을 포함한 부부폭력률을 비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폭력(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을 포함한)은 아프리카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동지중해 국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지역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37.7%의 여성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의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태평양 지역으로 24.6%의 발생률을 보여 고소득국가의 발생률인 23.2%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 부부폭력(IPV) 국제 비교 지도



자료: WHO(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 밖에 개별적으로 진행된 부부폭력률에 관한 연구들을 국가별로 찾아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Hansan et al.(2004)의 경우 칠레와 이집트, 그리고 인디아 및 필리핀의 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부부폭력률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폭력률을 전 생애 경험과 현재 경험(지난 1년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부부폭력 유형 중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폭력의 전 생애 경험은 지역 별로 차이는 있으나 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발생률은 31.0%에서 43.1%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5) 현재의 지난 1년간의 IPV에서의 신체적 폭력 경험률은 역시 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는데 그 발생률이 25.3%에서 16.2%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국가들인 이집트(10.5%), 필리핀(6.2%), 칠레(3.6%)와 비교하더라도 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지난 일 년간의 신체적 폭력은 2013년 7.3%로 나타나 필리핀과 칠레보다는 높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2010)결과에 따르면 지난 일 년간의 부부폭력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4.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생애 경험은 신체적 폭력의 경우 31.5%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일 년간 경험을 국내의 7.3%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인 폭력은 지난 일 년간은 14.2%, 전 생애 경험은 47.1%로 신체적 폭력보다 높은 수준의 발생률을 보여주었으며 스토킹은 지난 일 년간은 2.4%, 전 생애 경험은 9.2%로 10명 중 한 명 정도의 여성은 살면서 스토킹의 경험에 희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경우 지난 일 년간의 경험은 0.8%였으나 전 생애 경험은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방법에 있어 국내 가정폭력실태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부부폭력 발생률 중 정서적 폭력은 37.2%, 성폭력은 5.4%로 나타나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서적 학대 및 성폭력을 지난 일 년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부부폭력 발생률을 타국의 발생률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 측정 방법의 차이, 측정 시기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앞의 발생률 비교를 위해 살펴 본 국내 및 해외 부부폭력 발생률 조사에서 서로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비

5) 인도의 경우 Lucknow, Trivandrum, Vellore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Trivandrum 지역이 가장 높은 발생률인 43.1%, Lucknow가 34.6%의 신체적 폭력 발생률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Vellore는 31.1%의 발생률을 보여주었음.

교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Golding(1999)이 진행한 IPV에 대한 메타분석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들에서 부부폭력은 서로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CTS가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는 측정도구로 보여지나 그 역시 대부분 연구들마다 자체적으로 수정(modified)하여 일관된 사용 형태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이 부부폭력 발생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주된 장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부폭력의 국내외 발생률 연구를 살펴보는 작업은 부부폭력현상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사회문제를 확인하는 주요 자료로서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부부폭력률이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며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중요성이 크다는 것 역시 뒷받침할 수 있다.

나. 행위자-가해자 관계

한국의 부부폭력의 경우 대부분 부부간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며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법적 혼인 또는 동거(사실혼 관계)의 관계에서의 부부폭력을 추정하였으며 이혼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결된 전 배우자 사이의 부부폭력은 추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정폭력특별법에 따르면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역시 부부폭력의 행위자-가해자를 구성하는 인구집단일 수 있다.

부부폭력은 정의에 따르면 성별에 상관 없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부폭력 사건은 남성이 가

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경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체 부부폭력의 사건 중 약 85%가 남성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Daivs, 2008),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남성이 피해자일 때보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적 폭력 중에서도 심각한 신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rcher, 2000; Barnett and Rivers, 2004). 국내 통계도 비슷한 경우를 보여주는데, 부부폭력의 피해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낮으며 부부폭력을 경험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지난 일 년간 신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여졌으며 신체적 상해 경험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정임 등,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부폭력의 행위자-가해자의 관계는 국내의 경우 주로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부부, 또는 혼인 및 사실혼이 파기된 전 배우자 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남성, 여성에 상관없이 부부폭력의 피해, 가해를 모두 경험할 수 있으나 여성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 행위공간

부부폭력에 대한 행위공간에 대한 정보는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부부폭력의 발생률이나 요인, 개입 프로그램 등과 같은 주제는 많이 다루어져왔지만 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부부폭력 분야에서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나 실증적 증거는 없지만 부부폭력이 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폭력경험임을 고려하였을 때 주된 행위공간은 가정 및 배우자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생활공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생활을 같이 하는 배우자 외에 전 배우자 역시 주요한 부부폭력 관련 대상임을 고려하였을 때 부부폭력 발생 공간은 가정 및 생활공간 외

장소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에서 IPV의 주요한 유형으로 고려하고 있는 스토킹의 경우 우편물을 훔친다든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 온다든지, 전화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든지 등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Mechanic, Weaver, & Resicki, 2000) 행위 장소가 매우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높다. 생활공간 외에 직장이나 타 장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부폭력에 있어 장소적 특수성은 크게 논의되지 않은 경향이 매우 높으나 폭력의 다양화로 인한 관련 장소의 특수성,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노년기는 사회적으로 직업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쇠퇴, 기능상태의 약화로 인한 돌봄욕구 증가, 사회적 지지망의 약화 등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노년기 취약성에서 비롯된 노인학대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 노인학대는 자살·사망률과 연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정혜란, 김미원, 2014; Dong, 2015), 노인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스트레스 수치, 우울증, 치매발병률, 기능적 장애, 질병이환율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더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특히 응급실 이용 및 입원)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Dong, 2015).

본 절에서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와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유형, 노인/노년기의 정의와 관련된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다른 생애주기와 달리 노년기에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국외 연구에서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거주자 간 학대(resident-to-resident abuse)가 노인학대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의 현황 및 실태를 국내외와 공간별(가정 내 학대와 시설 내 학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노인학대의 역동성을 보기 위해 생애경로적 관점을 적용하여 노인학대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노인학대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타 생애주기와 노년기 학대를 비교한다. 노년기 학대의 반복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끝으로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입 현황을 검토한다.

1.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elder abuse)는 1975년 British Medical Journal에 공식적으로 인용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의료, 보건,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법률, 사법체계 전문가들에게서 관심을 받아 왔다(Dong, 2015). 국내에서도 국외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아내학대 다음으로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민간에서 2002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전국에 14개의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4년 1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법으로 명문화됨으로써 법과 제도의 테두리하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

국내외적으로 노인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없으며, 역

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노인학대(elder abuse)는 유기(abandonment), 방임(neglect), 자기방임(self-neglect), 착취(exploitation) 등의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학대가 유기, 방임, 자기방임, 착취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⁶⁾

노인학대를 구분함에 있어 학대의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가정 내 학대와 시설이나 병원에서 발생한 시설 내 학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학대의 유형을 구분하여 신체적·심리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자기방임을 포함한 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한다(한동희, 김정옥, 1994; 김태현, 한은주, 1997; 나용선, 김나영, 2004; Lachs & Pillemer, 2004). 또한 학대를 행하는 주체가 본인인 자기방임과 타인이 학대를 가하는 그 이외의 학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제기구의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학대를 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노인에게 위해(harm)나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일회성의 행위 또는 반복적인 행위, 적절한 행위의 결핍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Lachs & Pillemer, 2004). 미국과학학술원(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전문가 패널들은 노인학대를 (1) 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취약한 노인에게 위해 또는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도적인 행위, (2) 부양책임자, 돌봄제공자가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위해로부터 노인을

6) 미국에서는 부당한 처우(maltreatment)를 학대(abuse), 방임(neglect), 착취(exploita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함. 노인학대(elder abuse) 대신 부당한 처우(elder maltreatment or elder mistreatment)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해 노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가하는 학대(abuse)와 피해 노인에게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방임(neglect)을 구분함(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또한 경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등을 구분하기 위해 착취(exploitation)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부당한 처우에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 방임(수발자 방임), 자기방임, 경제적 착취를 포함시킴.

보호하지 못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Lachs & Pillemer, 2004). 노인학대에 대한 두 가지 정의 모두 의도적인 행위와 비의도적인 행위 모두를 포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노인학대의 정의에서 신뢰관계에 대해 명시함은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유사하게 관계의 맥락을 강조한 것으로 학대로 인해 존경과 믿음의 관계가 “권력(power)과 통제(control)”가 남용되는 관계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한다(Ajdukovic & Rusac, 2009).

영국의 노인학대 개념은 미국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다. 영국 Department of Health의 정의를 보면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abuse)를 타인이 인권이나 시민권을 침해한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성적·심리적·경제적 학대, 방임, 그리고 차별적인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2000). 호주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주정부나 비영리기관에서는 ANPEA(Australian Network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의 노인학대 정의에 근거하여 개입을 하고 있다(이윤경 등, 2015). ANPEA에서는 노인학대를 신뢰관계안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위해(harm)를 가하는 행동으로 본다. 구체적인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심리적 학대, 사회적 학대, 방임을 포함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인학대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기보다는 노인학대에 속하는 학대 유형을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 노인학대의 개념을 정의한다. 즉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보호업무에 대한 지침을 보면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로,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의존적 상태의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뜻한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b).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방임 중 자기방임도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유형, 노인/노년기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발생 장소에 따라 차별화된 학대의 정의 및 유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거주자 간 학대(resident-to-resident abuse)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대행위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의 정의를 보면 학대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과학학술원의 정의에서 보듯이 노인학대 행위자는 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trust relationship), 또는 돌봄, 보호, 부양의 책임, 의무가 있는 자로 이러한 책임감은 법적 또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⁷⁾ 일반적으로 타자는 배제되며, 학대행위자의 고의적 행동(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에 의한 것이라면 신뢰관계는 적절한 관계(relevant relationship)에 해당되는 자에 한정된다. 예를 들면 가족성원이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취약한 노인을 착취하였다면 경제적 학대로 구분하는 반면, 타인에 의한 착취는 법적인 위해를 다루는 쟁점이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omission)인 방임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법이나 사회적 관습에 의해 돌봄과 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예: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까지 포함)로서 이들이 노인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정의에 의하면 노인이 스스로에 대해 학대하는 자기방임과, 노인과 신뢰관계가 없는 타인이 노인에게 사기를 친 경우는 학대의 개념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노인의 관점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돌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은 다를 수 있다는⁸⁾ 점에서 학대행위자의 범위를 규정함은 용이하지 않다. 국내 연구에서는 학대행위자의 범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관련된 연구로 정경희 등(2010)에서는

7) 캐나다의 학대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서도 학대행위자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함(McDonald, 2011).

8) 예를 들면 자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노인은 돌봄의 책임이 없다고 인식할 수 있는 반면, 사회의 통상적 관념과는 달리 노인은 매일 노인의 집을 방문하는 요구르트 배달원에 대해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학대행위자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는 가족 및 보호자로 제한을 둔 바 있다. 또한 이윤경 등(2015)에서는 학대행위자를 네 개 집단, 즉 노인 본인, 가족,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나 이웃, 업무·고용 등의 계약관계에 의해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규정은 어떤 학대행위, 학대 유형을 학대개념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영국처럼 타인에 의한 인권침해까지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학대개념을 폭넓게 정의 내리면 학대행위자 역시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학대행위자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률 또한 증가하게 된다. 영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Biggs et al.(2009)의 연구에서 학대행위자를 가족, 친구, 돌봄제공자로 한정할 경우와 이웃, 지인(acquaintances)으로 확대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발생률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 학대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65세 이후 경험을 기준으로 학대행위자 확대시, 신체적 학대는 0.8%에서 1.4%, 성적 학대는 0.3%에서 1.1%로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 학대는 1.2%에서 1.7%로 늘어났다.

그런데 학대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영국 전국조사의 결과 학대에 대한 위험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의 수는 감소하고 유의성 또한 떨어질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역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ggs et al., 2009).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학대행위자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현상까지 포괄하여 관찰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학대행위자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족, 친구, 공식적 돌봄제공자까지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는 타인까지로 확대하느냐에 따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결과는 두 개의 현상이 이질적임을 시사한다.9)

국내외적으로 가족이 주로 학대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외 연구에서는 배우자, 다음으로 자녀가 주로 학대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McDonald, 2011) 국내에서는 자녀, 다음으로 배우자가 주된 학대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등, 2010; Oh et al., 2006).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대 유형별로 보면 주된 학대행위자는 다르게 나타난다. 2009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는 학대행위자 중 자녀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신체적, 성적 학대는 배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67.9%, 배우자가 28.6%로 나타났으며, 방임은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93.7%, 배우자는 4.8%, 유기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85.3%, 배우자는 8.8%로 학대행위자 중 자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반해 신체적 학대는 배우자 54.1%로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3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배우자와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와 서구 국가를 비교하면 며느리가 주된 학대 행위자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okkanathan, & Lee, 2005). 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등)에서는 아들은 노인과 동거하면서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강력하고, 그 결과 실질적인 부양을 책임지는 며느리가 갈등, 스트레스 등으로 노인학대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연구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같이 학대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점은 사위가 학대행위자인 비율(7.3%)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¹⁰⁾

9)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순히 학대를 측정하는 항목의 수를 기준으로 학대범위를 확대하였을 때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Dong, 2014).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에게 다수의 학대행위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통계를 보면 학대 피해 노인은 3532명인데, 학대행위자는 3876명으로 집계되어 노인 1인당 평균 1.097명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학대행위자의 74.3%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들(38.8%), 배우자(15.2%), 딸(12.3%) 등의 순서로 많았다. 며느리는 전체 사례 중 4.7%, 사위는 0.5%에 달해 인도 Chokkanathan와 Lee(2005)의 연구와는 대조를 이루었다. 국외 연구에서도 다수의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국의 전국조사 자료에 의하면 학대받은 노인의 15-18%는 두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iggs et al., 2009).¹¹⁾

나. 학대행위, 학대 유형¹²⁾

학대행위의 범위에 있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기방임과 학대 유형별

-
- 10) 이는 사위가 신부 집에서 우대를 받는 문화적 전통을 고려할 때,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여성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친정에 도움을 요청해서 발생한 갈등 또는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문제 등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Chokkanathan, & Lee, 2005).
 - 11) 학대 피해 노인의 9%는 2개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음.
 - 12) 학대 유형별로 위험요인이 공통적인 요인도 존재하지만 학대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도 있음. 영국의 전국 조사에서 주택 소유 여부는 65세 이후 경제적 학대 경험률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학대 유형의 발생률과는 관련이 없었음(Biggs et al., 2009). 미국의 Acierno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학대 유형별로 위험요인이 차별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학대 유형별로 비교한 연구에서(이미진, 김혜련, 2016) 신체적 학대의 학대행위자는 정신병리학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반면, 정서적 학대는 피해 노인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다른 학대와 대별되는 점이었음. 또한 경제적 학대는 수급자 노인이 많았고, 방임은 타 학대와 비교 시 노인이 신체적으로 의존적인 비율이 높았음(이미진, 김혜련, 2016). 그러나 학대 유형별로 공통점이 더 많이 존재하고, 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주의를 요함.

기준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1) 자기방임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자기방임을 포함시키고 있고 이러한 정의는 연구 결과의 산물이라기보다는 2004년 이전부터 노인학대상담센터에서 노인학대를 유형화하면서 자기방임까지 포괄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방임(self-neglect)을 노인학대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쟁점이 존재하는데(우국희, 2014) 미국에서는 자기방임을 학대 유형으로 포함시켜 개입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자기방임은 학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도 영국처럼 자기방임을 학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자기방임을 자기관리(self care) 부족, 저장(hoarding)¹³⁾, 불결(squalor)¹⁴⁾로 구분하여 개입한다(McDermott, 2008).

또한 미국과 한국이 자기방임을 학대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행위를 자기방임으로 볼 것인지에 있어서는 한국은 미국과는 다른 접근을 한다. 미국에서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영양결핍을 자기방임의 위험요인으로, 자살은 자기방임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이에 반

13)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들에게는 불필요하게 보이는 것일 수 있으나 노인에게는 소중한 가치있는 것, 미래에 쓸모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임(McDermott, 2008).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가 과거 기억에 대한 보존, 오래된 물건에 대한 애착임을 상기하면, 저장 행위는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 현세대 노인은 식민지 시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물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저장 행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임. 호주에서는 저장은 불결과는 달리 먼지가 날 수는 있지만 냄새, 분해 등이 잘 일어나지 않고, 나름대로 조직화(organization)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차별적으로 인식함(McDermott, 2008).

14) 불결의 정의는 개인마다, 개인이 소속된 조직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는 양상을 보임. 특히 오래 일한 직원일수록 불결의 기준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함(아주 극심한 불결만을 불결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McDermott(2008)을 참조하기 바람.

해, 한국에서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영양결핍, 자살을 모두 자기방임의 대표적인 행위로 규정한다(이민홍, 박미은, 2014에서 재인용).¹⁵⁾ 또한 미국에서는 자기방임 역시 다른 학대 유형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을 때만 개입하지만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학대 피해 위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대라 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2자 구도하에 성립되는 행위이므로 자기방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기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자기방임이 타 학대 유형과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타 학대와 공통점이 존재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기관 설립 시부터 타인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선 실현을 위해 자기방임에 개입하여 왔던 역사적 전통 등의 이유로 자기방임을 학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우국희, 2008; 이윤경 등, 2015).

우리나라에서 자기방임은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건수에서는 아직 양적으로 미미하다. 2005년 36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1%를 차지하였는데, 2014년에는 463건으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학대 사례 중 차지하는 비율은 8% 수준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a). 그러나 자기방임이 주로 독거노인에게서 발생하고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기방임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실제 미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는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방임이다(이민홍, 박미은, 2014에서 재인용).

15) 자기방임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민홍, 박미은(2014, p.124)은 자기방임을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생활, 환경관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정의와 유사함.

2) 학대 유형별 기준의 적용

학대행위에 대한 정의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학대 유형별로 피해를 받았다는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방임은 해당 항목에 1개 이상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 방임을 받았다고 정의를 내리는 연구가 있는 반면, 10개 이상 항목에 해당될 때 방임을 받은 것으로 표기하는 연구가 있었다(Dong, 2015). 상대적으로 신체적, 성적 학대는 1회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학대를 받은 것으로 정의되었다(Dong, 2015).¹⁶⁾ 예를 들면 영국 전국조사에서(Biggs et al., 2009) 신체적, 성적, 경제적 학대는 지난 1년간 1회 이상이면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 반면 심리적 학대와 방임은 10회 이상으로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성적 학대의 정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보다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관된 정의를 찾기가 보다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방임과 경제적 학대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도구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Cooper, Selwood & Livingstone, 2008).

다. 노인, 노년기

노인학대의 개념 정의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노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많은 국가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는 연대기(chronological)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연령 기준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16) 국외 연구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의 경우 CTS가 가장 많이 사용됨.

기되면서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 기준을 60세에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이윤경 등, 2015).

그러나 노인학대의 정의에 있어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노년기 이전부터 배우자학대를 받은 자가 일반적인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에 도달하면 배우자학대가 아닌, 노인학대가 되는 것인가? 실제 노인학대 사례 중 상당수는 노년기 이전부터 피해 노인이 동일한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 및 폭력을 수십 년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진, 2015; 전지형, 강선경, 2015; Zink et al., 2003).

과연 노인학대와 다른 생애주기별 학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¹⁷⁾ 이에 대해 미국의 노인학대 전문가 패널들은 노인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이 통상적인 노인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기 돌봄(self care)이나 자기 보호(self protection)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노인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이들은 배우자 학대의 경우 피해 배우자의 연령이 통상적인 노인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보기보다는 노년기 취약성으로 인해 배우자의 학대 및 폭력이 강도가 심해졌거나 빈도가 더 빈번하게 되었다면 배우자학대보다 노인학대로 정의해야 한다고 보았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연구자들은 연령 기준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며, 세계보건기구의 입장과 유사하게 노령(old age)을 신체적, 정신적 쇠퇴으로 가정 내 역할 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시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Ajdukovic et al., 2009). 예를 들면 65세 치매노인이나 35세의 정신지체성인이나 학대의 취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질성보다는

17)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별도로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함.

동질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연령 그 자체보다는 노년기 취약성에 보다 주목하여 노인학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노인학대와 타 생애주기별 학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단순히 학문세계의 용어의 장난, 말장난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성학대(sexual abuse)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인학대인지 배우자학대인지를 구별함은 사정 시 고려할 사항, 개입의 목표 및 방향 설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학대 피해자가 노년기 취약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단순히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고 심지어 입소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상생활(예: 약 복용,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및 검진)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돌봄제공인력이 근무하는 쉼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년기 취약성으로 인해 취업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사정 단계부터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학대 피해자가 통상적인 노인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여 취업 등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다면 노인학대 개입모델보다는 가정폭력개입모델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피해자의 연대기 연령만을 기준으로 노인학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정책적, 실천적 대응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라. 시설 내 학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시설 내 학대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지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시설 내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 역시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합의되지 않고 있다.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정의는 어떤 학대 유형이 포함되는가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정의를 소개하면, 미국의료연합(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에서는 요양시설에서의 학대를 언어적,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비자발적 격리(seculs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권금주 등(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노인복지생활시설의 노인학대를 “노인복지 생활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및 그들의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 유기하는 것으로” 정의내렸다(권금주 등, 2013, p.43).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3424건의 학대 사례 중 가정 내 학대는 2909건으로 85.0%를 차지하는 반면 시설 내 학대는 216건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a).¹⁸⁾ 그러나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이 2009년 전체 노인의 1.7%임을 감안하면(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학대 발생신고 비율은 입소한 노인의 비율에 비해 훨씬 높아 시설 내 학대가 가정 내 학대보다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조사는 손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시설 내 학대의 발생률은 조사기간, 표본, 학대를 측정하는 문항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지만 모든 연구에서 시설 내 학대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노인학대 현황 및 실태에서

18) 그 외에 공공장소 86건(2.5%), 병원 83건(2.4%), 이용시설 35건(1.0%), 기타 95건(2.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시설 내 학대에서 빈번한 학대 유형 중 하나는 방임인데, 방임과 저질의 돌봄(poor care quality)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국외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요 돌봄문제는 욕창(pressure sores), 영양문제(malnutrition), 탈수(dehydration) 등이다. 특히 욕창이 방임으로 인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하는데(Lindbloom et al., 2007) 이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욕창이 보다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또한 국외 연구를 보면 성적 학대는 거주자 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직원이 거주 노인을 학대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하겠다.

시설 내 학대는 가정 내 학대와 달리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정도 등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가정 내 학대는 시설 내 학대에 비해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낮다. 그리고 가정 내 학대의 경우 가족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많고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는 가족 내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조애저, 2008; Kosberg, 1988). Kosberg(1988)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식적인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다.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 내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경향, 학교 등의 외부활동을 빈번히 하는

19) 국외 연구에서는 시설 내 학대의 원인에 대해 거주자(치매, 공격성)와 직원(자격 미달 및 훈련부족 등)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조직·환경의 문제로 접근하는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Theory (McDonald, 2011)가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음. 또한 시설관련 정책의 거시적인 문제점(예: 영리위주,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부재, 시설의 표준기준에 대한 강제력 부족 등) 역시 시설 내 학대의 개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함. 이 중 거주자와 직원의 미시적 요인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직원의 신체적, 심리적 학대의 원인으로는 피학대노인의 공격성, 근로환경의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빈번하게 지적됨(Lindbloom et al., 2007). 시설 내 학대의 주요 연구 흐름 중 하나는 부적절한 신체적 구속과 침대레일 사용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임(Lindbloom et al., 2007).

아동과 달리 노인들은 가정 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인이 노인 학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자존심이 상하여 이에 대해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는 점, 학대 피해 노인들이 피해 사실을 밝힐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받게 될 보복에 대한 공포심, 가족인 학대행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걱정,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의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가 공식화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다.

가정 내 학대는 가족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설 내 학대는 시설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 종사자들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임이 명명백백하다. 또한 가정 내 학대와 달리 시설 내 학대는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와 같은 외부인이 학대사실을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정 내 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인 가족 이외에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 행위자와 노인과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반면, 시설 내 학대는 학대행위자인 종사자를 해고하거나 노인을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행위자와 노인을 분리시키는 조치가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설 내 학대 역시 외부에 알려지거나 보고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Payne과 Fletcher(2005)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동료가 학대행위를 하는 걸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동료가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 걱정되어 학대신고를 회피하기도 하고, 가족이 시설에 와서 노인을 학대하는 걸 목격하는 경우 학대를 가정사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개입을 꺼리게 된다. 한편 가족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노인학대 행위자일 경우, 시설 직원이 노인에게 보복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신고가 효과적인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

문에 학대신고를 잘하지 않게 된다. 또한 시설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들은 대부분 치매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소통능력이 저하된 상태이기에 학대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고로 인해 종사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데 이 역시 학대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인지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도 학대신고에 대한 지식 등의 부족으로 인해 노인들이 학대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마. 거주자 간 학대: 새로운 학대 유형?

우리나라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의 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한 문헌을 보면 주로 노인과 공식적인 돌봄인력 간의 문제, 그 중에서도 노인이 피해자인 경우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노인이 타인, 특히 돌봄제공인력에게 신체적, 언어적 인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Astrom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certified nursing assistant의 약 20%는 매일 거주노인으로부터 신체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40-85%가 노인으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엄기욱, 박인아, 2015).

시설 내 노인의 폭력성은 돌봄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다른 노인에게도 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외의 사례를 들면, 시설 내 성적 학대를 가한 학대행위자의 68.8%는 시설 내 다른 거주노인(Teaster & Roberto, 2004)이었고 미국 옴부즈맨에 대한

전국통계(2000-2011)에서 시설 내 학대의 21%가 거주자 간 학대로 나타났다(McDonald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배우자 학대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노인이 학대행위자이고, 노인이 피해자인 노-노 학대가 존재하며, 이것이 시설 내라는 장소에서 발생할 경우 거주자 간 학대라 명명한다. 거주자 간 학대에 대한 리뷰문헌을 보면 학대에 대한 용어가 일관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거주자 간 학대는 resident-to-resident elder mistreatment, resident-to-resident aggression, resident-to-resident violence, resident-to-resident relational aggression, resident-to-resident abuse 등으로 불리고 있다(McDonald et al., 2015). 거주자 간 학대에 포함되는 학대 유형의 범위 역시 일관되지 않지만 리뷰문헌의 결과를 보면 연구자들은 주로 언어적, 물질적(주로 도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주로 성희롱, 성추행)를 시설 내 학대에 포함시킨다(McDonald et al., 2015).

거주자 간 학대라는 용어 자체가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도 이것이 학대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첫째, 거주자 간에 발생하는 공격이나 폭력이 노인학대의 전형적인 정의에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자 양자 모두 피해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인지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표면상으로는 이유 없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McDonald et al., 2015). 그러나 학대 피해 노인이 남성인 경우 신체적인 폭력을 같이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배진희, 정미순, 2007) 노인학대의 전형적인 가해자-피해자 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실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사례 중 상당수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나 며느리가 노부모를 학대하는 경우인데 이 또한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인지상태를 근거로 한 비판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를 노인학대로 접근하기보다는, 치매나 다른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바라보기도 한다(Snowden & Roy-Byrne, 2003). 그러나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만이 다른 거주노인에게 폭력이나 공격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 역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질적 연구를 리뷰한 McDonald et al.(2015)에 의하면 거주자 간 학대를 행하는 노인은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특히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에 대한 공감, 인내능력이 부족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노인학대의 발생은 신뢰관계라는 맥락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거주자 간 학대가 이러한 전형적인 노인학대의 개념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McDonald et al., 2015). 이 지적은 거주노인과의 관계가 가정 내 동거인과는 다른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학대행위자와 노인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학대행위자는 타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학대행위자의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거주자 간 학대를 노인학대가 아니라고 부정함은 논리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셋째, 이 문제를 학대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설 내 돌봄의 질이 낮다고 보고 접근할 수 있다. 시설 내 돌봄제공인력은 거주노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시설 내 폭력, 공격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 내 학대 역시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지 못하여 발생한 돌봄의 질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거주자 간 학대를 노인학대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향

후 이 쟁점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설입소노인의 수적인 증가가 예상되기에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설 내 사고(incidents)의 62%는 거주자 간 학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Malone et al., 1993), 옴부즈맨에 보고된 사례 중 거주자 간 학대가 보고실적에서 신체적 학대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gerst et al., 2005). 또한 주목할 점은 거주자 간 학대를 받은 피해 노인은 직원으로부터 학대받을 위험성이 4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이다(Zhang et al., 2011). 이는 노인이 단일 행위자로부터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다수의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시설 내 학대와 연관하여 사정, 개입할 부분이라고 본다.

2. 노인학대 현황 및 실태

〈부표 3-1〉과 〈부표 3-2〉는 국내외 주요 조사를 토대로 하여 지역사회 노인이 경험한 학대 발생률과 시설 내 학대 발생률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내 연구 결과를 기술하고, 다음으로 국외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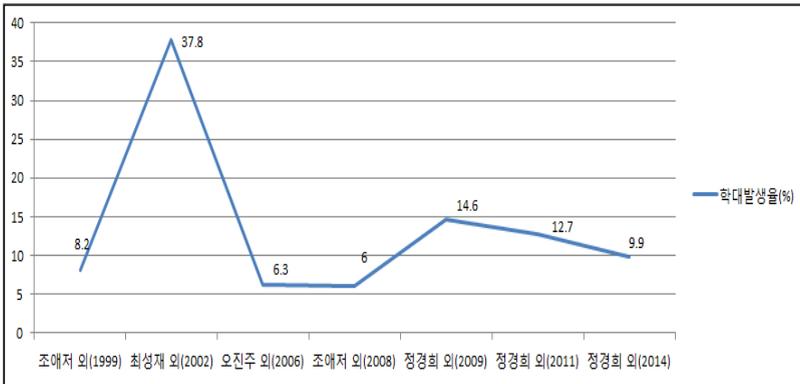
가. 국내의 노인학대 발생률(prevalence)

1) 가정 내 학대: 지역사회

국내 연구 중 전국 자료를 분석하여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률을 보고한 연구들은 최성재 등(2002)의 연구를 제외하면 노인의 약 10%가 지난 1년간 노인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23 참조). 한국

형 노인학대 선별도구를 활용하여 전국 조사를 수행한 정경희 등(2010)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4.6%가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정경희 등 2014)의 연구에서는 9.9%가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4년 3532명의 노인이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학대 피해 노인으로 추정되는 637만 명 중 극소수만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3] 국내 주요 연구를 통해 살펴본 노인학대 발생률 추이



〈부표 3-1〉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국 규모의 확률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확률표집의 연구는 발생률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다. 대부분의 비확률표집은 개인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노인학대 피해에 대한 발생기간이 제시되지 않아 비교가 어렵고, 학대로 보기에 불분명한 문항이 포함되어 학대 발생률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⁰⁾ 학대 발생률의 과대 추정 문제는 학대 발생률의 과소보고와

20) 예를 들어 서운(2000)의 학대 유형별 척도로 지역사회 노인(비확률표집) 344명을 대상

는 별도의 문제이다. 국외의 노인학대 전문가들은 노인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모두 학대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병리화(pathological)”하여 명명하는 현상에 대해 주의를 요하였는데(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노인학대 경험률의 과대 추정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노인학대의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가 부정확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기방임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연구가 시작되었고, 연구의 수적인 측면에서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부산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홍, 박미은(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방임적인 행위를 하는 노인은 전체 독거노인 중 약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집계된 자료를 보면,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수집된 2005년 2,038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1.87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자기방임은 증가 추세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현재 노인학대 사례 중 신체적 학대는 25.9%, 정서적 학대는 37.9%, 성적 학대는 1.7%, 경제적 학대

으로 학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 학대는 40.3%, 정서적 학대는 79.7%, 경제적 학대는 21.8%, 방임은 81.7%이며 전체적인 학대 경험은 80%로 매우 높게 나타남(정혜란, 김미원, 2014). 이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가족이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했다’와 같이 실제 학대로 판정하기 애매한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방임 역시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와 같이 학대로 보기에 불분명한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이와 대조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노인 737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서인균, 이연실, 2015), 전반적인 학대 경험률은 17.9%이었으며 정서적 학대는 14.0%, 경제적 학대는 7.3%, 신체적 학대는 5.2%, 방임은 4.5%, 성적 학대는 1.8%, 유기는 1.6%로 서운(2000)의 연구에 비해 발생률이 낮게 나타남. 그러나 두 연구 모두 학대 피해 경험에 대한 기간이 제시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 21) 자기방임의 5개 문항 중 응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영양실조나 탈수에 빠짐이 12.7%, 건강생활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도 도움 요청 거부가 7.6%, 지속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가 4.8%, 기본적인 위생과 청결에 최소한의 관리를 하지 않음이 4.0%,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약물이나 알코올남용을 지속함이 2.1%인 것으로 나타남(이민홍, 박미은, 2014).

는 8.8%, 방임은 14.9%, 자기방임은 10.1%, 유기는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설 내 학대

시설 내 학대 발생률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연구 결과마다 편차가 매우 커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일단 조사대상도 무료·실비요양시설을 조사한 연구(정경희 등, 2002), 무료·유료시설을 조사한 연구(이인수, 2006), 무료요양·무료전문요양시설을 조사한 연구(유선호, 강선아, 2008), 요양병원을 조사한 연구(권금주, 이서영, 박태정, 2016)로 동일하지 않다. 측정도구 역시 인권침해 항목까지 포괄한 경우(정경희 등, 2002)와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특정한 학대 유형만 포함시킨 연구가 있어 비교가 쉽지 않다. 시설 내 학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목격률을 보고한다는 점이 가정 내 학대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 또한 연구들이 학대 유형별 항목별 빈도만을 보고하여 학대 유형별, 학대의 전반적인 피해율은 알 수 없었다.

시설 내 학대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충남의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종사자를 조사한 유성호, 강선아(200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종사자의 지난 1년간 시설 내 노인학대 목격률은 26.5%에 달했으며 가장 빈번하게 목격된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22.7%)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다음으로 자기방임, 신체적 학대, 방임 등의 순서로 목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인수(2006)의 연구에서는 시설종사자들이 학대행위에 대한 자기 보고를 조사하였는데, 신체적 학대가 10.7%, 정서적 학대가 35.9%로 나타났다. 권금주 등(2016)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학

대와 정서적 학대는 각각 39.5%의 목격률을, 성적 학대는 22.1%의 목격률을 보고하고 있어 시설 내 학대가 만연하고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 내 학대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생활시설이 46건, 이용시설이 5건, 병원이 36건으로 접수되어 전체 사례 중 4.3%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생활시설이 206건, 이용시설이 57건, 병원이 88건이 접수되어 전체 사례 중 9.2%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나. 국내의 노인학대 발생률(prevalence)

1) 가정 내 학대: 지역사회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률은 14.6%(태국)-36.2%(중국 농촌)로 큰 편차를 보였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행된 두 연구(Cadmus & Owoaje, 2012; Rahman & Gaafary, 2012)는 학대 발생률이 30-43.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북미대륙에서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미국의 연구로 연구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14-15%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Acierno, 2010; Lachs, 2011; Dong, 2014). 유럽의 노인학대 발생률을 보면 아일랜드에서 수행된 연구는 2.2%인 데 반해 스웨덴은 30.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Lindert(2013)는 동일한 측정도구로 유럽 7개국을 비교하였는데, 이탈리아의 노인학대 발생률이 12.7%로 가장 낮고 스웨덴이 30.8%로 높게 나타났다.

의존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 발생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Cooper et al., 2008), 신체적 학대는 1%(Beach et al., 2005), 심리적 학대는 약 25%(Beach et al., 2005; Wang, 2005), 방임은 18% (Fulmer et al., 200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학대 발생률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Paveza et al.(1992)만이 유일하게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1년간 신체적 학대를 가한 비율이 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Cooper et al., 2008). 다른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발생률 연구들은 신체적 학대는 11-20%, Pillemer의 기준을 따른 방임은 37-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ooper et al., 2008).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의존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대 발생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존적인 노인의 취약성으로 인해 학대 피해가 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가족수발자들이 학대를 보다 빈번하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수발자와 관련하여 Cooper et al.(2008)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기에 학대에 대해 솔직하게 보고한다고 보았다.

요양보호사와 같이 공식적 돌봄제공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학대를 행한 경우, 이는 가정 내 학대로 분류되고 있지만²²⁾ 학대행위자 특성은 오히려 시설 내 학대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Wang(2005)은 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하고, 신뢰도 있는 측정도구로 학대 발생률을 측정하였는데, 대만의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돌봄인력이 지난 6개월간 16.1%가 심각한 학대를 목격하고 99%는 학대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돌봄서비스 의뢰를 받

22) 실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관, 상담원에 따라 가정 내 학대로 분류하기도 하고, 시설 내 학대로 분류하기도 함.

은 노인이 학대받았는지를 스크리닝한 결과(신뢰도 검증받은 MDS-HC), 조사대상자 중 5%가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Shugarma et al., 2003). 노인학대에 대해 체계적 리뷰를 수행한 Cooper et al.(2008)에 의하면 의존적인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비해 제3자가 목격한 조사가 노인학대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학대가 은폐되고 보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3자의 목격자 조사 보다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학대를 경험했는지 또는 학대행위를 수행하였는지를 직접 조사 하는 것이 숨겨진 학대를 보다 더 발굴할 수 있다.

2) 시설 내 학대

지역사회 내 학대와 마찬가지로 시설 내 학대 역시 국제적인 이슈이다. 그런데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연구는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양적·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져 있다. 또한 가정 내 학대 발생률에 비해 편차가 더 크다. <부표 3-2>에서 보듯이 학대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0%가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조사는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활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아니라는 점이다. 주요 국가의 연구를 보면 시설 내 학대 발생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독일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자기보고, 목격률이 70% 내외였으며 노르웨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는 87%, 목격률은 91%에 달하였다.²³⁾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웨덴의 연구를 보면 자기보고는 2%, 목격률은 11%로 타

23) 노르웨이의 연구는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지 않음을 학대로 규정하였기에 비교상의 주의를 요함.

국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와 마찬가지로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국가는 미국이다. 시설 내 학대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Pillemer와 Moore(198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 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지난 1년간 신체적 학대 목격률은 36%, 신체적 학대에 대한 자기보고율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에서 가장 흔한 방식은 신체억제였다. 신체적 학대에 비해 정서적 학대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목격률은 80%, 자기보고율은 40%에 달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Griffiore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의 발생률이 40.0%로 가장 낮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학대 발생률은 70-80%에 달하였다.

미국에서는 1999~2001년에 1만 7,000개 요양시설(nursing homes) 중 5,283개 시설(30% 이상)이 학대위반으로 소환되었으며, 이 중 1,345개 요양시설이 실제로 노인에게 피해를 가했으며 256개 시설은 노인의 사망 또는 노인이 사망/심각한 상해에 처할 정도의 학대위반으로 소환되었다(Minority Staff of the House Committee on Government Reform, 2001; Harris, 2005에서 재인용). Jogerst et al. (2006)은 Iowa의 메디케어 인증시설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신체적, 경제적, 성적 학대와 방임을 조사하였는데, 연간 1,000명의 거주자당 20.7건의 학대 사례가 직원에게 보고되었다. 18.4건은 관련당국에 보고되었는데, 이 중 29%가 실제 학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국내외 비교 및 실태조사의 문제점·한계

국내의 경우 최저 6.0%에서 최고 37.8%까지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를 보면 최성재 등(2002)의 연구를 제외하면

노인의 1년간 학대 피해 경험률은 약 10%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경희 등(2010)의 연구에서 노인학대에만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조사의 경우 가정폭력과는 달리 전국 노인실태조사의 일부 항목으로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과 2014년 전국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없고, 성적 학대, 자기방임에 대한 문항이 없는 점, 문항 수 부족으로 인한 타당도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경우 1회 이상 경험한 경우 학대 피해가 있다고 계산함으로써 노인학대 발생률을 과대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외의 경우 아일랜드가 2.2%로 가장 낮았고, 이집트(농촌지역)가 43.7%로 매우 높게 나타나 발생률의 격차가 더 컸다. 이러한 편차는 조사 국가의 차이뿐만 아니라 노인집단의 연령 기준, 발생기간, 포함된 학대 유형 및 정의의 차이,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구 등 실질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McDonald, 2011). 예를 들어 Cohen et al. (2007)의 연구에서 학대 피해를 받았다고 폭로한 비율은 5.9%에 불과하였지만, 학대징후(sign)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21.4%, 학대위험요인이 높은 집단은 3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폭로, 징후,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는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측정도구로 학대 발생률을 계산하더라도 학대 발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발생률은 달라졌다(Dong, 2015). 예를 들어 방임을 정의함에 있어 1개 항목이라도 긍정적인 응답을 하면 방임을 받는 것으로 정의한 경우와 10개 이상의 항목에 긍정적인 응답을 해야 방임피해가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정의한 경우 발생률은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Dong, 2015).

예를 들면 Dong(2014)의 연구에서는 영국 전국조사(Biggs et al.,

2009)와 마찬가지로 학대 피해에 대한 횡수정의를 달리함에 따라 학대 유형별 발생률에 차이를 보였다. 즉, 심리적 학대는 개념적 기준을 변경 시킴에 따라 1.1%에서 9.8%로, 방임은 4.6%에서 11.1%로 발생률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학대는 8.8%에서 9.3%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

노인학대 발생률은 과소보고(underreporting)되며, 실제 학대 발생률은 경험적인 통계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노인이나 행위자가 학대를 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조사에서 인지능력이 낮은 노인들이 배제되는데 이들은 학대받을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집단으로 이들의 배제는 자연스럽게 발생률을 낮추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주 연구에서 지난 1년간 학대 사례 중 24분의1만이 사회서비스 기관 등에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나 과소보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Lachs et al., 2011).

한국과 미국 연구를 보면, 한국 연구에서는 학대 유형 중 정서·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미국에서는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제일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 노인들이 공적 연금제도의 발달로 인해 노후 경제상태가 양호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미국은 전반적인 소비자 주권의식이 발달해 있고 법적인 소송도 우리에게 비해 보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쟁점이 학대문제로 보다 부각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노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학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지만, 사회서비스기관에 보고된 사례 중에서는 심리적 학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점이다(Lachs et al., 2011).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 연구 중 인도 대도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정서·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타

학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인도 연구에서 학대 경험률은 언어적 학대(10.8%), 경제적 학대(5%)의 순서로 높고 신체적 학대와 방임은 같은 비율(4.3%)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는 표본의 차이, 문화적 차이, 정의 및 방법론의 차이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노인부양의 책임을 강조하는 아시아 문화권이 급격한 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간의 갈등이 많고 이로 인해 정서·언어적 학대 발생이 높은 것은 아닌지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아시아의 유교주의 전통, 노인공경문화가 방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인학대 발생률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인도 연구에서 가정폭력 발생률은 20-75% 수준인 데 반해 노인학대 경험률은 14%로 낮게 나타난 것은 노인공경이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Chokkanathan, & Lee, 2005). 그러나 이는 노인학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은폐하는 반면, 가정폭력은 여성운동 등의 결과로 공개적 논의가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제 4 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제1절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제2절 가정폭력 중복피해

제3절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전이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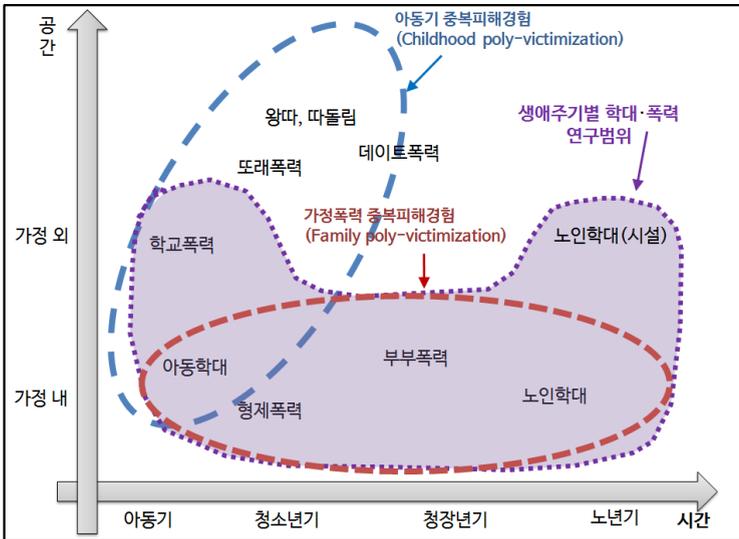


4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

전 생애과정에 걸쳐 학대·폭력의 경험은 피해-가해의 경험을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학대·폭력의 구조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한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대·폭력의 구조에 대한 개념적인 틀은 학대·폭력의 중복피해경험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이는 가정폭력 중복피해경험(Family Poly-victimization)과 아동기 중복피해 경험(Childhood Poly-victimiz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1] 중복피해경험의 개념의 유형과 범위



제1절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1. 단일 유형의 폭력에 대한 접근의 한계

폭력의 중복피해란 신체학대, 성학대, 따돌림, 가정폭력의 목적, 지역 사회범죄에 대한 노출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중복적 피해경험을 지칭한다(Finkelhor et al, 2005). 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중복되는 폭력의 영역에 대한 정의는 연구별로 상이하며 이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아동학대 유형을 기준으로 한 중복학대피해이다. 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체적, 정서적, 성학대 및 방임 등의 네 가지 아동학대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는 신체적, 정서적,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그 밖의 단일 유형의 학대 및 폭력 피해 경험이 중첩되는 경우로 김재엽 등(2010)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노출 경험과 아동학대 피해의 중복 경험 혹은 이인선, 최지현(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중복피해경험 등이 그 예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Turner, Finkelhor, Ormrod(2010), CDC(2010), 그리고 Price- Robertson, Higgins, Vassallo(2013)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모에 의한 중복적 유형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뿐 아니라 형제간의 폭력 피해, 부부폭력의 목적 경험, 지역사회 폭력에 노출, 학교에서 왕따 및 타인에 의한 신체적 폭력 등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피해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이다. 이는 폭력의 중복 영역 중 피해 경험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범주화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폭력 및 학대의 피해 경험과 그러한 경험

의 부정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실증 근거들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한 가지 또는 몇몇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과소 추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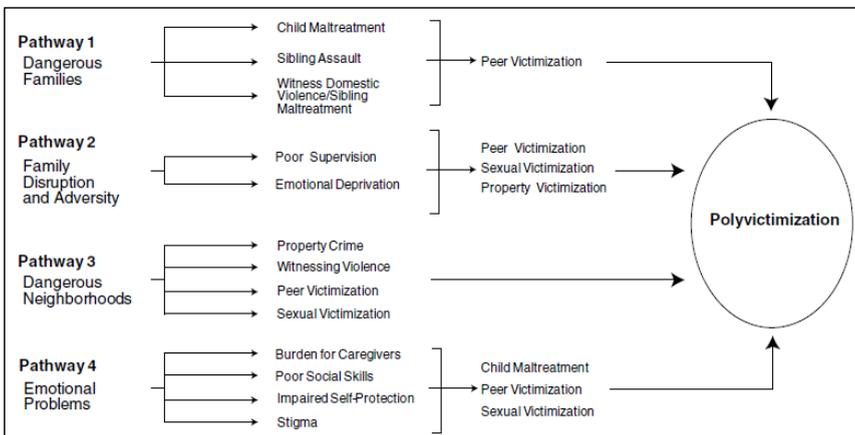
또한, 단일 유형 중심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분절적인 접근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 경험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예컨대 또래에 대한 따돌림은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 성적 괴롭힘, 강도 등 비행 등을 수반하는 경향을 띤다. 학대 피해 경험은 새로운 종류의 학대 피해 경험의 전조(precursor)이거나 촉진제(catalyst)이기도 하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학교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때로는 학대 피해 경험은 고위기도의 환경적 요인 때문에 군집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폭력적 부모는 다수의 가족 구성원을 공격하며 아동은 가족폭력에 노출되어 폭력을 목격하기도 하며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난한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지역사회 폭력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아동자신이 폭력과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력 피해 경험 사이의 상호연관관계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탐색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 유형에 따른 분절성은 나이에 따른 학대 및 폭력의 분절성에 의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10대 청소년 또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을 분석해 왔고, 이는 폭력이나 범죄가 주로 10대 청소년에게서만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호관계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피해자의 취약성(victimization vulnerability)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취약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다르게 학대 피해

유형의 군집화가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어떤 학대는 다른 학대를 초래하며, 왜 어떤 아동들은 학대 피해를 경험하지 않는 데 비해 다른 아동들은 복수의 학대 피해를 경험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분석 단위로 단일 유형의 학대만을 포함하는 경우, 중복피해의 경험과 증상을 단일 유형의 학대와 연관 짓게 되기 때문에 피해 경로와 수준에 대한 정확한 관련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Finkelhor et al., 2011). 특히 단일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과 비교할 때, 중복학대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이며, 전 생애에 걸친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Finkelhor et al., 2007; Saunders, 2003;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CDC, 2010), 중복학대피해 아동의 규모를 밝히고 부정적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4-2]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개념적 모델



자료: Finkelhor et al.(2011). Polyvictimization: Children's exposure to multiple types of violence, crime, and abuse. p.9.

2.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의 중복피해경험

아동기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국외에서는 1990년 후반부터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JVQ) 등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아동의 중복적인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Turner, Finkelhor, Ormrod, 2010; CDC, 2010; Saunders, 2003; Price-Robertson, Higgins, Vassallo, 2013; Finkelhor et al., 2011; Finkelhor et al., 2007). Turner, Finkelhor, Ormrod(2010)는 미국의 2-17세 아동 및 주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 학대 중복피해연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전체 아동의 66%가 폭력의 중복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30%가 5개 유형 이상에, 22%가 4개 유형 이상에 그리고 10%가 11개 유형 이상의 폭력에 중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실시한 5개 주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아동학대 경험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7.1%가 아동기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을 보고한 바 있으며(CDC, 2010), 전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 경험 조사에서 중복피해경험률은 20.1% 수준으로 나타났다(Saunders, 2003).

반면, 한국의 경우 축적된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며 아직까지 전국 규모의 아동 전체 연령에서의 학대 피해 경험과 기타 폭력의 중복피해율은 집계되지 못하였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피해사태에 한하여 신체적, 정서적 및 성학대 등의 유형에 중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비율을 중복학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체 학대 사례 중 중복학대 비율은 48.0%(4,814건), 그리고 재학대비율은 10.2%(1,027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이러한 신고된 피해율은 전

국 아동 수(1,050만 명, 2014년)를 기준으로 보면 0.04% 수준에 불과하다.(김재엽 등, 2010; 이인선, 최지현, 2014;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또한 전국 규모는 아니지만 김재엽 등(2010)은 서울 및 경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목격 경험과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의 중복경험률을 8.8%로 집계한 바 있다. 이인선, 최지현(2014)의 경우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패널자료 분석 연구에서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중복피해경험률을 4.5%로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나타난 한국의 중복피해율은 외국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중복적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의 연령 및 지역적 한계와 폭력 유형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김재엽 등, 2010; 이인선, 최지현, 201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또한 아동기의 폭력의 중복을 주제로 한 연구는 중복피해의 경험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차적 경험에 중점을 두고, 학대 피해 경험을 가진 아동이 어떻게 가해 경험을 갖게 되는지 그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신선인, 2008; 정기원, 서현숙, 2007; 배화옥, 2011; 김재엽 등 2010).

3. 폭력의 중복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 경험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학업능력 저하와 학교 부적응, 내적 우울 등 심리적 문제 그리고 외적 공격성 및 행동화 문제 등을 포함한다(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배화옥, 2011). 이러한 폭력 피해의 부정적인 후유증은 전체 아동청소년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며, 중복피해의 경우 단일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아동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Finkelhor et al., 2007; Saunders, 2003; Turner, Finkelhor, Ormrod, 2010). 그 이유는 폭력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심어진 것처럼 중복적으로 발생하면 피해 아동은 이를 사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환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자기비난, 내적 우울과 외적 공격성에서의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이다(Finkelhor et al., 2007). 국내의 연구 결과에서도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등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선, 최지현, 2014).

학대, 방임, 가정폭력 및 또래폭력 등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중첩될 경우, 아동발달과 건강에 누적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전 생애에 걸쳐 위기요인으로 나타나게 된다(CDC, 2010). 특히, 18세 이전 아동기에 경험한 폭력의 중복적 피해경험은 초기 성인기에 우울, 불안, 약물중독, 반사회적 행동, 장기적인 건강문제 등 부정적인 결과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게 된다(Price-Robertson, Higgins, Vassallo, 2013; Duncan, 1999). 따라서 중복피해의 부정적 영향은 단일 유형의 피해의 영향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이며,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가정폭력 중복피해

아동기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의 주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주고 있는 반면, 그 대상이 아동에만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성을 갖는다. 아동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의 경험을 포괄하기 위해 ‘가정 내’ 다양한 형태의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에 대한 연구(Family Poly-victimization)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동기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아동기 폭력의 중복피해의 주된 원인을 빈곤 및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로 인하여 광범위한 갈등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해체위기의 가족에서 발견하였고(Finkelhor et al., 2010), 이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학대 및 폭력의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우리나라에서 과거 아내학대, 배우자학대, 부부폭력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폭력 등을 가정폭력의 하위 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가정폭력 중복피해경험의 분석틀은 빈곤, 실업, 정신질환 등 가족이 경험하는 위험요인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부폭력 등 하나의 가정폭력이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Chan(2015)은 Finkelhor의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의 틀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확대·적용하였다. 아동의 가정 내 학대 중복피해경험을 부부폭력, 노인학대, 시부모학대, 형제자매

폭력 등 가정 내 다른 폭력 유형과 연결하였다.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한 학대·폭력의 분석은 가정폭력의 다양한 형태들이 가정과 연관된 공통의 위기로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일 학대 중심의 분절적 접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 틀(framework)로서 인식되고 있다(WHO, 2005).

가정폭력의 중복피해가 일어나는 주된 영역은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경험의 중복, 부부폭력과 노인학대의 중복,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중복으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이 중,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경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Casanueva, Martin, & Runyan, 2009), 선행연구 결과 평생 동안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복경험하는 비율은 6%에서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 et al., 2014). 또한 부부폭력과 노인학대를 중복경험하는 비율은 1-71%,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중복경험은 10%에서 66%를 차지하였다(Pritchard, 2007). 이와 같은 중복경험률의 커다란 편차는 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와 표본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가정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Chan(2015)의 실증연구는 홍콩 및 중국에서의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동시 출현성을 분석하였는데, 약 37%의 아동신체학대의 행위자가 배우자 구타의 가해자이기도 하며, 36%의 아동신체학대의 행위자가 배우자 구타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부폭력과 체벌 및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의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가정폭력이 또 다른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3절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전이

1. 학대·폭력의 세대 간 전이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전이는 오랫동안 가정 내 폭력 연구 분야에 있어 주요 연구 주제였으나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었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폭력의 학습을 통한 전이에 대한 믿음은 지나친 결정주의적인 관점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특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상담소를 찾은 학대피해 아동은 이미 폭력에 있어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그것이다(Kashani, Shekin, Burk, & Beck, 1987).

다른 한편에서는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 내 폭력 간의 세대 간 전이 효과들은 상이할 수 있으며(Stith, 2000),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학대의 경험이 폭력의 학습을 야기하는지 혹은 부부폭력 목격과 같은 간접 경험이 세대 간 전이를 예측하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제기되었다. 부부폭력의 전이효과를 중심으로 한 Stith(2000)의 메타연구는 학대의 세대 간 전이 효과에 있어 다양한 선행연구 간에 커다란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학대 및 폭력의 전반적인 세대 간 전이효과는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폭력에 대한 아동의 간접적 경험을 분석한 Kitzmann et al.(2003)의 연구 결과는 아동이 간접적으로 부부폭력에 노출되었던 목격 경험이 아동의 폭력성, 심리적·사회적 문제, 학습문제 등의 측면에서 발달에 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Kitzmann et al., 2003).

이상과 같이 폭력의 순환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반되고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대폭력의 순환성, 즉 세대 간 전이 효과의 복잡한 양상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단선적 결론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 = 성인기 폭력행위’로 이어지는 기계적이고 단선적 기존의 이해를 극복하고 폭력의 순환성과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전이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20년간에 걸친 Cohen, et al.(2003)의 연구 결과는 폭력의 전이 과정에서 가해와 피해 경험이 교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즉, 아동기 부부폭력의 목격 경험은 폭력의 세대 간 전이 이론의 주요 관심인 성인기 부부폭력의 ‘가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기 부부폭력의 ‘피해’ 역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 경험으로의 전이에 대해 Renner & Slack(2006)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로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기의 부부폭력 목격 경험이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를 통해 성인기의 피해 경험으로 이어지는 전이 과정의 가능한 한 가지 경로를 시사해 주고 있다. Renner & Slack(2006)은 아동기의 학대 피해 경험을 통해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효과가 또한 아동기의 학대 피해 경험은 성인이 된 후 자녀에 대한 학대를 예측하는 데 효과적인 변인인 것으로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맥락과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Kwong et al.(2003)의 연구는 원가족으로부터의 다양한 폭력 경험이 현재 성인기의 가족 내 폭력경험을 예측하는지 여부를 고찰한 결과 그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간, 유형 간의 폭력 전이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남자 성인의 경우 반드시 가해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경

험이 반드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 목격 경험이 성인 남성의 부부폭력 가해로 이어지거나 성인 여성의 피해 경험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력의 전이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는 Izaguirre & Calvete(2016)의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는데, 부모끼리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직접 당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아동기의 폭력 경험이 직접적으로 성인기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다양한 맥락적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맥락적 상황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의 경험, 빈곤,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폭력에 대한 태도 등이 세대 간 전이 효과의 다양성의 맥락을 구성한다. 세대 간 전이이론이 아동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의 폭력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동이 발달과정에서 얼마나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적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또래관계에서(Eron, 1997) 혹은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에 데이트를 통한 이성과의 관계에서(Feiring and Furman, 2000)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가 아동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빈곤, 교육수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역시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Bair Merritt et al., 2008). 폭력에 대한 태도 혹은 성역할태도와 같은 변인 역시 세대 간 전이 효과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변인일 수 있으며(Santana et al., 2006; Slep et al., 2001),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등도 고려해야 함을 밝히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Stith et al., 2004).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부부폭력의 다른 형태의 폭력들과의 관련성 및 순환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대 및 폭력의 맥락과 배경, 환경적 특성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폭력과 관련된 폭력의 순환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환경적, 맥락적 이해는 폭력의 순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2.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 경험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Olweus, 1994; Steinberg, 2000; Baldry, 2003; Spriggs et al., 2007; Holt & Finkelhor, 2008;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Lereya, Samara & Wolke, 2013; Shetgiri et al., 2013). 가정에서 신체적, 언어적 아동학대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가정 밖의 학교환경에서 또래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김재엽 등, 2008),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집단의 경우, 가정 내에서의 직접적인 아동 학대 피해뿐만 아니라 방임 경험과 부부폭력 목격 경험도 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Schwartz et al., 1997, 김재엽 등, 2015 재인용).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 Veenstra et al.(2005)의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집단의 부모는 폭력 허용도가 높고,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의 공격성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자기통제력 저하 등의 정신내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Schwartz et al.(1997)은 30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5년 동안의 종단연구를 한 결과, 중복경험 집단은 아동기 때부터 부모로부터 비일관된 훈육과 아동학대를 수반한 양육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당한 청소년이 왜 또래에 의한 폭력과 같은 또 다른 폭력의 재피해를 당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학대를 당한 아동은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 상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또 다른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Schwartz, Dodge & Cowie, 1993, 이인선, 최지현 2014 재인용).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은 공포나 다른 감정적인 문제들을 겪게 되고 또래와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또래로부터의 소외나 폭력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Shields & Cicchetti, 2001).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의 아동은 학교에서 또래로부터의 폭력을 당하여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아동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낮고 부모가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기대가 낮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학대 부모는 자녀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방치할 수 있다(이인선, 최지현, 2014).

3. 학교폭력과 부부폭력

청소년기 학교폭력이 청장년기 폭력으로 전이되는 것과 관련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은 데이트 시에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서도 자녀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양육하거나 학대함으로써 그 자녀들을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므로 대인관계상 어려움을 겪기가 쉽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데이트 관계나 가족관계에서도 이러한 폭력은 계속되며, 청소년기 학교폭력은 세

대와 세대를 넘어 부부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폭력이 대물림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동현, 서미, 2014).

4.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노인학대의 세대 간 전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는 학대 피해 노인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대 및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 취약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55세 이상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McDonald, & Thomas, 2013) 아동기 학대 경험만이 노년기 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생애 주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기와 노년기 동시에 학대 경험이 있는 비율이 전체 표본의 3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년기에만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7%에 그쳤다. 자기방임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Band-Winterstein, Doron, & Naim, 2012)을 수행한 연구 역시 자기방임 노인의 생애를 보면, 아동학대, 고통, 손실 등의 부정적인 생애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 자기방임 노인에 대한 질적 연구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Day et al., 2013), 아일랜드 자기방임 노인 역시 이전에 아동학대, 방임의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희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폭력전이로 인해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를 행할 수 있지만 둘 사이에는 차별적인 특성이 있다. Pillemer(1986, p.243)의 지적처럼 아동학대에서 행위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한 개인에 대해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닌 아동에게 학대를 행하는 것이지만, 노인학대에서 행위자는 폭력에 대한 모방과 함께, 보복(retaliation)을 가한다는 점에서 대별되는 차이가 존재한다(Korbin et al., 1995에서 재인용). 즉, 노인학대에서는 학대

행위자가 단순히 폭력을 학습해서 학대를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에 대해 보복을 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는 부모와 자녀가 생애동안 서로를 상호 학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순환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Jones et al., 1997) 다른 생애주기 학대 및 폭력과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인해, 아동학대는 아동이 피해자이고 부모가 가해자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노인학대는 피해자가 과연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연구자들은 노인학대 중 일부를 상호간의 학대(mutual abuse)로 보고 이 둘 간에 정서적·신체적 학대가 서로 교환된다고 보고하였다(Dong, Chen, & Simon, 2014). 즉, 과거 노인이 젊었을 때 그들의 자녀를 방임하거나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어 노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서로 가해하고, 상처를 받는 복잡한 관계인 경우가 존재한다(정혜란, 김미원, 2014).

제4절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과 그러한 경험의 부정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실증 근거들을 제공해 왔던 기존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단일한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과소 추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함과 동시에 단일 유형 중심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분절적인 접근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 경험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단일 유형의 학대 피해 경험과 비교할 때 중복학대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이며

전 생애에 걸친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 중복학대피해 아동의 규모를 밝히고 부정적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단일 학대 중심의 분절적 접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 틀(framework)로서 아동기의 중복피해경험과 가정폭력의 중복피해경험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아동기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의 주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 및 폭력 중복피해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유용하지만, 그 대상이 아동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지워진다. 따라서 아동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의 경험을 포괄하기 위해 ‘가정 내’ 다양한 형태의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Family Poly-victimization)에 대한 접근을 접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 및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로 인하여 광범위한 갈등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해체위기의 가족은 학대 및 폭력의 주요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 내 학대의 중복경험과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틀에 기초하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을 중심으로 세대 간, 세대 내 전이를 통한 학대 및 폭력의 순환구조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대는 세대 간 전이효과의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아동학대 및 부부폭력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일정한 상호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대 및 폭력의 순환성, 즉 세대 간 전이 효과의 복잡한 양상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성인기 폭력행위’로 이어지는 기계적이고 단선적 기존의 이해를 넘어서는 폭력의 순환성과 세대 간 전이의 맥락과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제 5 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
및 보호요인 분석

제1절 연구방법론

제2절 분석 결과



5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 및 보호요인 분석

제1절 연구방법론

1. 분석목적

학대·폭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Symes, 2011; 안선경 등 2012). 특히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잠재적 피해자, 피해자와 그 부모(아동학대인 경우) 혹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루어졌다(안선경 등 2012).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 학대·폭력의 피해자가 응답을 회피하거나 사실대로 응답하기 어려운 직접 설문조사의 한계와 함께 각 요인들은 피해사례별, 학대·폭력의 대상별 및 유형별로 특수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또한 요인 간 서로 관련되어 있어(WHO, 2006)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별 학대·폭력에 대한 국내 문헌의 계량적 서지정보를 분석하여 학대 유형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추출하고 다빈도로 출현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맵을 통해 발견되는 각 학대 유형별 요인 관련 키워드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학대·폭력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최근까지의 국내 학대·폭력연구에서 생애주기별로 공유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생애주기별로 특수하게 적용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생애주기별 통합적 정책대응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학대·폭력관련 선행연구의 검색 기간은 1997년부터 2016년 9월까지로 하였다. 1998년 이후 국내 각 학대 유형별 법제의 발전과 정비가 이루어져 왔음²⁴⁾을 고려하여 법 시행 이전 1년인 1997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검색엔진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였다. 국내의 주요 문헌검색엔진으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이 있으며, 이 중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논문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제외되었으며, 누리미디어(DBPIA)와 한국학술정보(KISS) 그리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중 서지정보의 중복성이 가장 적고 국내에서 발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검색엔진으로 선정하였다. 검색 범위는 국내학술지 논문에 한정하였으며, 정부나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은 배제하였다.

논문검색 시 학대 유형별로 키워드리스트를 각각 만들어 취합한 유니온셋(union set)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전체영역을 대상으로 '학대' 또는 '폭력'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하는 방식보다 자료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대 유형별로 포괄적 검색어로 관련문헌을 수집하고 키워드의 빈도와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색결과 취합된 문헌들의 검색어들을 빈도수(4 또는 5 이상의 출현빈도로 제한함)와 관계에 따라 간접관계 가중네트워크 처리 과정을 거쳐 검색어 사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24) 예컨대 1998년 7월 가정폭력방지 관계법이 시행되었으며 2000년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조항이 신설되고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도입이 있었음.

〈표 5-1〉 학대 영역별 검색어 및 문헌 수

영역 구분	검색어	문헌 수
아동학대	아동학대	1,246
학교폭력	"학교폭력"	1,822
부부폭력	"부부폭력" or "배우자폭력" or "아내학대" or "배우자학대" or "가정폭력"	1,462
노인학대	"노인학대"	311

제2절 분석 결과

1. 선행연구의 시계열적 경향성

선행연구의 시계열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합된 서지정보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아동학대의 경우 1997년 26건의 문헌이 있었으며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5년도에 70건 정도에 달했으며, 2012년까지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에 15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15년에 133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는 2014년 이후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과 이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관련 제도적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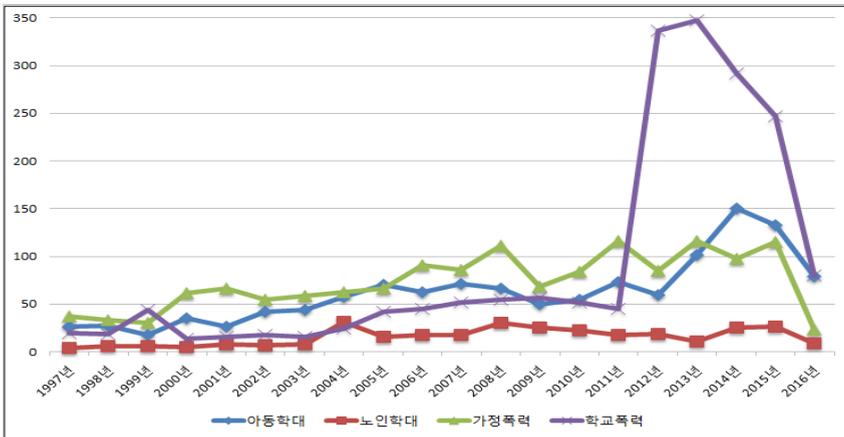
학교폭력 영역의 학술논문 건수는 연도별로 가장 급격한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최저 14건, 최고 347건). 50건 미만의 연구논문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졌으나 2012년 337건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3년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영역의 학술논문은 200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증가-감소 추세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준다(최저 30건, 최고 115건). 이러한 증감 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었다.

노인학대 영역의 학술논문은 그 규모에 있어서 가장 적었다. 따라서 시계열적으로 증감이 있더라도 그 폭은 타 영역과 비교할 때에 그리 큰 편은 아니었다(최고 31건, 최저 4건). 특징적으로 2004년, 2008년, 2014-2015년 등의 기간에 관련 문헌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5-1] 학대-폭력 관련 선행연구의 시계열적 경향



2. 학대 영역별 키워드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 아동학대 영역

아동학대 영역의 경우 분석대상문헌의 키워드를 모두 취합하여 구분하면 2개의 대분류, 8개의 중분류 영역으로 구성된다. 대분류 그룹은 하위에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특례법, 아동복지법 등 3개의 중분류 그룹으로 구성된 ‘아동복지법관련 영역’을 제1그룹(점선 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2그룹은 5개의 중분류그룹(색깔 구분)으로 구성되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등 아동학대의 각 세부 학대 유형별로 다양한 차원의 위기 및 보호요인을 포괄하고 있다(그림 5-2 참조).

나. 학교폭력 영역

학교폭력 영역의 경우, 2개의 대분류 영역, 5개의 중분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영역과 유사하게 대분류 그룹 1(그림 5-3의 파랑, 보라 및 하늘색 키워드 그룹)은 ‘청소년 학교폭력관련 법제’ 중심으로 키워드가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그룹2(그림 5-3의 빨강 및 풀색 키워드 그룹)는 다양한 학교폭력의 유형, 또래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 불링 등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과 인권 인성교육, 참여, 소통 등을 포괄하는 ‘대안관련 키워드 그룹’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다. 부부폭력 영역

부부폭력 영역의 경우 7개의 분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많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제1그룹(그림 5-4의 빨강 키워드 그룹)은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2그룹(그림 5-4의 파랑 키워드 그룹)은 ‘다문화가족의 부부폭력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그룹(그림 5-4의 노랑 키워드 그룹)은 ‘부부폭력의 심리적 요인 및 결과’, 제4그룹(그림 5-4의 초록 키워드 그룹)은 ‘가정폭력 특례법, 보호처분등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제5그룹(그림 5-4의 보라 키워드 그룹)은 ‘여성인권 관련 키워드’, 제6그룹(그림 5-4의 분홍 키워드 그룹)은 ‘피해자 및 가해자 지원 또는 치료 프로그램’, 제7그룹(그림 5-4의 검정 키워드 그룹)은 ‘부부폭력의 가족요인과 결과 관련 키워드’들을 포괄하고 있다.

라. 노인학대 영역

노인학대 영역의 경우 6개의 분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선택문헌 수의 상대적 부족으로 의미 있는 그룹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제1그룹(그림 5-5의 빨강 키워드 그룹)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관계상 위험요인’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그룹(그림 5-5의 파랑 키워드 그룹)은 ‘노인과 관련된 법제도적 보호요인’, 제3그룹(그림 5-5의 검정 키워드 그룹)은 인권, 효복지, 교정복지 등 ‘사회적 보호요인’과 연관되었다. 제4그룹(그림 5-5의 초록 키워드 그룹)은 우울, 자살생각 등 ‘심리적 위험요인’, 제5그룹(그림 5-5의 주황 키워드 그룹)은 ‘노인학대의 세부유형분류’, 제6그룹(그림 5-5의 분홍 키워드 그룹)은 여성 노인으로 개인적 ‘인구학적 차원의 위험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학대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기존 문헌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의미 있는 학대폭력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계량적 서지분석의 결과 학대 영역별로 나타난 빈번한 주제어들 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의미하는 주제어를 선정하였다. 주제어의 선정은 각 학대 영역별 전문가 1인과 연구자 2인이 각자 선정하였으며, 세 명의 결과를 비교하여 통합하고 재조정하였다.

가. 영역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1) 아동학대

아동학대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17회)이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에서는 공격성(46회), 우울(41회), 장애(14회), 아동학대 경험(11회)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내적인 차원에서는 가정폭력(33회), 부부폭력(11회) 등 가정 내 폭력유무와 함께 부모의 양육태도(12회)와 양육스트레스(8회)가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보호요인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아동복지법(41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회) 등 법적 요인과 아동보호전문기관(20회), 경찰(6회)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친권제한(18회)과 친권상실(16회) 등 친권에 관련된 요소와 아동학대 예방(23회) 및 아동보호서비스(9), 신고의도(11회)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표 5-2〉 아동학대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차원	요인 특성	내용	출현 빈도수
개인적 요인	보호요인	자아존중감	17
		자아탄력성	8
	위험요인	우울	41
		공격성	46
		아동학대 경험	11
		학교폭력	10
		부모애착	5
		수치심	5
		스트레스	5
		비행	10
		불안	6
		문제행동	8
		정서조절	6
		정신건강	6
		장애	14
사회적 위축	7		
가족내 요인	위험요인	양육태도	12
		부부폭력	11
		가정폭력	33
		양육스트레스	8
법제도적 요인	보호요인	아동복지법	4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
		형법	6
		아동보호전문기관	20
		친권상실	16
		친권제한	18
		친권	11
		가정법원	5
		아동권리협약	8
		아동학대 예방	23
		경찰	6
		유엔아동권리협약	5
		아동보호서비스	9
		아동학대예방센터	6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	6
신고의도	11		
위험요인	소진	5	
사회적 요인	보호요인	아동학대인식	8
		아동보호체계	7
		신고의무자	5
	위험요인	빈곤	8

근래에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은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 관련기관의 역할도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선행연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아동학대인식(8회), 신고의무자(5회) 등이 보호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빈곤(8회)이 위협요인으로 연구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2) 학교폭력

계량서지분석에서 파악된 학교폭력 영역의 문헌 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빈도를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 위험요인은 공격성(42회), 학교폭력 피해 경험(28회), 우울(25회) 등이었으며, 보호요인으로는 자존감(39회), 인성(13회), 학교생활적응(12회)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요인으로는 주로 위험요인이 파악되었는데, 가정폭력(30회)과 부모의 양육태도(6회) 등이었다. 관계적 요인은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뜻하는 용어들로 공감(26회), 갈등해결(6회), 소통(5회) 등이 보호요인으로 해당되었다.

법제도적 요인에는 다양한 학교폭력과 소년관련 법률 및 대책 등과 더불어 프로그램 및 교육 등 소프트웨어와 경찰, 위원회 등의 기관 등이 모두 보호요인으로 포함되었다. 가장 빈번한 보호요인으로는 학교폭력 예방(53회), 인성교육(51회), 회복적사법(37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36회),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20회) 등이 있었다.

사회적 요인에는 인권교육(20회),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11회), 사회적 지지(10회) 등이 보호요인으로 그리고 청소년 비행(14회) 등이 위협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표 5-3〉 학교폭력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차원	요인특성	내용	출현 빈도	차원	요인특성	내용	출현 빈도
개인적 요인	보호요인	학교적응	10	법 제도적 요인	보호요인	회복적정의	9
	보호요인	정신건강	5		보호요인	회복적사법	37
	보호요인	적응유연성	6		보호요인	화해권고	5
	보호요인	자존감	39		보호요인	형사조정	5
	보호요인	자기통제력	8		보호요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6
	보호요인	상담	6		보호요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	9
	보호요인	인성	13		보호요인	학교폭력 예방	53
	보호요인	분노조절	8		보호요인	소년사법	9
	보호요인	분노	10		보호요인	소년법	16
	보호요인	학교생활적응	12		보호요인	소년범죄	20
	보호요인	자아탄력성	7		보호요인	보호처분	6
	보호요인	공감능력	5		보호요인	교정복지	5
	위험요인	인터넷중독	11		보호요인	경찰	16
	위험요인	장애학생	7		보호요인	학교폭력근절대책	5
	위험요인	인터넷게임중독	6		보호요인	학생자치법정	5
	위험요인	우울	25		보호요인	피해자보호	16
	위험요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	28		보호요인	분쟁조정	10
	위험요인	학교폭력 경험	7		보호요인	조정	7
	위험요인	학교폭력 가해 경험	9		보호요인	스쿨폴리스	7
	위험요인	스트레스	5		보호요인	홀리스틱교육	8
위험요인	가해 경험	5	보호요인	학교환경	5		
위험요인	공격성	42	보호요인	공교육	6		
위험요인	피해 경험	6	보호요인	무관용정책	5		
위험요인	충동성	5	보호요인	범죄 예방	7		
가족내 요인	위험요인	가정폭력	30	보호요인	예방 프로그램	10	
	위험요인	가출청소년	6	보호요인	법교육	12	
	위험요인	부모양육태도	6	보호요인	교육	10	
관계적 요인	보호요인	공감	26	보호요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20	
	보호요인	소통	5	보호요인	학교사회복지	8	
	보호요인	배려	5	보호요인	프로그램개발	10	
	보호요인	갈등해결	6	보호요인	폭력예방	9	
	보호요인	대인관계	6	보호요인	통합교육	6	
사회적 요인	보호요인	공동체의식	9	보호요인	인성교육	51	
	보호요인	도덕성	5	보호요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9	
	보호요인	사회성	5	보호요인	교사인식	5	
	보호요인	표현의자유	5	보호요인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11	
	보호요인	사회적 지지	10	보호요인	학교폭력인식	9	
	보호요인	지역사회	8	보호요인	지역사회네트워크	8	
	보호요인	인권교육	20	위험요인	청소년 비행	14	
	보호요인	인권감수성	5	위험요인	비행	9	
보호요인	인권	13					

3) 부부폭력

부부폭력 영역 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보호요인으로는 자존감(24회)이었으며, 위험요인으로는 아동학대(52회), 우울(39회), 여성결혼이민자(이주여성)(38회) 등이었다.

가족 내 요인으로는 다문화가정(31회)이 가장 높은 빈도의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정폭력경험(24회), 이혼(7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제도적 요인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1회)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정당방위(14회), 보호처분(12회), 회복적 사법(11회) 등이 보호요인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법제도적 요인 중 위험요인으로는 유일하게 (상담원의) 소진(5회)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보호요인으로 다문화주의(10회), 사회적지지(10회), 인권(6회) 등이 있었으며, 위험요인으로는 폭력허용도(4회), 인권침해(4회) 등으로 파악되었다(표 5-4 참조).

4) 노인학대

노인학대 영역 내에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8회)이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우울(11회), 자살생각(6회), 여성 노인(6회) 등이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가족 내 요인으로는 아동학대(6회), 가정폭력(5회) 등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법제도적 요인으로는 노인복지법(10회), 유기죄(5회), 노인 보호전문기관(4회) 등이 보호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고령화사회(10회)가 위험요인으로, 노인인권(9회),

사회적지지(6회), 효복지(6회) 등이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표 5-5 참조).

〈표 5-4〉 부부폭력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차원	요인특성	내용	출현 빈도	차원	요인특성	내용	출현 빈도
개인적 요인	위험요인	공격성	24	법 제도적 요인	보호요인	회복적사법	11
	보호요인	부모애착	5		보호요인	가정폭력방지법	8
	위험요인	여성장애인 (장애인)	9		보호요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
	위험요인	비행	5		보호요인	상담위탁보호처분	4
	위험요인	우울	39		보호요인	보호처분	12
	위험요인	인터넷중독	5		보호요인	상담조건부기소유예	10
	보호요인	자기통제력	5		보호요인	피해자보호명령	8
	보호요인	자존감	24		보호요인	퇴거명령	4
	위험요인	여성결혼이민자 (이주여성)	38		보호요인	가정폭력수강명령 대상자	6
	위험요인	화의표출	4		보호요인	친권	4
	위험요인	아동학대	52		보호요인	임시조치	6
	위험요인	폭력 피해 경험	4		보호요인	정당방위	14
	위험요인	분노	8		보호요인	범죄피해자보호	5
	위험요인	스트레스	5		보호요인	보호명령	6
	보호요인	자기효능감	6		보호요인	경찰	9
	위험요인	자살생각	5		보호요인	경찰대응	8
	위험요인	가정폭력 피해 아동	5		보호요인	보호관찰	10
	위험요인	문제음주	7		보호요인	사회봉사명령	8
	보호요인	사회성	5		보호요인	수감명령	8
	위험요인	여성 노인 요인	4 10		보호요인	가정폭력상담소	4
위험요인	가정폭력노출	12	보호요인	가정폭력쉼터	8		
위험요인	가정폭력노출아동	10	보호요인	경찰의긴급임시조치	9		
위험요인	공격행동	4	보호요인	긴급피난	4		
위험요인	부부폭력목적	4	보호요인	피해자지원	5		
보호요인	적응유연성	4	보호요인	다문화가족지원법	8		
사회	위험요인	여성에대한폭력	8	보호요인	다문화정책	4	
	위험요인	가정폭력경험	24	보호요인	가정폭력상담원	4	
가족 내 요인	요인	결혼만족도	4	위험요인	소진	5	
	위험요인	다문화가정	31	보호요인	가해자치료프로그램	5	
	위험요인	양육태도	5	보호요인	집단프로그램	4	
	위험요인	이혼	7				
사회적 요인	위험요인	의사소통	5	사회적 요인	보호요인	여성인권	7
	요인	성역할	6		보호요인	사회통합	4
	보호요인	성적자기결정권	6		보호요인	여성주의	4
	위험요인	폭력허용도	4		보호요인	인권	6
	위험요인	다문화	8		보호요인	인권보호	4
	위험요인	다문화사회	11		위험요인	인권침해	4
	보호요인	다문화주의	10		위험요인	인신매매	4
보호요인	사회적지지	10					

〈표 5-5〉 노인학대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차원	요인특성	내용	출현빈도
개인적 요인	보호요인	자아존중감	8
	위험요인	우울	11
		자살생각	6
		의존성	5
		여성 노인	6
가족내 요인	위험요인	아동학대	6
		가정폭력	5
법제도적 요인	보호요인	노인복지법	10
		유기죄	5
		노인보호전문기관	4
사회적 요인	보호요인	노인인권	9
		사회적지지	6
		효복지	6
		교정복지	5
		인권	5
	위험요인	고령화사회	10

나. 생애주기별 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유사성

계량서지분석에서 검출된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등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학대·폭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취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5-6〉 전체 생애주기별 학대폭력 관련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요인특성	차원	차원 세부	내용
위험요인	개인	정서	공격성, 우울, 분노, 부모애착, 수치심, 스트레스, 불안, 정서조절, 정신건강, 사회적 위축, 화의 표출, 자살생각
		행동	문제행동, 문제음주, 비행, 공격행동, 휴대전화 의존도, 인터넷중독, 인터넷게임중독, 가출청소년

20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요인특성	차원	차원 세부	내용
		특성 경험	장애(장애학생,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여성 노인, 아동학대 경험,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가정폭력경험, 가정폭력 피해 아동,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경험, 학교폭력 가해 경험
	가족		부부폭력, 양육태도, 배우자폭력, 가정폭력, 부모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 다문화가정, 빈곤, 아동학대, 이혼
	관계적		학교폭력, 의사소통, 의존성
	사회		소진, 폭력허용도, 다문화사회, 인권침해, 인신매매, 고령화사회
	법제도		
보호요인	개인	정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성적자기결정, 학교적응(학교생활적응), 정신건강, 적응유연성, 자기통제력, 인성, 분노조절, 분노, 공감능력(공감), 자아탄력성, 공감, 배려, 도덕성, 사회성,
		행동	청소년비행,
		특성 경험	
	가족		갈등해결, 대인관계
	사회		사회적지지, 공동체의식, 아동학대인식, 신고의도, 신고행동, 상담,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인권, 학교폭력태도, 학교폭력인식, 지역사회네트워크, 다문화주의, 사회적지지, 사회통합, 여성주의, 인권, 인권보호, 여성인권,
법제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형법, 비속범죄, 비속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친권상실, 미성년후견, 친권제한, 친권, 친권의제한, 가정법원, 영유아권리, 조기개입,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예방, 경찰,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학대 예방, 부모교육, 아동권리, 아동보호체계, 신고의무자,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상담원, 회복적정의, 회복적사법, 화해권고, 형사조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에 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 소년사법, 소년법, 소년범죄, 보호처분, 교정복지, 경찰, 경찰의대응방안, 학교폭력근절대책, 학생자치법정, 피해학생의보호(피해학생 보호), 피해자보호, 분쟁조정, 조정, 스쿨폴리스, 지역사회경찰 활동, 표현의자유, 홀리스틱교육, 학교환경, 공교육, 무관용정책, 범죄 예방, 예방 프로그램, 법교육, 교육, 학교폭력 예방 프	

요인특성	차원	차원 세부	내용
			로그랩,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개발, 폭력 예방, 통합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전담경찰관, 교사인식, 학교안전, 도덕교육, 학교보안관, 자치위원회, 배움터지킴이,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담위탁보호처분, 가정폭력특례법, 보호처분,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피해자보호명령, 퇴거명령, 가정폭력수강명령대상자, 친권, 임시조치, 정당방위, 범죄피해자보호, 보호명령, 경찰대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적자기결정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쉼터, 경찰의긴급입시조치, 긴급입시조치, 긴급피난, 피해자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정책, 예방, 가정폭력상담원, 쉼터, 가해자치료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노인복지법, 유기죄, 노인인권, 효복지, 교정복지, 인권, 노인보호전문기관

이 중 2개 이상의 생애주기 기간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학대·폭력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보았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존중감이 4개 학대·폭력 영역 모두에서 가장 빈번한 보호요인으로 드러났으며, 적응유연성, 자기통제력 등이 2개 영역에서(학교폭력 및 부부폭력), 자아탄력성이 역시 2개 영역에서(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중복되게 나타났다. 위험요인으로는 우울이 전체 영역에서, 공격성, 스트레스, 학대·폭력 피해 경험, 장애 등이 3개 영역(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부부폭력)에서 중복되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은 2개 영역(부부폭력 및 노인학대)에서, 부모애착, 비행 및 아동학대 등이 2개 영역에서(아동학대 및 부부폭력), 인터넷 중독, 분노(화의 표출)가 2개 영역(학교폭력 및 부부폭력)에서, 그리고 학교폭력이 역시 2개 영역(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에서 중복되게 나타났다.

가족 내 차원에서는 가정폭력이 4개 영역 모두에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3개 영역(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부부폭력)에서 주요 위험요인으로 드러났다.

법제도적 요인에서는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법 및 기관(각

생애주기별로 명칭은 상이)이 전체 영역에서 모두 보호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찰, 피해자 보호서비스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이 3개 영역(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부부폭력)에서, 학대 예방(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친권 및 상담원(아동학대 및 부부폭력), 회복적 사법(학교폭력 및 부부폭력) 등은 2개 영역에서 확인되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지지 및 인권이 3개 영역(학교폭력,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에서 보호요인으로, 그리고 학대에 대한 인식(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과 교정복지(학교폭력 및 노인학대) 2개 영역에서 중복적인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5-7〉 생애주기별 학대·폭력 관련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중복

차원	요인특성	4개 영역 중복	3개 영역 중복	2개 영역 중복
개인적 차원	위험요인	• 우울	• 공격성 • 스트레스 • 학대·폭력 피해 경험 • 장애	• 자살생각 • 부모애착 • 분노 • 비행 • 아동학대 • 인터넷 중독 • 학교폭력
	보호요인	• 자아존중감		• 적응유연성 • 자아탄력성 • 자기통제력
가족내 차원	위험요인	• 가정폭력	• 부모의 양육태도	
	보호요인			
법제도적 차원	위험요인			
	보호요인	• 각 학대 유형별 관련법 • 각 학대 유형별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 경찰 • 피해자보호 서비스 • 프로그램	• 학대 예방 • 친권 • 상담원 • 회복적 사법
사회적 차원	위험요인			
	보호요인		• 사회적지지 • 인권	• 학대에 대한 인식 • 교정복지

제 6 장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대응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제5절 전문가 조사 분석



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 대응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1. 정책 개입의 법적 근거²⁵⁾

국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화 과정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정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되기 전에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활동이 민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주요한 민간 비정부 조직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의 결과로 2000년 아동보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아동복지법에 마련할 수 있었다.

-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고발센터를 개설
- 1983년 한국어린이 보호회가 어린이 상담전화를 개설
-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개설
- 1989년 비정부조직(NGO)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설립, 아동학대관련 문제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
- 1996년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상담센터를 개설, 신고체계를 통한 아동학대 상담사업을 시작

25)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화과정은 이봉주 등(2015)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하였음.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이후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적 아동보호체계 제공의 책임성을 가진 주체로서 정부는 정책과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아동보호전달체계를 통해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00년 10월 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구 아동학대예방센터)을 지정, 위탁 운영해왔으며, 2016년 기준 전국 총 56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직영 운영 중인 서울시 1곳, 부산시 1곳을 제외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운영 중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구축되어 온 아동보호서비스체계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과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개편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울산 및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물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되고 2015년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른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보호처분·조건부기소유예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특례법하에서는 아동학대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에 동행 출동하여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권한이 부여되고 응급조치 후 가해자 접근 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김기현 등, 2014). 또한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및 교육 등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 아동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동시에 진행 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

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례법을 통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강화
- 아동학대 사례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강화
 - 피해 아동 보호 및 비밀보호의 원칙
 - 피해 아동 응급조치 및 가해자 임시조치의 청구
 -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과거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되었던 항목이 확대 적용됨)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신설

2015년 아동복지법의 부분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 살인죄 등 아동학대관련 범죄 정의 추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지원 추가
- 경찰관의 아동학대 통보의무: 경찰관은 아동학대 의심 사유가 있을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함
- 피해 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 금지
- 피해 아동 취학 원활화 지원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금지
-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가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요약하면, 이러한 법제화 과정은 학대가 훈육이 아니라 아동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배경으로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 및 엄중한 처벌에 대한 확산되는 사회적 압력의 반영물로 이해될 수 있다(김기현 등, 2014).

2. 사회적 보호체계 및 주요 정책 현안

가. 아동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과 접근의 필요성

먼저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적 분절성은 아동보호체계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제한성과 분절성이라는 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선별주의적 접근방식의 한계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보호는 매우 협소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는 ‘신고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로서 규정되어 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사, 판정된 학대 피해 아동은 2015년 기준 1만 1,715명으로 전체 추계아동인구 대비 1.32%를 차지하는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는 실제로 현실에서 학대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실제로 학대받고 있는 아동 중 매우 심각한 고위기도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과

소추정치일 뿐이다. [그림 6-1]과 같이, 실제의 많은 학대 위기의 아동들이 빙산 아래에서 커다란 규모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요보호 아동의 이름으로, 결식아동의 이름으로, 학교 무단결석아동의 이름으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유아의 이름으로 잠재적 학대위기 아동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6-1] 아동학대 및 방임 빙산이론(Child abuse and neglect Iceberg Theory)



따라서 위기도 수준, 개입조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발위기의 다차원 특성을 정책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세경 등(2014)의 연구 결과 2013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1만 5,000명, 일시보호 및 공동생활 가정아동 2,500여 명, 입양아동 1,000여 명, 가정위탁 1만 1,000여 명, 아동학대 판정아동 6,800여 명 등을 모두 고려해도 5만여 명 이하로 전체 아동인구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선보호대상 11만 1,000여 명, 관심 취약아동 79만 1,000명의 30% 수준인 23만 7,000명을 정책대상으로 고려할 경우 그 규모는 34만 8,000명으로 현재 보호대상 아동규모의 약 8배 수준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 위기도에 따른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현행 아동보호제도는 신고제에 의존하고 있다. 즉, 학대가 발생하고 신고될 때 아동보호체계는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이고 사후대응 중심의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에서 잠재적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2015년까지 전체 신고된 아동 중 학대 피해 아동과 일반 또는 조기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19.2%에서 29.6%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표 6-1 참조).

Hussey et al.(2005)은 학대로 판정되어 아동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판정되지 않아 서비스에서 제외된 아동의 행동발달 성과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이 두 집단과 한 번도 신고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동학대 또는 방임 판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부적절한 양육이 염려되어 신고대상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학대위기아동보호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조사와 증거확보, 학대 판정이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신고 중심의 치료적(remediation)이며 징벌적(punitive)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이유진, 2014).

〈표 6-1〉 조기지원 사례와 일반 사례의 비중

연도	계(건수)	피해 아동 보호 사례		조기지원 사례 ¹⁾ 및 일반 사례 ²⁾	
		건수	%	건수	%
2001	2,606	2,105	80.78	501	19.22
2002	2,946	2,478	84.11	468	15.89
2003	3,536	2,921	82.61	615	17.39
2004	4,880	3,891	79.73	989	20.27
2005	5,761	4,633	80.42	1,128	19.58
2006	6,452	5,202	80.63	1,250	19.37
2007	7,083	5,581	78.79	1,502	21.21
2008	7,219	5,578	77.27	1,641	22.73
2009	7,354	5,685	77.30	1,669	22.70
2010	7,406	5,657	76.38	1,749	23.62
2011	8,325	6,058	72.77	2,267	27.23
2012	8,979	6,403	71.31	2,576	28.69
2013	10,857	6,796	62.60	4,061	37.40
2014	15,025	10,027	66.74	4,998	33.26
2015	16,651	11,715	70.36	4,936	2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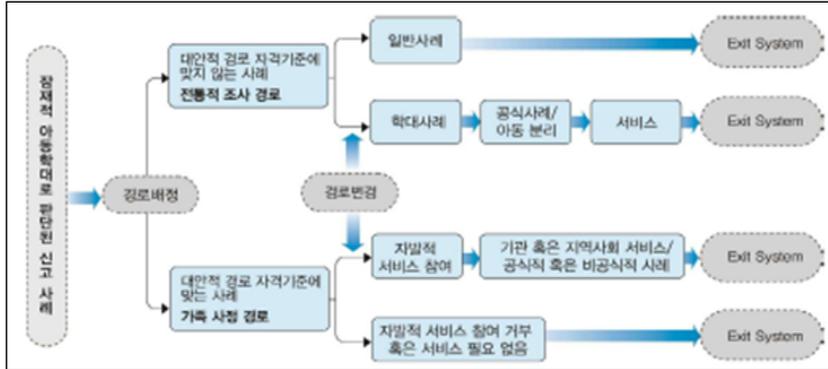
주: 1) '조기지원 사례'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용어인 '잠재위험 사례'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과 함께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혐의는 없으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 사례를 의미함.

2) 일반 사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 접수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

현행 아동보호체계가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예방에 중심을 둔 시스템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학대위기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범죄로 규정 처벌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나 경미한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을 기초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그림 6-2] 미국의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



자료: 이봉주 등(201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굿네이버스. p.42.

다.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 및 파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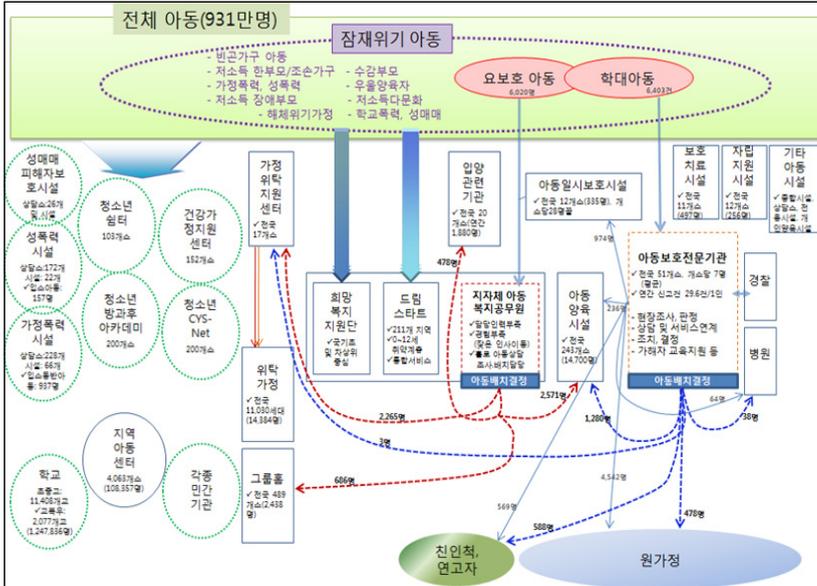
보호대상의 분절화는 필연적으로 보호체계의 분절화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부처 아동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가족보호체계가 분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체계의 분립은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 위기 유형 및 사업의 주관부처나 정책 배경 등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각각의 다양한 게이트웨이가 존재하고 보호업무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부재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동보호체계가 청소년보호체계 및 가족보호체계와 분립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및 가족지원체계가 아동보호체계와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가족지원체계 내에서 아동의 학대 예방 및 대응이라는 기본적인 접근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대를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아동이 속한 원가정에 대한 지원과 강화가 아동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둘째, 청소년보호체계와 아동보호체계 간의 부처 간 서비스 영역 간의 칸막이가 존재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양산 및 생애주기와 연동하여 보호를 제공하는 보호체계의 연속성의 단절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사업 대상이 만 12세 미만의 빈곤취약계층 아동으로 한정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센터의 경우 만 12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학대위기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보호 대상 아동을 학대 아동에 국한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로서 기능하는 현재의 대안양육체계(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등)의 분절적 운영의 문제는 아동보호업무의 연계 및 협력의 제한성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예컨대 대안양육시설 중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의 전체 절차가 전개되는데, 주요 관련주체인 미혼모 지원체계 및 청소년보호체계 등과의 연계 협력이 취약하다. 가정위탁보호체계는 지자체와 위탁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설보호는 아동생활시설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안양육시설 연계 및 조정의 핵심에 있는 지자체의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아동의 부적응 문제로 타 대안양육체계로 아동을 재배치할 때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동에 대한 사정(assessment)이 처음부터 다시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6-3] 아동보호체계 현황



자료: 박세경 등(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라.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 공공의 개입범위 확대

아동보호서비스는 민간위탁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전담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조사과정에서 상담원의 신변위험이나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강제할 수 있는 추진주체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이다.

광역 및 기초 지역자치 아동담당 공무원은 지역사회의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관련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등의 협의체가 미비하거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아동에 대한 사례판정과 조치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존재한다. 이러한 업무의 표준화

문제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체계 상담원의 업무과중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2만 2,882명을 맡고 있어 (미국의 경우 1명 상담원이 아동 2,268명) 현실적으로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은주, 2014).

공공영역에서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게이트웨이 및 컨트롤 타워를 확립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 간의 연계체계구축 및 총괄적 기획 조정의 기능을 작동시켜야 서비스의 중복을 예방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학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이슈들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이유진 등, 2014).

3. 지원예산²⁶⁾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본 아동복지예산의 분석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예산을 기준으로 하며, 보육예산은 제외한 반면 장애아동가족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된 예산이 부분 포함되었다.

2017년 아동 및 청소년분야 예산의 총액은 6,379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3,151억 원과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부분 예산 3,228억 원을 포함한다. 이는 전체 보건복지예산 57조 6,798억 원의 1.10%를 차지한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예산은 0.55%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33

26) 아동복지예산 분석은 최영(2016). 2017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요약 작성되었음.

조 919억 원 대비 0.95%에 해당한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했으나 이는 모자보건사업과 어린이예방접종 관련 예산 등 아동보건의료예산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아동복지예산은 오히려 2.7% 감소하였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212억 1,700만 원 (6.73%)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7조 6,798억 원 대비 0.036%에 해당한다. 2017년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등 아동학대 사례 예방 및 대응정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예산은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부 사업의 구성 및 내용에서도 체계적인 학대 피해 아동 및 요보호 아동 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사업, 피해 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위한 예산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되었던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의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질과 수준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보호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이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공식예산 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아동학대 관련 업무 중앙환수 이후 아동학대 예방 예산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내는 벌금으로 마련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 판매 수입인 '복권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동보호예산의 안정적 편성이 시급하다.

〈표 6-2〉 2017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16예산 (A)	'17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아동복지예산 총계: (1)+(2)	607,798	637,927	30,129	4.9
일반회계 아동복지 부문(소계) (1)	331,573	315,095	△8,644	△2.7
1. 요보호 아동 보호 육성				
-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	1,000	1,012	12	1.2
-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	992	893	△99	△10.0
-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4,791	5,017	226	4.7
- 가정위탁 자원운영	1,232	1,241	9	0.7
- 아동발달지원계좌	11,217	13,054	1,837	16.4
2. 아동복지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142,764	145,659	2,895	2.0
-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 등)	66,834	60,151	△6,683	△10.0
- 장애아동가족지원	78,732	73,870	△4,863	△6.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3,010	10,000	△13,010	△56.5
3. 아동청소년정책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666	3,880	3,214	482.6
-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335	318	△17	△5.1
보건의료 부문(소계) (2)	276,225	322,832	46,607	16.8
- 모자보건사업	48,429	70,378	21,949	45.3
-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17,837	8,255	△9,582	△53.7
-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	209,959	244,199	34,240	16.3

주: 보육관련 예산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검토자료'; 최영 (2016).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아동·청소년 분야. 월간 복지동향, (217), 17-21.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1. 정책 개입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이슈

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학교폭력과 관련 있는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등이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폭력의 경중을 고려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학생은 피해 조치를, 가해 학생은 가해 조치를 받는다.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내용은 법률의 제정 목적 및 학교폭력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교육감의 임무, 학교폭력 조사,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재심청구, 분쟁조정, 학교장의 의무,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긴급전화의 설치,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학생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법령을 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소년(만 10세에서 만 19세 사이의 청소년)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이때 법을 위반한 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법은 만 14세 이상 사람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이때 법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나. 관련 이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및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대상자의 연령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 10세 미만의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과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만 받게 된다.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촉법소년이라 함)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 조치와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범죄소년이라 함)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모두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는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고, 범죄사실이 가벼운 경우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조치도 받게 된다.

여기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중복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된 데 반해 형법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법 절차에 의해 훈방, 구류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도·교육 목적의 가해 학생 조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조대호 등, 2013). 먼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사안조사를 진행하므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사로 구성된 전문기구에서는 피해 측 진술, 가해 측 진술, 목격자 진술, 증거자료 수집 등 사안조사를 전문적으

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결과 조치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자치위원회는 단순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피해·가해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조치를 내리고 나아가 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적 기구이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동해야 한다. 또한 분쟁조정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현재 자치위원회 진행은 가해 학생의 징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손해 배상 또는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신고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처벌우선적인 법률은 또 다른 피해 학생을 만들 수 있다. 처벌주의 자치위원회 조직보다는 피해·가해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해야 2차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다. 또한 가해 학생을 처벌한다고 해서 또 다른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양측의 욕구를 파악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화해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이 실패한 경우 피해·가해 측은 화해·조정·중재의 기회를 잃게 되거나 가해 학생은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해조정기관 설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적 보호체계 및 주요 정책 현안

정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으로 이를 근거로 지원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법 제정 이후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포함된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 및 대책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해마다 마련되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사회적 보호체계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05년 3월 발표된 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2014년 12월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이 발표되었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1차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의 주요 과제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법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었다.

2차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에서는 1차 기본계획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음으로 인해 ‘학교폭력 안전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추진 전략으로는 맞춤형 예방대책, 무관용 원칙 확산, 전문 진단 상담시스템,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맞춤형 예방 교육 강화,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안전망 구축이다.

3차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은 2014년 12월 22일 학교폭력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한 정책적 노력에 중점을 두고 발표되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전반적 학교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 중점 관리,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를 전략으로 삼았다. 5대 정책 추진 분야로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예방 안전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6-3>과 같다.

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2011년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김동현, 서미, 2014).

〈표 6-3〉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정책 분야 및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세부내용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인성함양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배려심 증진 등 체험 중심 인성·생명 존중 교육 강화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또래활동을 선도하는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학생들이 직접 기획, 제작에 참여하는 예방활동 확대
	폭력 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언어, 사이버폭력 등 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확대
	학생보호인력 확충	학교 CCTV 확충 및 기능 고도화, 실시간 관제 기능 강화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사이버 환경 관리 강화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학교 단위 다양한 학교폭력 감지 체계 마련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가 참여 및 이해관계인 진술기회 확대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교원 직위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연수 실시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단위학교 Wee클래스 중심의 피해 학생 즉시 보호
	가해 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가해 유형 및 심각성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회복적 관점의 '교우관계 회복기반' 운영방안 도입

22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분야	추진과제	세부내용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단계별 학부모교육 실시 등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지원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지역의 학교폭력협의체 운영 및 협력체계 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동 캠페인 추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2015-2019년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중학교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이 불분명하고(피해와 가해의 악순환), 정서적 폭력의 증가,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4개의 직접 대책과 3개의 근본대책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사안 발생 후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은폐·축소 시 엄중 조치 등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나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려는 현상이 여전하였다. 전문상담 인력 확대가 상담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교사 및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지도 여건이 열악하였다.

신고-조사체계 개선 관련해서는 117신고센터통합, 실태조사 등 신고 및 조사 기반이 구축되어 117신고건수가 급증하였다. 반면 가해 학생 강제전학 등 엄중 조치로 경각심을 제고하였으나 시간 때우기 식의 특별교육이 여전히 존재하고, 강제전학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방 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연 2회로 의무화되어 교육 시간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또래상담 등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학교에 형성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일부 학

교는 단순 전달식의 형식적인 교육을 운영하였다.

학부모교육 확대 관련해서는 직장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 위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이 의무화되고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나 학부모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기제가 부족하였다.

〈표 6-4〉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2012년)

대책	세부 내용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 강화	학교장은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
	학기당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 1:1 면담 실시, 학부모에게 통지
	학교폭력과 이에 따른 상담·치료사항 학생별 누적관리, 생활지도
	학교폭력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 117 24시간 운영
	연 1회 국가 수준 학교폭력 실태조사(초4-고3 학생 대상)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보복폭력에 대한 징계 강화
	피해 학생 심리상담, 임시보호, 치료비용 학교안전공제회 우선부담 후 가해 학생 부모에 구상권 행사
도래활동 등 예방 교육 확대	학생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체계적으로 교육
	모든 학생 대상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하여 게임, 인터넷중독 포함한 학교폭력 징후 조기발견 후 생활지도
	사이버상담 활성화: 굿바이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네이버상담 등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 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자녀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교육 대폭 확대
	학기당 1회 이상 학부모-교사 간 상담 실시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학년초, 규율 준수를 위해 학생·학부모는 학생생활규칙동의서 제출
	중학생 체육활동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성영역 기재 강화, 입학사정관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평가요소로 활용

대책	세부 내용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학부모의 자녀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교육 대폭 확대
	학기당 1회 이상 학부모-교사 간 상담 실시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게임·인터넷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섯다운제(12시 이후 접속차단) 강화
	비교육적 게임물에 대한 심의 강화
	학교는 게임·인터넷중독 예방 생활지도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있어서는 체육 및 예술교육, 프로젝트 인성교육, 교육청 평가 개선 등을 통해 실천적 인성교육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예방활동에 적극적이면서 학교폭력을 숨기지 않고 처리한 학교가 우대받을 수 있게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처리 등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이 부족하였다. 가정, 민간단체, 기업, 대학의 예방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TV 드라마, 예능, 공익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게임·인터넷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게임시간 선택제, 유해정보 필터링 S/W 보급, 흡연과 음주 예방 교육, 금연학교 등 관련 유해요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사이버폭력이 심화됨에 따라 예방 교육을 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3)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201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등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 및 근원적인 해

결방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하에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5대 영역의 16개 중점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표 6-5 참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16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다음 <표 6-6>은 2016년 시행계획상의 부처 역할 및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표 6-5>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2014년)

영역	중점 과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① 연극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등 체험형 교육 확대
	② '어울림' 프로그램 등 예방 교육 내실화
	③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④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⑤ 관계 회복을 통한 집단따돌림 해소
	⑥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치유보호 강화
	⑦ 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내실화	⑧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확대
	⑨ 가해 학생 선도 내실화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⑩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개선
	⑪ 단위학교 대응역량 제고
	⑫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⑬ 학교폭력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⑭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운영 활성화
	⑮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⑯ 지역사회와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도 추진계획-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230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표 6-6〉 부처 역할 및 주요 추진과제

부처명	역할	주요 추진과제
교육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조성 ○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언어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확대 등 안전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및 사안처리 공정성 확보 ○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미래부	IT기술을 활용한 사이버폭력 등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인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창작예술 공연 교육 ○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법무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질서 의식 함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법정 및 모의재판 등 운영 ○ 법사랑학교 운영 확대 ○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및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서비스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가해 학생 특별교육 지원 확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관련 대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확대 ○ 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지자체 평가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지표 반영 추진
문화부	문화예술 관련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아나운서 선생님’ 운영 등 언어문화개선 운동 전개 ○ 모범PC방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건전한 PC방 이용 환경 조성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인터넷게임 과몰입 부작용 해소 사업 지속 추진
복지부	피해 학생 정신건강 등 치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교내 CCTV 관제전담요원 배치 ○ 정신건강 문제군 학생 치유·회복 지원 ○ 국립정신병원 내「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여가부	청소년 유해환경, 학생 치유 및 가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주변 청소년 출입금지 및 제한업소 단속캠페인 실시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및 인터넷·게임영상물 등 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 성폭력 피해 학생 치유·보호 및 가해 학생 특별교육 지원 확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이버폭력 관련 전문상담사 배치 ○ 가족관계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교육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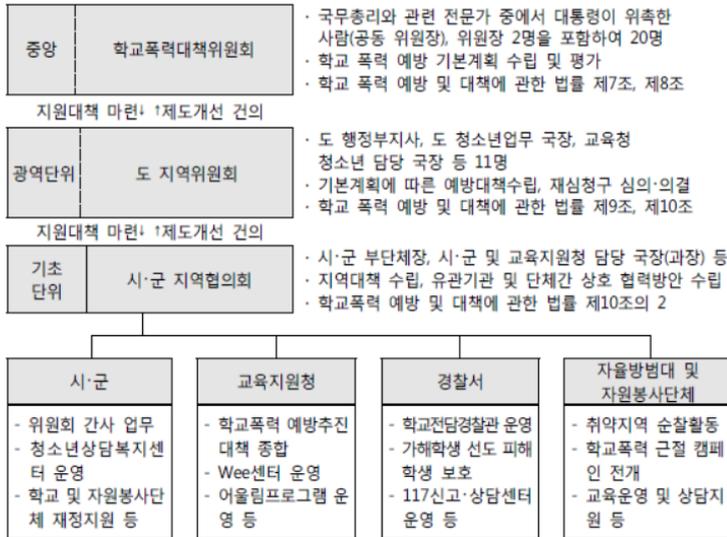
부처명	역할	주요 추진과제
방통위	방송·통신매체 중심의 역기능 대응	○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사업 확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운영 내실화 ○ 사이버언어폭력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안전처	학교주변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관리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 ○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점검 및 단속
경찰청	관내 학교 및 학생의 치안 유지	○ '청소년 경찰학교' 확대 운영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 ○ 폭력서클 등 고위험학생에 대한 조기 감지 및 대응 강화 ○ 117 신고·상담센터 접근 매체 다양화 및 상담 역량 강화
기타 부처		○ 숲 체험 등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산림청)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6년도 시행계획.

4)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책 연계망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림 6-4]는 보여주고 있다(손능수, 김순양, 2015). 우선 중앙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단위의 조직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 지역위원회 및 '시군 지역협의회'로 연결되는데,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역별 대책 수립과 기관 간 협력 및 재심청구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6-4]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책 연계망



자료: 손능수, 김순영(2015).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전담체계 및 연계망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3), p.452.

지역단위에서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를 비롯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시군 및 자율방범대와 자원봉사단체 등이 사회적 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 추진 및 대책을 종합하고, Wee센터 및 각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 파견운영, 학교폭력 발생신고의 접수와 학교폭력 사례 발생 시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한다.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을 운영하며, 재정을 지원하고, 자율방범대 등 자원봉사단체는 캠페인 및 순찰활동 등을 하고 있다.

나. 주요 정책 현안

매년 학교폭력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형·저연령의 학교폭력 발생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피해 학생 중 79.6%와 가해 학생 중 77.1%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의 피해 학생 중 75.1%, 가해 학생의 72.5%보다도 높은 것으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피해와 가해를 막론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학생이 또래 형성을 위한 친밀감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됨으로써 심리적 위축과 불안, 분노 등 피해 후유증을 앓거나 왜곡된 대인관계 양식을 발달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곽금주, 2006). 또한 학교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강제적인 심부름, 신체적 모욕이나 성학대, 사이버폭력 및 따돌림과 같은 지능형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상의 현안을 살펴보면, 일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불만 및 재심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폭력 사안처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학교 상담서비스 실효성 저하의 문제는 위기학생 상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해결해 가야 하는데 이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정·학교·정부·사회적 차원에서

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의 주요 범위는 학생 간의 폭력과 분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폭력, 혹은 학생이 교사에게 행하는 폭력 등은 모두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벗어난다. 학교폭력을 학생 간 행위로만 한정지음으로써 학교 내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교장-교사, 교사-학생, 학교-학생 등) 해결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교사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학생이 교사에게 행하는 성추행 등도 학교폭력의 광범위한 범주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진혜경, 2012).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관에 입각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교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응징에 초점을 둔 응보적 관점이었다. 응보적 관점은 “처벌받는 학생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그것을 가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누우침의 관계를 끌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이대성, 2012). 반면, 회복적 정의의 개념은 현재의 사법제도가 가해자의 진정한 교화와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받은 상처와 피해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할 때 비로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 선다고 본다. 이에 기초한 학교폭력 대응의 관점을 적용한 예방 및 사후조정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조대훈 등, 2013).

3. 지원예산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별 연간 소요예산의 3년간 추이(2014년-2016년)는 다음의 <표 6-7>과 같다.

5대 분야(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2014년 3,364억 500만 원, 2015년 382억 9,900만 원, 2016년 3,615억 1,100만 원으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281억 600만 원이 감소되었다가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532억 1,200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 6-7>과 같다.

5대 분야에 고르게 예산이 분배된 가운데,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와 지방비가 함께 배정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방비(특별교부금) 비중이 높으므로, 특별사업 형태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예산 비중을 높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3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표 6-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소요 예산 현황 추이

(단위: 백만 원)

5대 분야	구 분	2014	2015	2016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국고	34,697	34,546	33,382
	지방비 (특별교부금)	94,684	64,979	90,994
	소계	129,381	99,525	124,376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국고	3,219	3,867	11,971
	지방비 (특별교부금)	115,669	113,837	116,936
	소계	118,888	117,704	128,907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국고	822	353	274
	지방비 (특별교부금)	3,961	2,453	3,250
	소계	4,783	2,806	3,524
4.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국고	42,032	46,103	49,894
	지방비 (특별교부금)	21,240	21,573	35,102
	소계	63,272	67,676	84,996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국고	8,299	8,962	9,331
	지방비 (특별교부금)	11,782	11,626	10,377
	소계	20,081	20,588	19,708
총계		336,405	308,299	361,511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2015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201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6년도 시행계획.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1. 정책 개입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이슈

현재 한국의 부부폭력에 대한 정책 개입의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법은 97년 말에 제정되어 98년 시행되었으며 현재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의 법률안은 2016년 3월 2일에 개정되었다.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 법안은 개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사법체계의 대응 강화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현재의 가정폭력방지법은 초기의 그것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존재하는데 가정폭력 방지법 중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6-8>과 같다.

<표 6-8>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이후 개정 과정과 그 내용

개정 날짜	개정 내용
2010. 2. 4.	생계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에게 생계비 지원
2011. 12. 30.	현장출입 및 조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경찰관 출입 가능
2013. 4. 30.	건강검진: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 건강검진 지원 홍보영상 송출: 가정폭력 피해성에 대한 영상 및 지상파 방송 송출 요청
2013. 6. 27.	현장출입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찰출동 의무화: 신고사건에 대해 '출동 의무화' 및 '상담원 동행 요청' 가정폭력 의무교육: 가정폭력 의무대상 기관 확대 직업훈련비 지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2014. 12. 30.	가정폭력 범죄 추가: 유사강간 추가 (형법 제297조의 2) 신고의무자 추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또는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신변안전을 요청할 수 있음 긴급입시조치 위반자 제재조치: 과태료 300만 원 부과

238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개정 날짜	개정 내용
2015. 6. 22.	가정폭력 추방주간 시행 임시보호 기능 추가
2016. 3. 2.	시설 이용자 권익보호조치

주: 본 개정과정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되었음.
 자료: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1_01c.jsp

현재의 가정폭력방지법은 2016년 3월에 최종 개정되었으며 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피해자 권익 보호라는 목적하에 신고의무자의 확대, 사법 대응의 강화, 피해자 자립 지원 등과 같은 특성을 중심으로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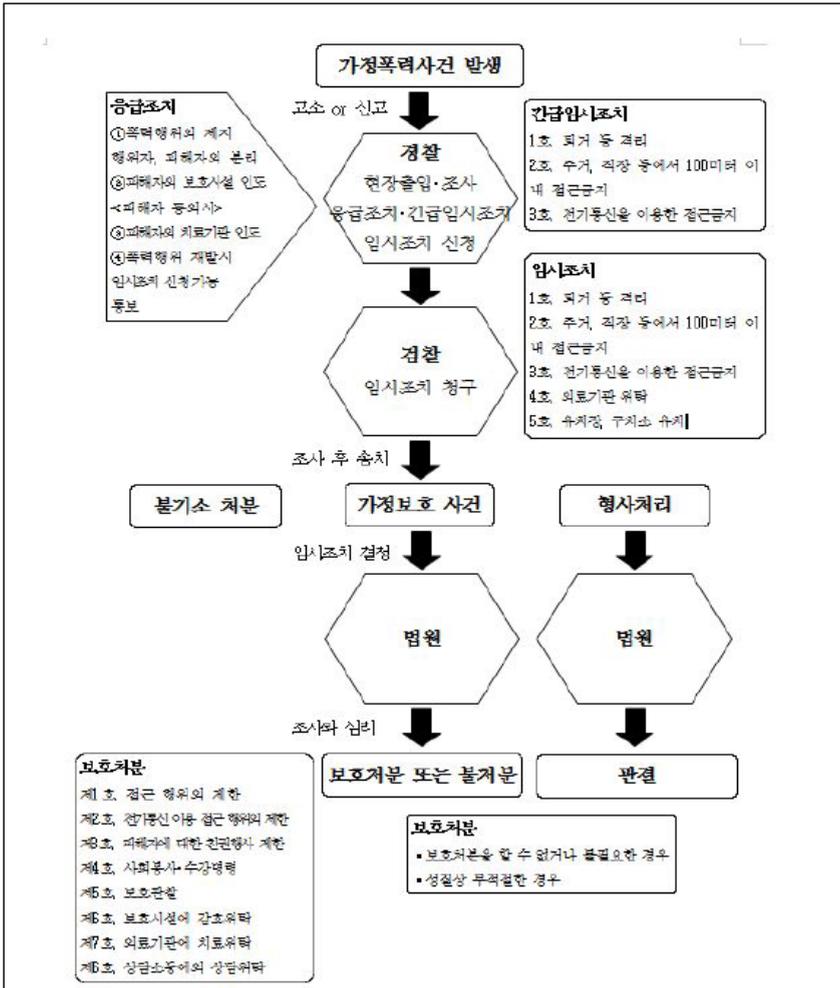
현재의 사법체계에서의 부부폭력의 대응 및 수사 과정과 절차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6-5]와 같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내용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은 가정폭력특례법의 법률현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지나치게 긴 사건 처리 소요 기간 단축
2. 신체적 폭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행 제도 극복
3. 처분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
4. 자녀 개입 및 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5. 가해자 중심의 재산처분 및 양도금지 강화
6.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 운영 필요
7. 형사사법 실무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 및 전문성 향상
8. 통합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9.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10. 낮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인식 개선

- 11. 법적 처벌대상으로서의 가정폭력 인식 개선
- 12. 가정폭력전담경찰관 교육 및 확대

[그림 6-5] 부부폭력 수사 과정 및 사법처리 절차



자료: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 p.61 참조[원자료: 김진희(2013), 여성폭력 수사과정 및 절차, 한국여성의전화 45기 여성상담 전문교육자료집, p.208].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초기의 그것보다 가정폭력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어 왔으나 아직 여러 현안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대응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처리 소요 시간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통합 재판소의 설치, 전담경찰관 교육, 형사사법 관계자들 인식 개선 등)와 피해자 중심의 법적 대응(자녀 개입의 법제화, 피해자 중심의 법 제도 개선,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 등) 그리고 사회문화 개선(가정폭력 방지법 및 처벌 대상으로의 가정폭력 인식 개선) 등이 주요 현안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입법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가정보호와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이 이루어졌다(허민숙, 2011, p.105).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가정보호라는 일차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주요 원칙이 있다. 허민숙(2011)은 이러한 법적 접근은 결국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및 처벌의 일차 목적인 여성의 보호 및 권익 향상이 흐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내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등의 용어가 아닌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관심의 대상이 가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부부폭력이 단순히 가정 내 폭력이 아닌 여성의 인권, 시민권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허민숙, 2011)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WHO 등과 같은 국제기구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려는 노력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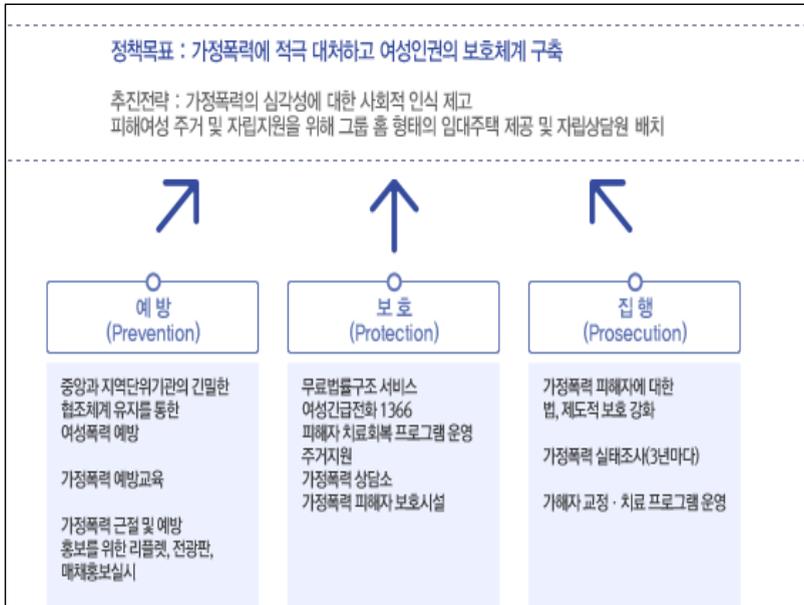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을 거쳐 많이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개정 현안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부부폭력

의 발생률 감소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의 법적 과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법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 노력이 요구된다.

2. 사회적 보호체계 및 주요 정책 현안

현재 국내의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는 여성가족부의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여성인권 보호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6-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6-6] 부부폭력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자료: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1_01b.jsp?viewfnc1=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부부폭력 정책은 주요 3대 추진과제를 통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예방, 보호, 그리고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은 부부폭력을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는 부부폭력 발생 후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도와 관련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집행은 부부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관련되어 있으며 법적 대응 및 현안은 앞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 중 보호 영역은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7] 부부폭력에 대한 ONESTOP 대응 체계



자료: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1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그림 6-7]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의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대응 체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ONESTOP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복지서비스, 상담소, 긴급피난처, 법률구조서비스, 피해자 보호 시설, 사법서비스(검찰, 경찰)의 효과적인 연계를 지향하고 있으

며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지향하고 있다.

이 중 피해여성 보호에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인 보호시설과 상담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70개로 총 1,16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소는 2016년 현재 전국 203개, 성폭력과의 통합상담을 제공하는 통합 상담소는 전국 25개, 그리고 여성의 전화는 전국 주요 자치단체 15개에 한 개씩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만 현재 2개를 운영 중으로 총 16개의 여성의전화센터가 운영 중이다. 국내의 부부폭력의 심각성과 높은 발생률 등의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피해자 보호서비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비스의 확충 및 내실 강화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부부폭력의 심각성을 토대로 2011년 2013년 2개년에 걸쳐 8개 관계부처의 협력을 전제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6-9>와 같다.

<표 6-9>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2013년)

과 제 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① 건강한 가족가치 정착을 위한 예방 교육 확대						
1-1.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의무대상 기관 확대						여가부
1-2.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전국 확대						여가부, 교육부
1-3. 해피스타트프로그램 교육 내실화						법무부
1-4. 경찰관 대상 교육 강화						여가부, 경찰청
1-5. 검찰, 법원 직무교육 내 가정폭력 과목 개설 등						법무부, 여가부
1-6.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강화						여가부
1-7.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운영						교육부
1-8. 학부모 교육 강화						교육부
② 가해자 교정 치료 효과 제고						

244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과 제 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2-1. 감호위탁 보호처분제 실효성 제고						법무부, 여가부
2-2. 가해자 교정치료 상담 중도탈락자 관리 강화						법무부
2-3. 치료위탁 처분 활성화						법무부
2-4. 수용자 맞춤형 교육 실시						법무부
2-5. 가정폭력 재범방지 교육 추진						법무부
③ 중독 예방 및 위해환경 개선						
3-1. 4대 중독 선별검사도구 및 단기개입 지침 개발·보급						복지부
3-2. 중독 예방 관리·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복지부
3-3. 음주폐해 예방 강화 및 절주운동 확산						복지부
3-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복지부
3-5. 정신건강증진센터 확대						복지부
2.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						
① 초기대응 및 긴급구호체계 강화						
1-1. 긴급 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추진(가정폭력방지법)						여가부
1-2. 긴급 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추진(가정폭력처벌법)						법무부
1-3.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경찰청
② 가해자 엄정 처벌						
2-1. 현행법 체포 및 주취상태자 경찰관서 분리 검토						법무부, 경찰청
2-2. 상습·흉기이용 사범 구속 수사, 이주여성·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 엄격한 기준 적용						법무부
2-3. 상습·고질 폭력 과거 전과·추가여죄 등 적극 확인						경찰청
2-4. 초범·합의자 원칙적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적용						법무부
2-5. 공소권 없음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법무부
3.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①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내실화						
1-1. 임시보호소 마련						경찰청
1-2. 1366 긴급구조 기능 강화						여가부
1-3. 가족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확대						여가부
1-4.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확대						여가부
1-5.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적용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과 제 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6.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1-7. 시설 입소 여성 건강검진·직업훈련비 등 지원						여가부
1-8. 피해자권리보호제도 적극 홍보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1-9. 가정폭력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여가부
1-10. 이주여성 대상 통역 지원 강화						법무부
1-11. 1577-1366 착신시스템 개선, 상담언어 확대						여가부
1-12.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을 통한 지원 강화						법무부
1-13. 공인 여성 관련 단체 발급 확인서 '혼인단절 귀책사유 증빙자료' 인정						법무부
1-14.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 신고 활성화						법무부
2]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1-1.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 마련						복지부
1-2. 아동관련 기관 취업, 운영제한 근거 마련						복지부
1-3.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 법무부
1-4. 그룹홈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등 보급						복지부
1-5. 거주형 치료, 보호시설 확충						복지부
1-6.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추진						복지부
3] 노인학대 예방보호 강화						
1-1. 피해 노인 신속 보호, 경찰관 현장 동행 추진						복지부
1-2. 피해 노인 신분조회 근거 마련						복지부
1-3. 상담원 대상 교육 전문화						복지부
1-4. 학대 사례 적극 발굴 및 지원 강화						복지부
1-5.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복지부
1-6. 지역 복지자원 연계 강화						복지부
1-7. 치매·독거노인 관리 강화						복지부

종합대책은 현재 세 가지의 주요 핵심과제(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의 대응전략을 핵심과제에 따라 마련하여 해당 업무부처의 협조를 통한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부부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및 보호체계는 해를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 남아 있다. 주요 현안 과제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안정적 예산의 지원: 현재 부부폭력의 경우 그 예산이 일반예산이 아닌 복권기금을 통한 기금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안정된 예산편성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예산지원에 있어서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일선 현장의 피해자 보호 및 부부폭력 대응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유숙영, 2014).
- 낮은 신고율과 사적인 문제로의 인식: 부부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신장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으며(이수정, 2014)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개입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다. 이미 부부폭력의 낮은 신고율은 많은 기존 연구에서 우려의 대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최근의 2013년도 실태조사 실자료를 보면 이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로 매우 높지만 신고율은 폭력 피해 아내의 경우 2.1%, 남편인 경우 0.3%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의 신고율을 보여주었다.
- 부부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 및 보호 강화: 현재 부부폭력이 발생한

경우 부부폭력의 직접적 가해-피해 대상자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개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꺼리거나 부부폭력의 상황에서 관계의 종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녀의 양육, 혹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Rhodes et al., 2010) 현재의 보호체계 속에서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보호시설을 자녀와 이용하기 매우 어려우며 부부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자녀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명령체계가 부재하여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성별이 다른 자녀의 경우 10세까지만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한계로서 지적된다. 또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는 매우 빈번하게 동시에 발생하며(Moles, 2008) 따라서 부부폭력과 아동보호체계는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통합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해자 보호서비스의 내실화: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서비스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의 양적인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이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및 지원강화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폭력 상담소 및 여성의전화의 전문성 강화,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 일시보호소적인 성격이 아닌 재활기능 및 안정적 거주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역할 강화 및 서비스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에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전문화, 상담 프로그램의 다양화, 부부폭력 개입에 있어 가족중심 이데올로기의 극복 등이 주요 현안 과제로서 제시될 수 있다.

3. 지원예산

현재 부부폭력에 관련한 예산은 여성가족부의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서 파악할 수 있다. 부부폭력이 비단 여성가족부만의 업무는 아님이 2013년 가정폭력 종합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으나 주관부처로서 여성가족부는 부부폭력 관련하여 현재 70여 개의 보호시설과 228 개의 상담소(통합상담소 포함)를 운영하고 있는 등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바 이를 분석함으로써 부부폭력의 예산차원의 특징과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부부폭력 관련 시설의 경우 국고보조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 보조로, 상담소 및 1366의 경우 50% 보조를 받고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부부폭력 관련 예산은 2016년도 사업 계획 중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의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논의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은 정규 예산안에서 지원을 받는 형태가 아닌 양성평등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크게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6-10〉은 2016년 여성가족부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인데 이 중 해당 사업은 2014년 약 175억 원이 결산되었으며 2015년에는 최종적으로 190억 원 정도가 계획되어 운영되었다. 2016년에는 조금 더 증가한 약 19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결산 결과는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2014년에서 2016년을 거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조금 증가한 경향이 있으나 여성가족부 전체적인 사업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2014년

145억 원이 결산되었으며 2015년에는 160억 원이 2016년에는 165억 원이 편성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재발방지사업에는 2014년에 30억 원, 2015년 약 27억 원,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2016년의 예산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은 성폭력 관련한 예산 역시 포함되어 있어 세분화하여 부부폭력만 선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약 17억 원
 - 가정폭력 예방 홍보: 1억 원
 - 가정폭력 예방 순회교육: 1억 5000만 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 지원: 36억 원
 - 여성긴급전화 중앙지원단 운영 지원(1개): 23억 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60억 원
 -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7억 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19억 원
 -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지원: 2억 5000만 원
 -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치유: 4000만 원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 16억 원

부부폭력 관련 예산안을 종합해보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 편성이 눈에 띈다. 또한 정규 예산안이 아닌 기금운용이란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어렵고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형태가 큰 문제점이다.

250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표 6-10〉 여성가족부 2016년도 세부 사업에 따른 예산안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4 결산	2015계획		2016 계획 (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총 계	156,676	190,531	190,531	197,755	7,224	3.79
1231 경력단절여성등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1,450	1,310	1,310	1,197	△113	△8.6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231-431)	50	50	50	-	△50	△100.0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1231-432)	1,400	1,260	1,260	1,197	△63	△5.0
2131 한부모가족지원(기금)	57,237	78,442	78,442	77,854	△588	△0.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131-431)	51,556	72,442	72,442	72,442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131-433)	2,286	2,303	2,303	1,970	△333	△14.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2131-434)	3,395	3,697	3,697	3,442	△255	△6.9
2156 다문화가족지원	69,247 (77,651)	61,957 (71,107)	61,957 (71,107)	70,298	8,341 (△809)	13.5 (△1.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2156-431)	4,362	5,863	5,863	5,706	△157	△2.7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2156-432)	60,387 (68,957)	50,610 (59,760)	50,610 (59,760)	61,225	10,615 (1,465)	21.0 (2.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156-433)	321	1,994	1,994	-	△1,994	△100.0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2156-436)	4,011	3,490	3,490	3,367	△123	△3.5
413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기금)	-	14,130	14,130	14,554	424	3.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33-332)	-	14,130	14,130	14,554	424	3.0
415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7,459	18,983	18,983	19,463	480	2.5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4152-431)	2,964	2,964	2,964	2,974	10	0.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52-432)	14,495	16,019	16,019	16,489	382	2.4
4156 취약계층여성자원(기금)	1,289	1,187	1,187	-	△1,187	△100.0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4156-433)	1,289	1,187	1,187	-	△1,187	△100.0

구분	2014 결산	2015계획		2016 계획 (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7176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영비	12	13	13	11	△2	△15.4
기금관리비(7176-601)	12	13	131	11	△2	△15.4
8999 복권기금전출(여성발전기금)	3,577	5,903	5,903	7,673	1,770	30.0
여성발전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전출 (8999-890)	3,577	5,903	5,903	7,673	1,770	30.0
9701 여유자금운용(여성발전기금)	4,864	8,606	8,606	6,705	△1,901	△22.1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2)	4,864	8,606	8,606	6,705	△1,901	△22.1

주: ()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 포함금액임(2015년 일반회계).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1. 정책 개입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이슈

국내 노인학대에 대한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해 개입하고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쌓은 시기로 2000년부터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2000년 카리타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학대예방센터를 개소, 운영하면서 노인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1588 전국 단일망(24시간 핫라인) 상담전화센터 및 응급쉼터 사업”이 운영되었고 2003년에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수가 확대되었다. 2003년 5월 16일 김홍신 의원실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 발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고 같

27) 이윤경 등(2015)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요약하였음.

은 해 11월 21일 노인학대상담센터 전문위원회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2015년 이전까지의 시기가 포함된다.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외에도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시기이다. 전국에 17개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정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게 된다. 2010년에는 노인학대 예방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2014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가 주요한 정책적 현안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노인학대관련범죄 조항이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포함된 2015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2015년 12월 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내용을 신설하였고,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형법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의 학대로 정의하였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형법,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 주로 관련이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의 법적인 정의, 금지행위, 신고전화 및 신고의무자, 응급조치의무, 조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관련범죄와 관련된 형법의 내용을 보면 노인에 대한 상해, 폭행, 협박, 유기, 체포, 감금, 가혹행위에 대해 법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성적 학

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강동욱, 문영희, 2015). 이 외에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신체수색죄, 강도, 손괴, 강요죄, 횡령죄,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노인학대가 가족구성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정폭력이라면,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적용을 받는다.

노인복지법 중 이슈가 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을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제한함으로써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 병원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게 되어 있다. 원래 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시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삭제되었고 노인전문병원(현재는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조사가 설령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인 조치·대응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 대한 제재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가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장기요양법 위반으로 인해 시설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받은 시설들이 이용노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타 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를 취하는 의료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시설들이 가족들에게 전원 조치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 방임, 인권침해 등이 의심되지만 이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쟁점을 보면, 신고의무 대상자 범위가 좁게

명시되어 있고, 면책조항이 부재하는 등 실제적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신고의무대상자가 법적으로 범위가 협소한 문제를 살펴보면(김경호, 2008), 경찰 및 공공안전 관련기관의 종사자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은 신고의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직업의 성격상 사기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한 징후를 발견하기에 용이하지만 이들 직군은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 10조 제2항)에서는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정하였으나, 노인학대는 8개 직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모든 공무원, 노인대상 교육기관, 일반상담기관 등 노인과 수시로 만나거나 노인이 활동하는 기관의 종사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강동욱, 문영희, 2015). 2014년 사회보장위원회의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에서 8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했던 것을 14개 직군으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의 4개 직군이 신고의무자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요양병원 종사자나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앞서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양병원내 학대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들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의무자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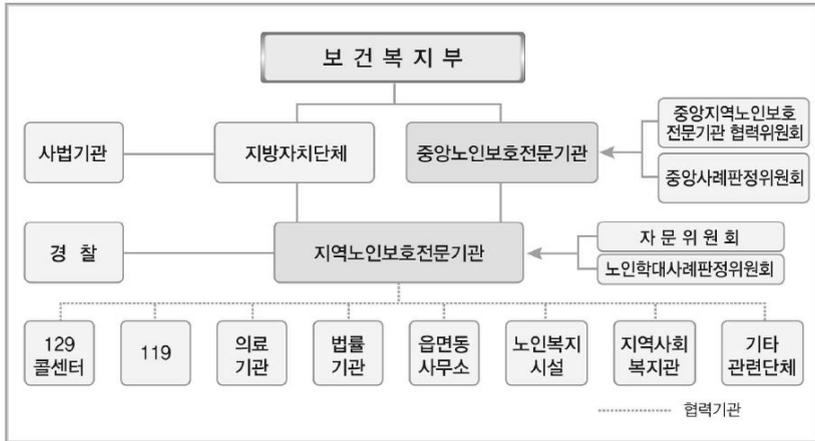
셋째,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다는 점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김경호, 2008). 노인과 많이 대면하는 종사자들은 학대신고를 꺼리는데, 이는 법적 분쟁과 관련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학대를 신고한 자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신분보장에 대한 내용과 방

법상의 구체적인 명시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선의로 신고한 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분야 종사자들의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해 주는 조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학대에 대한 익명신고(미국에서 시행)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보호체계 및 주요 정책 현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사례에 개입하여 노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6년 현재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대책관리·지원·조정업무는 서울에 소재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29개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보호사업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업무수행추진체계는 [그림 6-8]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체적인 업무 총괄을 수행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9콜센터, 경찰, 119, 의료기관, 법률기관,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기타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6-8]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내용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③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④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⑤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2015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사례가 접수된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학대 사례 3,818건 중 현장조사를 3,659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실시비율 95.8%), 전체 학대 사례 중 응급 사례는 6.6%, 비응급 사례는 59.5%, 잠재 사례는 33.9%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평

균 28.1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 중 상담서비스가 62.7%를 차지하였다. 정보제공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중 28.5%를 차지하였으며, 복지·법률·의료·보호서비스가 제공된 경우는 1% 내외를 차지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는 1인당 평균 4.3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학대 피해 노인과 비교하였을 때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에서 17.0% 수준에 불과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역시 상담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른 서비스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은 주로 학대 피해 노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1〉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서비스 현황(2015년)

(단위: %)

구분	상담	복지	법률	의료	보호	정보제공	계
피해 노인	62.7	6.0	0.1	1.0	1.7	28.5	100.0
학대행위자	61.2	3.1	0.1	0.1	0.0	34.9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

나. 긴급전화의 설치 및 노인학대 신고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학대 예방 차원에서 24시간 긴급전화(1577-1389)를 통해 학대신고를 접수받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인지하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학대와 비교할 때 노인학대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8.5%로 나타나 2005년 8.3%와 비교할 때는 10% 포인트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2005년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의 27.5%는 신고의무자가 신

고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b), 인건비는 기관 유형별로 차등지원(가형은 9명, 나형은 8명, 다형은 7명)을 하며 정부보조금(국고+매칭 지방비)의 85% 이하로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며, 사업비는 15% 이상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 상담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사 직급에 따른 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노인학대전문상담원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현장조사 시 상해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과 같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며 지자체나 법인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관별로 반드시 필요한 사무원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없고 지방비로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 주체 자부담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업무량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7급 이상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업 행정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의료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한정된다. 실

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들은 신규 직원으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100시간 노인보호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상담원은 학대 피해 노인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개입을 통해 학대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학대 상황을 개선시키며,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비스를 연계, 의뢰하는 등의 포괄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기관장을 제외하면 203명으로 집계된다. 2015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 명의 상담원은 58.6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452.4회의 상담을 진행,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18.1회, 방문상담을 96.2회 실시하는 등 업무량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노인학대 예방 대책의 주요 현안

노인학대 예방은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학대를 중지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며 더 나아가 노인학대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이미진, 2012: 51). 이는 우리나라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1차 예방, 노인학대의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방, 노인학대가 확인된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3차 예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공계순, 2000). 노인학대 예방 대책의 구분은 예방 목적에 따라 주요 대상자, 서비스 제공시기가 달라진다(표 6-12 참조). 본고에서는 3차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²⁸⁾

28) 1, 2차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진(2012)을 참조하기 바람.

〈표 6-12〉 노인학대 예방 대책의 3차원

	1차 예방	2차	3차
목적	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홍보	노인학대 발생요인 제거, 방지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 노인학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제거
대상	전체 인구	노인학대 고위험군 집단: 장기요양보험 등급대상자, 돌봄노동 종사자, 노인 가족수발자, 독거노인 등	노인학대 피해 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
서비스 제공시기	노인학대 발생 전	노인학대 발생 전	노인학대 발생 후 개입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3차 예방의 문제점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적인 부족, 너무 짧은 일시보호기간 및 일시보호제도의 문제, 주거지원 문제, 의료비 지원 문제, 장기요양시설 평가와 노인학대 예방체계와의 연계 부족,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의 부족, 처벌 위주의 학대행위자 개입의 문제점, 노인학대 응급 사례에 대한 매뉴얼 부족을 손꼽을 수 있다.

첫째, 노인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가 부족하다. 2016년 현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9개(중앙 1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0-14세 인구 654만 명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개인 데 비해 65세 이상 인구 669만 명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9개로 인구 대비 기관의 수가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비례로 보았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보호전문기관별 종사자 1인당 관할 인구수를 비교해 보아도 노인은 3만 1,146명으로 아동 2만 9,417명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사회보장위원회, 2014).

둘째, 학대 피해 노인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일시 생활할 수 있

는데, 이 일시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로 되어 있다.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폭력 가해자는 6개월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며, 이 접근금지는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따라서 학대 피해 노인이 학대피해전용쉼터에서 3개월(1개월 연장 가능)간 일시보호를 받음으로써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접근금지기간과 비교할 때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짧은 일시보호기간은 상담원이 단기간 내에 피해 노인의 주거지 및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와는 달리 가해자가 형사처벌되기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긴급임시조치제도나 임시조치제도가 부재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강동욱, 문영희, 2015).

셋째,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서운(2004)의 연구에서 학대 피해 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쉼터를 포함한 주거지원서비스로 나타나, 학대 피해 노인에게 행위자와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함이 학대 예방에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행위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계속 거주하고 이로 인해 학대가 재발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넷째, 노인들이 학대 피해로 인해 의료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데, 학대 피해 아동에게는 20여만 원의 의료비 지원(업데이트)이 제공되지만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전무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설 내 노인학대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시설 내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

인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인권지킴이단이 모니터링하는 시설의 수가 제한적이고 방문횟수 또한 1년에 수차례밖에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설 내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단의 시설평가와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을 연계하는 방식(예를 들면 시설 평가시 인권지킴이의 참여 보장), 시설평가 항목에 노인학대·인권관련 항목의 추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이미진, 2015).

여섯째, 학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대 피해 노인은 중복학대 등으로 인해 욕구가 복잡다단하고, 학대행위자, 가족 역시 사회경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취약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지지가 취약하거나 고립된 상태에 처해 있으며,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나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틀 안에서 통합, 조정,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 차원의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이연호, 2004). 학대 사례 중 절반 정도는 학대 상황 개선으로 원가정에 복귀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재학대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노인에 대한 독립적인 주거공간과 보호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한혜경(2006)은 노인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 사례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종결 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 역시 처벌 위주로 접근하고 있지만 처벌이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례는 노인학대 사례 중 극소

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예방,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예: 노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고용·취업대책 마련 및 서비스), 노인학대행위자에게 학대인식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한 부족하다. 특히 학대행위자 중 다수는 정신질환·알코올남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호주의 사례처럼 이들에 대한 정신보건·상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개입 대책 중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응급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출동 준비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경호, 2007). 우리나라 노인보호업무수행지침을 보면 응급시에 노인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신고접수 후 보고체계방법 및 내용, 현장조사의 절차 및 준비 등에 대한 명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 외에도 앞서 논의한 자기방임에 대한 개입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와,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증가한 시설로 인해 시설 내 학대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3. 지원예산

2017년 노인복지예산은 9조 5,20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8% 증가하였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6). 노인복지예산의 99%는 일반회계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 순위별로 보았을 때 기초연금이 8조 960억 원으로 1순위를 차지하며 비중으로는 85.4%를 차지한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순위가 높은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양로시설 운영,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 운영,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단체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사업 예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규모는 69억 3천 200만 원으로 규모 순위에서는 9위, 예산 비중으로는 0.07%에 그치고 있다.

노인보호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 추이를 보면 2013년 38억 7,700만 원에서 2014년 58억 2,100만 원으로 1.5배 증가하고,²⁹⁾ 그다음 해인 2015년 69억 5,800만 원으로 1.2배 증가한 이후에는 소폭의 증감을 보이면서 정체된 상태에 있다(최혜지, 2014; 최혜지, 2015). 2015년 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건수는 1만 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일반 사례는 14.9%가, 학대 사례는 8.1% 증가한 것(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과 비교해 보면 최근 3년간 노인보호사업 예산의 증액은 노인인구수, 그리고 노인보호업무의 폭발적인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정부의 관심 부족, 사업의 열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열악성에 대해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고에서 상담원의 위험수당과 사무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예산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예산지원의 열악성은 과도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들에게 적절한 임금 및 보상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상담원이 쉽게 소진되거나 단기간 근무 후 이직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소진은 업무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높은 이직률은 업무의 전문성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상담

29) 2014년에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4개에서 27개로 증가한 것에 기인함.

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시급하고 절실하다.

〈표 6-1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예산(2016-2017)

구분	2016년		2017년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총계 (1)+(2)+(3)+(4)	9,260,863	100.00	9,520,306	100.00
기초연금(4)	7,869,173	84.97	8,096,093	85.04
일반회계 (1)	1,345,892	14.53	1,380,116	14.50
고령친화산업육성	2,056	0.02	2,132	0.02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4,209	0.05	3,353	0.04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634,291	6.85	668,868	7.03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	4,483	0.05	4,558	0.05
노인보호전문기관	6,907	0.07	6,932	0.07
노인단체 지원	41,104	0.44	10,942	0.12
노인돌봄서비스	156,335	1.69	161,697	1.70
양로시설 운영지원	32,326	0.35	30,662	0.3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03,486	4.36	440,038	4.62
노인요양시설 확충	27,089	0.29	21,337	0.22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504	0.01	504	0.01
장사시설설치	32,838	0.35	28,825	0.30
노인정책관기본경비(총액+비총액)	264	0.00	268	0.00
국민건강증진기금 (2)	33,264	0.36	32,638	0.34
치매관리체계구축	15,831	0.17	15,405	0.16
노인건강관리	17,433	0.19	17,233	0.18
응급의료기금(3)	12,534	0.14	11,459	0.12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12,534	0.14	11,459	0.12

자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2016).

제5절 전문가 조사 분석

1. 조사개요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 정책 접근을 위한 실증적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등 4개 영역의 학계전문가, 관련 공무원 및 민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6년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이었으며 이메일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완료부수는 총 46부이었다.

〈표 6-14〉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학계전문가, 공공기관, 민간기관 종사자
표본추출틀	전국 각 학대 영역별 전문가 리스트, 관련학회 및 단체 회원 명단
조사기간	2016년 10월 중(2주간)
조사방법	이메일조사
표본크기	46명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응답자 총 46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비는 유사하였으나 거주지역별로는 도시(93.5%)가 농어촌(6.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소속은 민간기관(48.9%), 대학(33.3%), 연구기관(6.7%) 및 행정기관(4.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전문영역 비중은 아동학대가 55.6%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학대가 28.9%, 학교폭력 6.7%, 부부폭

력 4.4%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과 부부폭력 관련 전문가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5.4세이었으며, 전문가의 관련분야 경력은 평균 13.3년이었다.

〈표 6-15〉 전문가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세, 개월)

구분		비율 / 평균값
응답자 거주지역	도시	93.5
	농어촌	6.5
응답자 성별	남성	52.2
	여성	47.8
응답자 소속	대학	33.3
	연구기관	6.7
	행정기관	4.4
	민간기관	48.9
	기타	6.7
응답자 전문 분야	아동학대	55.6
	학교폭력	6.7
	부부폭력	4.4
	노인학대	28.9
	기타	4.4
응답자 연령		45.35 (8.028)
관련 분야 경력		159.61 (87.051)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 학대 및 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및 필요조치, 국가차원의 행동계획 수립 필요성, 유형별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성,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관련 법제의 개선사항, 관련 서비스체계에 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국내 학대 및 폭력 실태조사의 적절성, 생애

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학대·폭력의 대물림 및 중복학대와 관련된 의견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6-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 항목

구분	항목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 학대·폭력의 심각성 정도 -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 학대 및 폭력의 발생 추이
학대 및 폭력에 대응하는 유형별 예방 프로그램	- 유형별 학대 및 폭력 관련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학대 및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 서비스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필요사항: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학대 및 폭력관련 실태조사	- 국내 학대 및 폭력 실태조사의 적절성 여부, 개선방안
학대 및 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현황	- 유형별 학대·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과 국가의 정책 개입의 우선사항 - 생애주기 전반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조치(서술)
학대 및 폭력관련 법제화 수준	- 유형별 학대 및 폭력관련 영역 법제화와 관련한 개선사항(서술)
학대 및 폭력에 대응하는 국가행동계획	- 국가차원의 행동계획 수립 필요성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통합적 접근	- 유형별 학대 및 폭력의 경험 빈도 - 학대 및 폭력의 대물림 목적 빈도 - 학대 및 폭력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서술)

2. 전문가조사 주요결과

가. 학대·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학대·폭력이 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편(3점=심각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3.6점), 노인학대(3.32점), 생애주기 전반 학대폭력(3.27점), 부부폭력(3.23점), 학교폭력(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7〉 전문가가 인식한 우리 사회 학대폭력의 심각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생애주기 전반 학대폭력	3.27 (.539)
아동학대	3.60 (.495)
학교폭력	3.20 (.594)
부부폭력, 배우자학대	3.23 (.565)
노인학대	3.32 (.561)

주: 본 문항은 ①'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심각한 편이다', ④'매우 심각하다' 로 응답하였음.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학대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지난 20년간 점차로 증가(2점=점차로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발생의 추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부부폭력, 생애주기 전반의 학대폭력,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은 점진적 증가로 보고 있었던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는 좀 더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표 6-18〉 전문가가 인식한 지난 20년간 학대폭력의 발생 추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생애주기 전반 학대폭력	2.16 (.878)
아동학대	2.00 (1.011)
학교폭력	2.09 (.763)
부부폭력, 배우자학대	2.33 (.826)
노인학대	1.78 (.670)

주: 본 문항은 ①'급격히 증가', ②'점차로 증가', ③'변화없음', ④'점차로 감소', ⑤'급격히 감소' 로 응답하였음.

나. 학대·폭력 관련 실태조사

우리나라의 학대·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영역별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최초 실시된 이후에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 기 실시)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단순화된 아동학대 관련문항(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는 교육부 주관으로 2012년 최초 실시된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학생을 조상대상으로 하며 조사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과 예방 교육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2004년 최초 실시되었으며, 3년을 주기로 하여 가장 최근에는 2013년도에 실시되었다. 노인학대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9년 최초 실시된 이후 역시 노인실태조사(2014년, 3년 주기)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화된 노인학대 관련 문항(학대 경험 유무 및 가해자, 대처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학대·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전국적 학대·폭력의 발생률을 파악하고, 학대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정책 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주기, 도구 및 시행방법의 적절성과 결과의 타당도 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학대·폭력 관련 실태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실태조사의 경우 특히 조사주기에서 1.95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도구와 시행방법, 결과의 타당도 또한 적절하지 않은 편이라는 의견의 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노인학대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도구(2.07점), 발생률 등 결과의 타당도

(2.20점), 조사의 시행방법(2.39점) 등에서 적절치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부부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비교적 '적절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과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으나 발생률 등 결과의 타당도에서는 근소하게나마 적절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비중이 더 높았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 6-19〉 전문가의 학대·폭력 관련 실태조사 적절성에 대한 의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아동학대	조사주기	1.95 (.714)
	조사도구	2.34 (.745)
	조사의 시행방법	2.43 (.728)
	발생률 등 결과의 타당도	2.43 (.587)
	조사시행주체	2.93 (.558)
학교폭력	조사주기	2.75 (.630)
	조사도구	2.70 (.564)
	조사의 시행방법	2.60 (.591)
	발생률 등 결과의 타당도	2.55 (.639)
	조사시행주체	2.79 (.570)
부부폭력	조사주기	2.45 (.677)
	조사도구	2.56 (.680)
	조사의 시행방법	2.54 (.643)
	발생률 등 결과의 타당도	2.42 (.642)
	조사시행주체	2.77 (.667)
노인학대	조사주기	2.40 (.871)
	조사도구	2.07 (.721)
	조사의 시행방법	2.39 (.703)
	발생률 등 결과의 타당도	2.20 (.679)
	조사시행주체	2.73 (.742)

주: 본 문항은 ①'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③'적절한 편이다', ④'매우 적절하다' 로 응답하였음.

실태조사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개선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의견은 실태조사의 조사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학교폭력실태조사 제외). 현재 5년, 3년 등의 조사주기를 줄여서 적어도 격년이나 매년 조사를 실시하면 변화하는 폭력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실태조사가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영역별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통일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 내 폭력과 관련된 조사들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모두 통합하여 실시토록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조사의 시행연도, 해당 대상에 대한 조사문항 및 방법 등을 통일한다면, 실태조사 간 문항응답결과의 비교가 가능하여 결과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조사도구와 관련해서는 특히 노인과 아동영역의 학대실태조사가 일반 대상별 실태조사에 통합되면서 조사문항이 줄어 결과의 신뢰성이 약화된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문항을 세분화하고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설문조사의 한계를 지적한 전문가들은 학대에 대한 조사가 설문지 응답방식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인 폭력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조사방식의 오류 등으로 발생률이나 실태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질적 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혹은 종단적 연구 등 대안적 방법의 조사가 시행되어 그 결과를 보완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의 공정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조사경로에서 민감한 주체(학교, 선생님 등)가 개입되지 않도록 가정방문 면접조사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태조사의 대상과 관련하여 최근 학대 피해 사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시설노인, 그리고 학교 밖 아동청소년과 초등 저학년 아동 등도 실태조사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다.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과 정책 현황

학대·폭력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과 그 대응 프로그램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정책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영역에서 가정방문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 교육(아동대상 및 일반인대상) 프로그램 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방과후 돌봄에서는 효과적인 편이라고 보았으나, 가정방문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다소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관련 정책, 시행기관 및 인력의 공공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유사한 비중으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반드시 대폭 확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별 1개 수준으로 증설하고, 아동학대 관련 전문인력을 각급 공공기관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추가 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지원 등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학대 사례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학대의 심각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미한 사례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초기에 가족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아동학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사후대처식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립되는 땀질식 대책이 아니라 기존 대책 및 법 등이 원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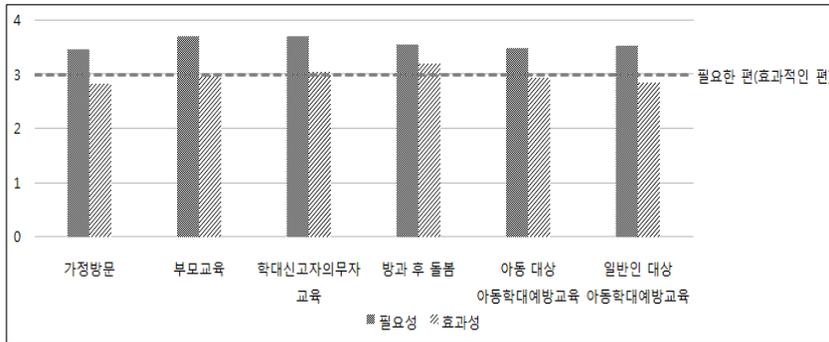
으로 적용되고 실행되면서 부모교육, 다양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이 가능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위주보다는 교육과 지원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재학대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친권박탈과 원가정분리로 인한 가정의 아동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중심의 이념을 탈피하고 가정 외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교육의 통로를 다변화하여 초·중·고 교과과정 및 직장 내에서도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6-9]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단위: 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대하여 유관기관 간 상호 신뢰와 전문적인 협력관계가 현재는 상당히 미흡하여 아동의 최우선 이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발생 이후 사례에 대한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그 밖의 기관 및 관련자들을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아동

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 사례의 조사 시 경찰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뿐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의 관련 기관(병원, 지자체, 교육시설 등) 간 아동학대 인식의 격차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들로는 인성교육, 청소년 삶의 기술 및 사회적 능력 개발훈련, 또래상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상시지원 프로그램 및 온라인 활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필요한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성교육이나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현행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온라인 활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학교 내 학교폭력관련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이 아니라 조정이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학교 내에 부족하므로 학교 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하며, 그에 걸맞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재는 학교폭력이 드러난 학교가 오명을 쓰게 됨으로써 일반 교사들은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사회복지사 혹은 학교폭력 전문상담원 등을 학교별로 배치하여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사후관리를 진행한 학교에 대하여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

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중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가해 학생에 대한 단일한 대처와 신고학생에게 보복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처벌과 신고학생에 대한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학생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게 하는 정책, 즉, ‘회복적 정의’ 도입을 통해 갈등해결 방법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게만 하는 경우,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내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원 및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사후대응방식이 높은 편이나 학령기의 폭력은 교육환경과 잘못된 생활문화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으며, 빈곤, 학교부적응,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 부모의 무관심이나 과잉보호 등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현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미약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자존감과 가정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한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별상담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내 지원시스템이 강화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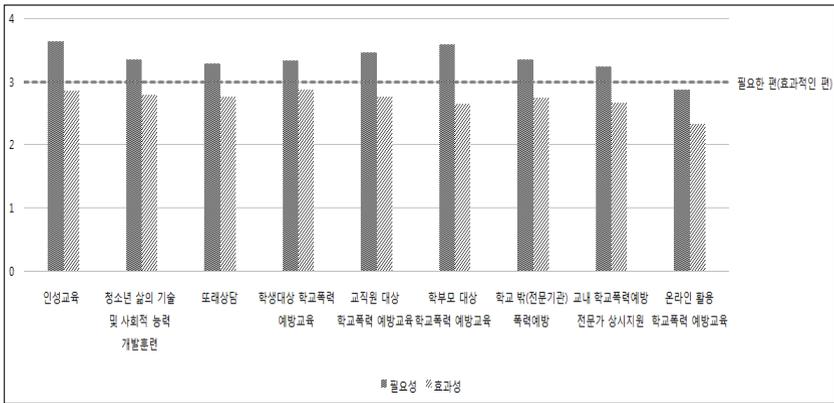
한다는 지적이다.

부모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며, 학생들 대상으로는 폭력의 민감성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전환, 온라인상의 폭력(흔히 언어폭력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폭력 관련 정책은 학교와 교육부 중심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므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림 6-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단위: 점)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부부역할 성평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생활기술 및 자립관련 프로그램, 부부상담 프로그램,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가해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되어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전문가들

에게 문의하였다. 조사 결과,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필요한 편’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성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프로그램, 부부상담 프로그램,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부부역할 성평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생활기술 및 자립관련 프로그램, 가해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 등의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전문가들이 배우자학대와 관련하여 현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나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지원 중에서도 경제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법원-경찰-지원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폭력이나 배우자 학대는 재발 사례가 높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예를 들어 학대 사례 종료 후에도 사후 모니터링 및 가족상담센터 연계 등을 통한 필수적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접근과 부부폭력의 인접 문제들인 알코올, 도박, 정신건강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입을 제공하여 원인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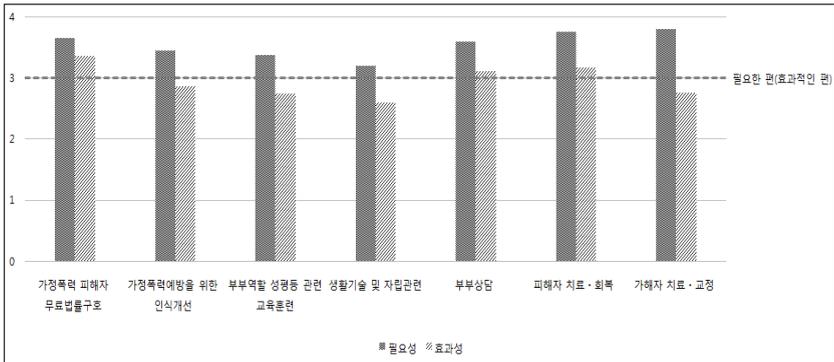
또한 피해자쉼터에 입소할 때에 자녀 동반 입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동반 가능하더라도 아이의 연령 및 성별 등에 제한 사항이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녀 동반 입소 가능한 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부부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

적 인식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특히 경찰 및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 및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식 개선의 방안으로는 교육, 상담 및 체험을 통한 의식구조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영역과 가정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력뿐 아니라 보호체계 간의 협력 또한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다.

[그림 6-11]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단위: 점)



노인학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인식 개선 프로그램, 자립성 제고 프로그램, 수발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및 가해자 대상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등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서는 일반인 및 노인대상 노인학대 인식 개선 교육, 노인의 자립성 제고, 비공식적 수발자(가족)에 대한 지원, 가해자 대상 교육 및 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은 편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학대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발굴과 인식 개선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즉,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 내 문제로 취급할 뿐 아니라 가족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한국노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대 사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 파악도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적으로도 노인학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학대 유형 중 가장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며, 사회적 경각심 수준도 낮고, 노인의 폐쇄성으로 문제개입시점 또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자기방임 예방 프로그램이나 성년후견인제도 등 보다 선제적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인을 보살피는 가족을 지원하는 대책(부양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대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과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다 장기적이고 예방적 관점에서는 노인의 경제적·정서적·심리적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및 가해자 합의(대부분 가해자인 자녀들을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어)에 따른 처벌이 미미해 재학대가 빈번하므로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폭력의 경중에 따라 처벌 또는 교육 등 사후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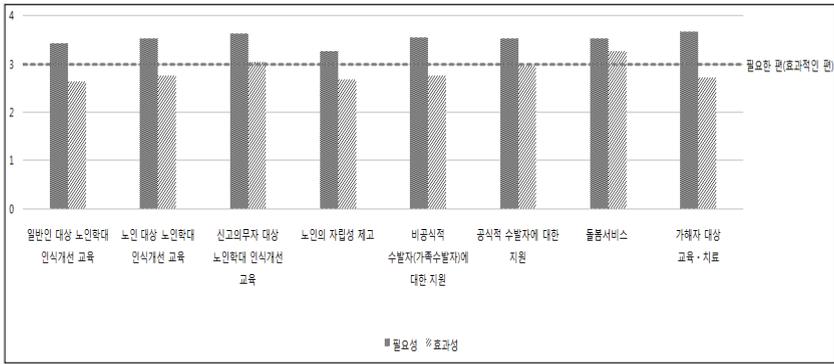
또한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케어의 사회화가 시작하고 있으나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노출이 안 되었을 뿐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시설에서의 노인학대의 발굴과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제도적으로는 노인학대 적용 시 노인의 연령 기준과 현장에서 노인

학대의 기준이 명확지 않으므로 관련 법과 매뉴얼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노인인구 대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숫자가 매우 적어 적어도 시군구마다 1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림 6-12]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단위: 점)



마지막으로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을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도시화, 저출산 및 고령화, 개인화(1인가구 급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다문화 가정 증가 그리고 서구적 가치관의 증가 등이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생애주기 전반적으로 통합적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생애주기 전반적으로 살고 있는 '가정' 중심의 접근과 함께 개인이 출생 후 접하게 되는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직장, 사회에 걸친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동학대를 받은 피해자가 성장하여 학교폭력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학대 및 폭력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학대와 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법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하여 또 다른 방안으로는 생애주기 폭력에 대해 알고 대처가능 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행과 같이 아동이 학교에서 받는 예방 교육뿐 아니라 교과과정 내 인성 교육에 인권존중 및 반폭력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부모 교육과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효과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폭력과 피해자 및 가해자와 관련된 기관들 간에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법과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업무 매뉴얼을 함께 구성하여 상호 정보의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등)의 우선적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생애주기별 학대와 폭력에 대처하고 있는 지역 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신고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대상에 대한 관련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노인학대, 부부폭력 및 학교폭력 등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에 대하여 신고접수와 개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라.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 보호체계와 법제화 수준

학대·폭력에 대한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별로 전문가에게 질문하였다. 우선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사항으로는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제고(37.8%)로 나타났으며, 아동보호관련 예산의 확대(22.2%)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등 시설의 확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으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확대와 접근성 제고(17.8%)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아동보호시설의 확대(13.3%),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제고, 보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보호인력의 규모 확충(각각 11.1%) 등의 순이었다.

〈표 6-2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아동보호체계 공공성의 제고	37.8	11.1
보호인력의 전문성 제고	2.2	11.1
보호인력의 규모 확충	6.7	11.1
관련 기관 간 연계성 제고	4.4	4.4
아동보호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2.2	17.8
가해자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재학대 방지 교육 등)	6.7	8.9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충	2.2	4.4
아동보호관련 시설의 확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등)	11.1	13.3
아동보호관련 예산의 확대	22.2	6.7
아동보호 전담업무 공무원의 배치	2.2	8.9
기타	2.2	2.2

학교폭력관련 청소년 보호체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역시 보호체계의 공공성 제고(25.6%)였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20.9%)와 관련 기관 간 연계성 제고(14.0%)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 응답으로는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피해자 보호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19.0%)와 가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11.9%) 등이 주요한 개선 사항으로 지목되었다.

〈표 6-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청소년보호체계 공공성의 제고	25.6	9.5
보호인력의 전문성 제고 (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4.7	4.8
보호인력의 규모 확충	2.3	7.1
관련 기관 간 연계성 제고 및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연계성 제고	14.0	9.5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20.9	19.0
가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재학대 방지 교육 등)	7.0	11.9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충	4.7	4.8
청소년보호관련 시설의 확대	2.3	-
청소년보호관련 예산의 확대	4.7	7.1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9.3	26.2
기타	4.7	-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체계의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한다(23.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 보호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18.6%), 관련 기관 간 연계성 제고(16.3%) 그리고 관련 예산의 확대(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피해자 보호서비스의 확대 및 접근성 제고(18.6%),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충(18.6%)과 가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16.3%), 그리고 예산의 확대(14.0%) 등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6-22〉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공공성의 제고	23.3	4.7
보호인력의 전문성 제고	9.3	7.0
관련 기관 간 연계성 제고(예: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체계와의 공조)	16.3	9.3
피해자 보호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18.6	18.6
가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	4.7	16.3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충	7.0	18.6
피해자보호 관련 시설의 확대(쉼터 및 보호시설)	7.0	11.6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관련 예산의 확대	11.6	14.0
기타	2.3	-

노인보호체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보호체계의 공공성 제고가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대 피해 노인 보호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20.9%)와 예산의 확대(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18.6%)와 시설의 확대(16.3%), 예산의 확대(16.3%)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표 6-2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노인보호체계 공공성의 제고	23.3	11.6
인력의 전문성 제고	9.3	4.7
인력의 규모 확충	4.7	4.7
관련기관 간 연계성 제고 (예: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기관과의 협조관계)	2.3	4.7
학대 피해 노인 보호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20.9	18.6
가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재학대 방지 교육 등)	2.3	9.3
가족지원서비스 확충	7.0	2.3
노인보호관련 시설의 확대(예: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9.3	16.3
노인보호관련 예산의 확대	18.6	16.3
기타	2.3	9.3

대상별 법제화 수준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폭력 관련 법제화는 일정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하였으나 대상별로 살펴볼 때에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아동학대의 경우, 처벌법 제정으로 처벌 강화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례나 잠재적 학대 발생 가족에 대한 예방적, 지지적 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관련 가족지원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사법기관들(법원, 검찰 및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항 마련이 필요하며,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처벌은 경찰과 검찰이, 행위자의 교육상담 명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보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현실적으로 법의 보완보다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

며, 아동학대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과 정책은 보완하면서, 예산은 오히려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법적으로 현장조사인력의 공공성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의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 내 전문인력 즉, 복지전담(학교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인력의 상주화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해자 간의 관계 개선,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한 회복적 정의 도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부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부부폭력 발생 시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 쉼터 등 관련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제20조 3에서 6까지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도 다루고 있지만 심각성에 비하여 범위와 내용면에서 아주 미미한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인의 자기방임, 성년후견제도, 가족부양부담완화지원책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항목들을 보완하고 노인복지법에서 분리하여 '노인학대 예방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체 계층 노인의 생활지원 상담의 상시화(주민센터)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 및 방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법규정이나 규칙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국가행동계획의 필요성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국가행동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대부분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특히 대상별 국가행동계획의 필요성은 더 높게 응답하였으며,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국가행동계획 또한 현행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따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표 6-24〉 대상별 학대·폭력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P) 필요 여부

구분	응답 비율
아동학대 국가행동계획 필요	97.3
학교폭력 국가행동계획 필요	100.0
부부폭력 국가행동계획 필요	97.0
노인학대 국가행동계획 필요	94.6

〈표 6-25〉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국가행동계획 수립 필요 여부

구분	응답 비율
필요	54.3
현행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개선	17.4
불필요	28.3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학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한 계획, 중장기적인 학대·폭력관련 계획으로 정책의 주체, 전달체계, 재정 및 연차별 목표수준 등을 담을 수 있는 광범위한 계획으로 제안하였다. 모든 대상에 대한 학대·폭력이 포함되어야 하나 특히 아동학대는 생애 초기에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므로, 국가행동계획에 가장 먼저 포함되어야 하며, 아동학대 가해자는 과거 생애 초기 아동학대의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대받은 피해자(아동)와 학대 하는 가해자(부모)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대 및 폭력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기획 시 백화점식 접근보다 선택과 집중에 근거해 아동학대에 초점을 두어 접근한다면 학교폭력, 부부폭력, 나아가 노인학대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학대 및 폭력은 모든 정책과 법령들이 피해자 보호 및 치유가 기본이 되어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또는 선도하는 시스템보다 피해자 보호와 자립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달체계 상에서는 학대 및 폭력발생 시 각 기관의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 간의 연계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협조가 가능한 보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다.

바.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통합적 접근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중복적인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연구 및 종사하는 대상 인구집단의 가해자 및 피해자들이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학대 혹은 폭력(가해와 피해를 모두 포함)을 얼마나 빈번하게 경험하는지 목격 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다른 유형의 학대 또는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3.46점), 그다음으로는 부부폭력(3.33점)과 학교폭력(3.11점)이 ‘중중 경험하는 편’(3점) 이상의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인학대의 경우에는 2.94점으로 다른 대상과 비교시에는 다소 낮은 편이나, 역시 종종 경험하는 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26〉 전문가가 보고하는 인구집단별 학대·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중복학대경험률

구분	평균 (표준편차)
아동학대 경험빈도	3.46 (.691)
학교폭력 경험빈도	3.11 (.786)
부부폭력 경험빈도	3.33 (.661)
노인학대 경험빈도	2.94 (.892)

주: 본문항은 1점 -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2점 - '경험하지 않는 편이다', 3점 - '종종 경험하는 편이다', 4점 - '매우 자주 경험한다' 로 측정함.

이러한 학대·폭력의 생애주기별 접근에 기초한 통합적인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폭력의 악순환과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통합적 접근의 목적은 순환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인데, 지금까지 학대 및 폭력의 모든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전이 및 집중 문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부폭력,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등은 적어도 하나의 틀 내에서 지원되고 절차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애주기 속의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신고-보호-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정책들은 앞서 제시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제안은 반드시 예산과 인프라가 수반되어야 현실화될 수 있으며, 부처 간의 협업, 기관 간의 협업 및 직종 간의 협업 등 협력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정책대응 방향



7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본 연구는 학대 및 폭력 문제를 생애주기별로 접근하여 각 주요한 생애 주기의 학대 및 폭력의 고유한 특수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 생애주기 전반에서 나타나는 학대 및 폭력의 보편적 특성과 공통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학대·폭력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학대·폭력대응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생애주기별 접근은 인구집단 별로 주된 이슈, 행위공간, 행위자의 특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며,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이슈는 가정, 아동 및 노인 돌봄시설, 교육기관, 직장, 지역사회 등 매우 다양한 학대 행위공간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본 분석은 주요한 학대 및 폭력의 공간인 가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정하였다. 다만,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의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생애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학교를 추가하여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생애주기에 걸친 폭력 및 학대의 순환적 구조는 학대의 피해-가해의 측면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역학관계를 특징으로 하지만 본 연구는 주로 피해의 측면에서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과 순환성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framework)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에서 이루어져왔던 아동기 중복학대피해의 분석틀(childhood polyvictimization)과 이

를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과 연결하여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장년기, 노년기 등 전 생애과정을 가정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및 학대의 중복피해(family violence polyvictimization)에 대한 분석틀을 선택적으로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 학대 및 폭력의 유형별 고찰

본 연구는 크게 학대 및 폭력의 유형별 고찰과 전 생애과정을 가로지르는 횡단적 고찰로 구성되었다. 각 생애주기별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의 대상집단 그 자체와 대상그룹의 돌봄과 부양, 보호에 있어서의 사회적 개입의 수준에 대한 차이를 기초로 학대 및 폭력의 개념적, 조작적 정의 및 발생 현황과 관련한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대상집단에 대한 인식은 대상집단이 가진 의존성의 정도와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영유아기 및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기는 다양한 발달 및 사회위기로부터 취약성(vulnerability)과 성장 및 발달에 있어서 의존성(dependency)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노년기의 노인들, 특히 후기노년기의 노인들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존재(burdensome elder)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의존성이 증가하는 인구집단이다. 전통적인 유교주의적 가족주의적 가치는 가정이라는 공간을 사적 영역으로서 간주해 왔고, 가족 내 아동 및 노인 등 양육과 부양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복지의 기능을 가족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아동, 노인, 여성 등 모든 생애주기별 학대 영역에서 취약한 가족구성원에게 가정이 더 이상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위협과 폭력의 공간이 되었을 때 국가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학대 및 폭력의 정의에 있어서는 그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학대 및 폭력의 사회·문화적 상대성이라는 측면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신체적 학대와 관련해 가정에서의 체벌허용과 아동방치에 대한 사회적 용인에서 찾을 수 있다.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이며 주된 학대의 공간이 가정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으로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접근은 가정 내 학대 및 폭력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의미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서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의 관계는 뚜렷하게 구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유형의 학대 및 폭력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예컨대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폭력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의 중복경험의 복잡한 역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부부폭력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가정폭력 특례법’의 영향을 받아 ‘가정’이라는 공간적, 물리적 환경의 범위가 비교적 뚜렷한 반면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공간 혹은 물리적 환경 중심이 아닌 대상자 및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의 노인학대의 정의는 노인학대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기보다는 그에 속하는 학대 유형을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 그 개념을 정의한다. 즉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이 존재한다.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유형 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학대 발생률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학대행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가족, 친구, 공

식적 돌봄제공자로 한정할 것인지 타인으로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학대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학대행위에 있어서는 자기방임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학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2.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전 생애과정에 걸쳐 학대·폭력의 경험은 피해-가해의 경험을 교차하여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학대·폭력의 구조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한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학대·폭력의 구조에 대한 개념적인 틀은 학대·폭력의 중복피해경험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본 연구는 아동기 중복피해 경험(Childhood Poly-victimization)과 가정폭력 중복피해경험(Family Poly-victimization)의 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다수의 아동들이 복수 유형의 아동학대 및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중복피해의 경험은 단일 형태 또는 유형의 학대·폭력을 경험한 아동에 비하여 전 생애 기간 동안 건강, 발달상의 부정적인 영향(예: 우울 및 심리적 불안증, 실업,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을 통하여 학대·폭력의 전이(Transmission of violence)가 발생한다. 아동학대-학교폭력 간의 관계성 연구는 일관되게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가해, 피해 경험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노인학대의 관계성 연구 결과는 노인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된 폭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폭력의 세대 간 전이현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대의 중복성 및 순환성 관련 일련의 선행연구 분석은 가정 내 다양한 폭력들은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성 및 순환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7-1)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특성 비교

생애주기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노년기
	이동학대		학교폭력			
학대 유형	부부폭력					
	독립적인 성인 대 성불평등적 가부장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지위					
사회적 인식 수준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존성 대 동등한 권리주체 (양육부담)	가정 내 폭력 발생 시 사회적인 가족공간은 공적 문 제영역으로 간주			경로사상 대 의존성 (부양부담)
	보호의 책임성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정의 보호기능 작동하지 않을 때 국가개입 가능				가족중심에서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
정의	이동학대에 대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는 것과 방임하는 것 (이동복지법)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 자기방임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침에서 학대에 포함시키고 있다.

생애주기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노년기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추행, 성폭행, 강제심부름	신체적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그리고 방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자방임
행위자-가해자 관계	부모에 의한 학대가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	가해청소년과 피해청소년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음. 생명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반복	부부폭력은 법적 부부관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며, 단속 동거 등의 경우는 현 국내법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그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적임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본인(11.9%), 배우자(15.2%), 아들(38.8%), 며느리(4.7%), 기타로 나타남.
세대 현황 및 시대	주 행위공간은 가정	학교 안(72%)과 학교 밖(28%)	가정 내 폭력으로 공간적 특수성이 있음	가정 내 학대가 84.5%를 차지하나, 시설 내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3.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지난 20여 년간 학대 영역별로 국내문헌연구의 계량적 서지정보를 추출하고 키워드 사이의 구조(빈도 및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영역별 선행연구 동향의 특징과 추이를 비교하고, 다빈도로 출현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맵을 통해 발견되는 각 학대 유형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관련 키워드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공통점과 차이를 파악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출현빈도의 시계열적 경향성을 살펴 보았는데, 각 학대 및 폭력의 영역에서 주요한 입법화 시점이 학술논문건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시행시기인 1998년을 기점으로 부부폭력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등 주요한 법제도의 도입 이후 아동학대 관련 서지정보의 현저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 영역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2011년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학교폭력 영역의 학술논문 건수는 2011년에서 2012년까지 7배에 가까운 증가 폭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영역의 학술논문은 그 규모에 있어서 가장 적었으며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있었던 2004년 관련문헌이 대폭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시계열적 증감이 있었으나 그 폭은 타 영역과 비교할 때에 그리 큰 편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학대의 공통된 위험요인과 관련한 분석 결과, 모든 4개의 폭력 및 학대 유형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차원의 위험요인은 가정폭력,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각 학대 유형별 관련법, 피해자 보

호관련기관이 보호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3개 영역에 걸쳐 중복된 위험요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격성, 스트레스,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 장애로 나타났으며, 가족적 차원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경찰, 피해자 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이 보호요인으로 드러났다.

4. 학대 유형별 학대 및 폭력의 정책대응 현황

학대 및 폭력의 정책대응 현황은 학대 및 폭력의 유형별 법적, 제도적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 정책 접근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책 개입의 근거로서 각 학대 유형별 법제화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에는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을 통해 신고를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이 점차 강화되었다.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관련한 법제화 과정은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으로 이를 근거로 지원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2012년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2011년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학교폭력은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 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청장년기 부부폭력의 법제화 과정은 다른 학대 및 폭력 유형보다 가장 빠르게 시작되었다. 1997년 말 한국의 가정

폭력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어 1998년 시행되었으며 현재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의 법률안은 2016년 3월 2일에 개정되었다. 노인학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노인학대 방지와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등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둘째, 학대 유형별 사회적 보호체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이슈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인력 등 공적 보호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의 미비가 가장 주요한 문제점이다. 예를 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는 학대 피해자의 발굴, 보호, 조치, 사후관리의 전 과정에 전문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각 전문보호체계는 폭력과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운영되어 공공성과 책임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로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치료 등 학대·재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현행 사회적 보호체계는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아동학대에 배정된 국비는 185억에 그쳤고,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예산은 178억 원, 노인학대 보호예산은 6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3,61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비중을 높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학대 및 폭력의 정책대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 정책 접근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별 학대 및 폭력의 학계 전문, 관련 공무원 및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학대·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학대 유형 전반에 걸쳐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었으며 영역별로는 아동학대, 노인학대의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여 년에 걸쳐 우리 사회의 학대 및 폭력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노인학대의 경우 그 증가 폭이 가장 빠른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이러한 노인학대 발생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 비례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 및 사회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증가가 학대의 위기증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적절성이 가장 낮았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5년 주기의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간략버전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학대실태조사와 3년 주기의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노인학대실태조사는 조사주기, 조사도구와 시행방법, 결과의 타당도 전반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노인과 아동영역의 학대실태조사가 일반 대상별 실태조사에 통합되어 실시되면서 조사항목과 영역, 문항이 간략버전으로 줄어들어 조사전반의 신뢰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주기를 짧게 하고 조사문항을 세분화하고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셋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현행 정책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 하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공통의 모든 학대 영역에서 대상별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개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대 예방 관련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예컨대 아동학대, 부부폭력,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는 모두 조사 및 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정 내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원가족을 위한 물질적, 심리·사회적 지원 및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방 중심의 학대 피해자 보호정책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가족지원은 본질적으로 가족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사회체계와의 관계성의 향상을 기초로 하며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체계와의 연계와 협업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행의 대상별 보호체계는 부처별로 분립하여 작동하고 있으며 분절적인 체계로 인해 서비스의 파편성, 분절성, 효과성, 전문성 등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아동보호체계의 경우,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아동보호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부부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적절하게 치료하고 처벌할 수 있는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법원-경찰-지원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보호체계의 공공성과 관련 기관 간의 연계성 제고는 학교폭력 관련 청소년 보호체계에서 역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되었다. 이것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서비스 및 가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대응정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현재 도시화, 저출산 및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 증가,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이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을 고려하여 생애주기 전반적으로 통합적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생애사가 펼쳐지는 주공간으로서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기초로 하여 개인이 출생 후 접하게 되는 학교(유치원, 어린이 집 포함), 직장, 사회에 걸친 다방면적인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학대 및 폭력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학대와 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나,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은 아직까지도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잔존하여,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특히 경찰 및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 및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국가행동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상별 국가행동계획과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국가행동계획 모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학대·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한 계획, 중장기적인 학대·폭력관련 계획으로 정책의 주체, 전달체계, 재정 및 연차별 목표수준 등을 담을 수 있는 광범위한 계획 등을 포괄한다. 특히 아동학대는 생애 초기에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므로, 국가행동계획에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아동학대 가해자는 과거 생애 초기 아동학대의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대받은 피해자(아동)와 학대하는 가해자(부모)에 대한 균형잡힌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

대 및 폭력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기획 시 백화점식 접근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아동학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면 학교폭력, 부부폭력, 나아가 노인학대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상과 같은 학대·폭력의 생애주기별 접근에 기초한 통합적인 정책대응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종종 경험되는 학대 및 폭력의 중복학대의 피해와 나아가 폭력의 악순환과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현행의 대상중심으로 분절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대응정책들이 학대 및 폭력의 순환고리를 끊고 수평적, 수직적 전이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표 7-2〉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생애주기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학대 유형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정책 개입의 법적 근거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
사회적 보호체계 및 주요 정책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2000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 민간위탁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공군성, 책임성의 한계 - 대인위탁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 아동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이원화되고 분립된 보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현장(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보호·치유, 가해 학생 선도 - 전사회적 대응체계 구축(가정 교육기능 강화,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 역할 및 책무성 제고, 폭력 문화 해소 위한 사회적 대응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1366)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 상담소, 긴급난처, 법률구조서비스, 피해자 보호 시설, 사별서비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70개소(1천 164명 입소정원) 운영 -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 2016년 현재 전국 203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4개월 거주 가능),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시설에 입소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부분 원가정 복귀
지출예산	2016년 아동학대에 배정된 국비는 185억 6천 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은 지자체 몫(186억 4천 600만 원) 포함하면 372억 800만 원	5대 분야(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대응 인성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예산 3천 615억 1천 100만 원	여성가족부 예산, 아동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 예산인 2014년 269억 원에서 2015년 154억 원으로 감소했다 2016년 178억 원으로 배정	보건복지부 예산 2015년 69억 5천 800만 원, 2016년 예산인 69억 700만 원

제2절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정책대응 방안

본 연구는 아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과정에서 경험되는 주요한 학대 및 폭력에 대하여 통합적 대응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을 관통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하였고, 통합적인 정책대응은 공통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공통의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개인적 차원, 가족 내 차원, 법제도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공통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응하는 정책적 개입방안을 이상에서 논의했던 학대 및 폭력의 정책 현황 분석 및 전문가조사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제시하기로 하겠다.

1. 개인적 차원: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가. 대응방향

본 연구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 공통의 위험요인으로 파악된 우울, 공격성, 스트레스, 분노, 비행, 인터넷 중독, 자살생각 등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학대관련 선행연구에서 그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정신적 요인에 속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대 피해자 보호전문기관 또는 연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신상담 및 치료서비스는 주로 학대 및 폭력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의 시작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지속성과 전문성, 체계성을 담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대의 중복적 발생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

의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리고 부부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나. 대응방안

첫째, 이를 위해서는 가장 1차적 수준의 예방적 차원의 정책방안으로서 고도의 심리·정서적 위험요인을 가진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보편화하고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가진 대상을 발견했을 때 지역의 정신보건지원센터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대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사례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종결 전후로 전문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까지 모든 대상중심의 개별적 학대보호체계에서는 학대폭력 피해자 중심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심리·정서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 왔으나 학대 및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를 의무화하여, 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노인학대 행위자 중 다수는 정신질환·알코올남용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의 사례처럼 이들에 대한 정신보건·상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폭력은 재발 사례가 높은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사례 종료 후에도 사후 모니터링 및 가족상담센터 연계 등을 통한 필수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처럼, 중북학대피해경험이 개인의 생애 전반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으로 미치는 심리·정신적 영향을 고려하여, 생애과정에서 장애를 경험하거나 과거 학대·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특례법의 법률현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처럼, 부부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에 대한 심리정서적 개입 및 치료에 대한 개입을 필수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정폭력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노출된 가족구성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가족적 차원: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학대 예방 및 대응

가. 대응방향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생활의 주 공간인 가정을 중심으로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족을 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본 단위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Chan, 2015; 박세경 등, 2014; 이현주, 2013). 이는 현재 대상 중심의 학대 피해자 보호체계를 가족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연계 또는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간단치 않은 작업이지만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학대 및 폭력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다.

둘째, 현행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는 “피해자만을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학대 예방 체계와 인프라를 도입하고 발전시

키는 초기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나, 학대의 재발 및 중복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대의 피해와 가해의 양 측면에 대한 개입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족 내 폭력의 재생산 과정에서 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의 방향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대의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를 중심으로 하는 학대 및 폭력 경험이 생애초기에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기 학대의 경험을 예방하는 것에 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부부폭력과 연계하여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기의 또 다른 주생활 공간인 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의 경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기의 중복적 학대 경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 개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대응방안

첫째, 가족은 통합적인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 단위로,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차원의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가족지원은 학대 및 폭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예방정책으로서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지역공동체 및 국가가 이를 포착하고 가족의 필요와 욕구를 사전에 지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통합적 학대대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 및 폭력에 취약한 가족은 다양한 측면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심리사회적, 물질적·경제적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대 고위험 가정은 장기간의 실업

을 경험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취업훈련, 취업 기회에 대한 우선적 부여, 경제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가난한 가족들은 가족의 지지 및 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돌봄과 부양의 스트레스와 압박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여 육아 및 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의 가족지원서비스와 가족강화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지원서비스는 가족상담,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고용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해야 하며,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많은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들은 가족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족강화개입프로그램(Family-Strengthening Interventions Programs), 일본의 아동가정양육지원센터를 통한 광장사업 등 양육지원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등이 있으며, 학대의 사전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대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사후 수습 방식의 대응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하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둘째, 아동기 학대 경험을 줄이는 것은 학대 및 폭력의 순환고리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책과 함께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와 체벌을 훈육의 하나로 용인하는 사회적 조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 부모의 양육태도와

습관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체벌이 신체적 학대의 다른 이름으로 혼육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생애 전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을 부모교육을 통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인지가 약한 학대행위자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수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3. 법제도적 차원

가. 대응방향: 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의 공공성 및 연계성 제고

첫째, 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공공성 확립이 시급하다. 학대 유형별 사회적 보호체계의 검토와 전문가 조사 결과, 현행 우리나라의 학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모두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서비스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미비하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공공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개입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자 보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 및 보호체계는 공공영역에서 각 영역의 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게이트웨이 및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화된 서비스제공이 어렵고 지역별 서비스 제공내용과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시에 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학대보호의 조직적 구조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난제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 중심의 보호체계 간 연계와 협력은 기존

의 별개로 작동하고 있는 체계의 분절성을 개선하고 기존의 보호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관계부처와 공공과 민간의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및 관계방식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분립된 보호체계 내, 체계 외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기초로 아동, 부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간의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각 보호체계 내에서도 학대정보 공유시스템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을 중심으로 통합적 학대정보DB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정 내 발생하는 중복학대의 피해자 및 가해자 정보를 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공유하는 것은 통합적 학대대응방안 마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학대보호시스템을 보완 개선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체계 및 인프라의 공공성 제고, 보호서비스 인프라의 확대와 함께 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예산의 확충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2016년도 각 학대 유형별 예산 분석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의 학대 관련 예산 비중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예산이 확보된 학교폭력(3,615억 원)을 제외하고는 아동학대에 배정된 국비는 185억 원에 그쳤고,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예산은 178억 원, 노인학대 보호예산은 6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 학대의 중복피해의 장기적인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련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대응방안

첫째,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국가 및 사회개입의 공공성과 책임

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되어 운영되는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민과 관의 역할분담체계를 재편하고 시군구의 아동청소년가족복지 공무원과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구 단위의 공적 책임성을 가진 학대 피해자를 위한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기존의 보호서비스 기능을 수행해 온 다양한 민간의 전문기관과 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학대보호 및 대응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 학대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신고와 조사를 기초로 하는 체계로서 각 학대 유형별 신고의무대상자의 확대 및 신고의무의 강화를 통해 신고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습적 학대 행위자 또는 아동학대 중상해 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을 강제하는 법조항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과 같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신종 폭력들을 반영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현행 가족 관련 전달체계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학대의 예방, 발생, 최초 개입에서 종료 및 사후 관리까지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아동보호체계, 노인보호체계, 청소년 보호체계, 부부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등 현행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체계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가능성을 중앙 부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가족서비스 제공 관련 체계 간 정보공유 및 협조관계 제고를 위한 프로토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홍콩의 가족 중심 지원체계와 정부부처 간 프로토콜 가이드라인과 같은 방

식으로 동일한 가족 단위에서 발생하는 다른 유형의 학대 사례(부부폭력과 아동학대 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의 조직적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다양한 학대가 가족 내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현행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 단위의 발달위기에 대한 조기 개입 통로가 확보될 수 있다.

셋째, 통합적인 학대정보DB의 공유는 각 학대 유형별 보호체계 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 간 협력과 연계를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다. 아동학대 관련 정확한 정보DB 구축은 학대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학대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일차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검찰, 통계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대 피해 아동, 학교폭력 피해 아동, 부부폭력의 피해자, 학대 피해 노인 등 각 학대 영역별 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및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연계를 명시화하고 공유해야 할 정보리스트와 기준을 포함한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익중 등, 2012).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정을 허브로 하는 학대 관련 정보 DB의 축적을 통해 향후 가구 내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및 아동-부부-노인폭력 등 제 학대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와 성격 진단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학대DB 접근과 정보공유의 수준은 매우 미흡한데, 예를 들면 지자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가능한 반면,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경우 접근 근거가 없어서 관할지역 내의 학대 피해 아동의 기본상황과 서비스 수혜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김지연 등, 2015). 따라서 유형별 보호전문기관에서 취급하는 정보에 대한 게이트웨이인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학대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 지원과 보호조치를 공공성을 가지고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아동과 가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권과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의 예방이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준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비밀누설 금지, 윤리강령 준수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인식 차원: 학대실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가. 대응방향

사회적 차원에서 생애주기에 걸쳐 공통적으로 파악된 보호요인은 사회적 지지와 인권이었으며, 학대에 대한 인식도 중복적으로 나타난 보호요인이었다.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와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 등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역 내에서 학대·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례 발생 시 신고가 이루어져 더 큰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는 전문가 조사에서도 모든 학대 영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제기된 바 있

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훈육과 체벌에 대한 가치관, 신성불가침 영역인 사적 공간으로서의 가정에 대한 공적 개입의 범주 등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학대 및 폭력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학대와 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 대응방안

본 연구 결과는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학대 및 폭력의 심각성과 생애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핵심으로 하는 생애주기 폭력에 대해 알고 대처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행과 같이 아동이 학교에서 받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교과과정 내 인성교육에 인권존중 및 반폭력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교육과 신고의무자에 대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나 생애주기 전반의 학대·폭력 피해 상황의 가장 최일선에서 모든 유형의 사례를 접하고 대응하게 되는 경찰과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대·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대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파악은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근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

할 것이다.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의 개별 학대 영역에서 학대의 실태 파악을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대 영역에 걸쳐 대상인구 집단별 학대 발생률의 추정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학대 경험률에 대한 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미국의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Kaiser에 의해 수행된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ACE Study)의 예처럼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적 학대, 물리적 방임, 정서적 방임, 가정의 약물(알코올)중독, 사별 또는 별거 이혼, 수감된 가족구성원 존재여부를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트라우마에 대한 회고형 조사 등을 한국에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대 발생률의 추정은 학대의 조작적 정의, 측정지표, 조사설계, 조사 대상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학대 발생 빈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외국의 동일한 형태의 학대 발생률과의 비교도 어렵다. 따라서 실증적 자료에 입각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각 영역별 지표를 개발하고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는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실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표 7-3〉 학대 및 폭력의 공통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차원	요인 특성	4개 영역 중복	3개 영역 중복	2개 영역 중복	정책대응 방안
개인적 차원	위험 요인	• 우울	• 공격성 • 스트레스 • 학대폭력 피해 경험 • 장애	• 자살생각 • 부모애착 • 분노(학의 표출) • 비행 • 아동학대 • 인터넷 중독 • 학교폭력	- 심리상담서비스의 접근성제고를 위한 정책적 설계 필요: 대상 범위의 확대 - 심리정서적 위험요인을 가진 개인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필요 - 학대폭력 피해자 중심의 심리상담서비스의 강화 필요 - 가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의 의무화를 통한 학대 재발 방지
	보호 요인	• 자아존중감		• 적응유연성 • 자아탄력성 • 자기통제력	
가족적 차원	위험 요인	• 가정폭력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의 확대필요 - 학대행위자 부모에 대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수강
	보호 요인				
법제도적 차원	위험 요인	• 각 학대 유형별 관련법 • 각 학대 유형별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 학대폭력의 시대적 흐름과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 - 학교폭력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종 폭력들을 반영한 구체적 법제도의 개입방안 검토 - 생애주기별 다양한 학대가 가족 내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시체계확보 -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을 확대, 신고의무대상자의 확대와 신의의 신고자에 대한 면책조항 등 마련
	보호 요인		• 경찰 • 피해자보호 서비스 • 프로그램	• 학대 예방 • 친권 • 상담원 • 회복적 사법	

차원	요인 특성	4개 영역 중점	3개 영역 중점	2개 영역 중점	정책대응 방안
사회적 차원	위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지지 •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에 대한 인식 • 교정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 사회적 지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와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 등 사회적 자본의 강화필요 -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 지역 내에서 학대폭력 발생의 예방이 필요 - 학대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지서비스를 강화, 사후관리서비스 강화
	보호 요인				

참고문헌 <<

- 강소영. (2012).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8(1), 5-30
- 광동욱, 문영희. (2015).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32(2), pp.23-49.
- 공계순. (2000).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서설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 15, pp.1-18.
- 곽금주. (2006). 한국의 왕따 및 학교폭력: 특징과 한국형 예방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34-135.
- 관계부처 합동.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14). 205-2019년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안).
- 관계부처 합동. (2014).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도 추진계획-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 관계부처 합동.(2015).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2015년도 시행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6년도 시행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 자료집'.
- 교육부. (2016).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예방 대책, 2016. 7. 28. 교육부 보도자료.
- 권금주, 임연옥, 이서영. (2013). 노인복지 생활시설 노인학대 판정지표. 2013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권금주, 이서영, 박태정. (2016).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 pp.553-560.
- 김경준, 김희진.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IV.
- 김경호. (2007). 영국의 노인보호서비스의 복지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7(1), pp.241-264.

- 김경호. (2008).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주요쟁점 고찰. 법과정책 연구, 8(2), pp.651-669.
- 김규태, 방경곤, 이병환 등. (2013).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양성원.
- 김기현 등. (2014)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 법무부.
- 김기현, 이미정, 이인선, 유비. (2014). 또래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피해자 지원 체계 경험연구. 피해자학연구. 22(2). 5-35.
- 김동현, 서미. (2014). 알기쉬운 학교폭력 이해와 대책. 시그마프레스.
- 김문조. (1998) 가정폭력연구.
- 김상원, 이양희. (2014) 아동기 학대경험의 국가간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 아동 과 권리, 18(1), 27-47.
- 김소영, 노강욱. (2013). 교사를 위한 학교폭력의 이해. 창지사.
- 김수정, 이재연. (2011) 아동 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학대 신고제도 연구.
- 김승권 등. (2007).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승용. (2002). 폭력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따른 노인부부폭력 연구. 한국노년 학, 21, pp.129-144.
- 김아림, 탁영란. (2016).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 81-94.
- 김유경. (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 김유진. (2015). 가정 내 반복적인 학대발생과 외부 개입을 체험한 피해대 노인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pp.315-346.
- 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2(1), pp.65-75.
- 김재엽. (1998). 한국노인부부의 부부폭력실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18(1), pp.170-183.
- 김재엽 등. (2010).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재엽 등. (2015)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여성의 생애주기 상 재 피해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1), pp.81-101

- 김재엽. (2015).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자기통제력과 가정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가해, 피해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pp.83-109.
- 김재엽, 곽주연, 임지혜. (2016). 부모로부터의 신체학대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교사관계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2), pp.221-245.
- 김재엽, 성신명, 김준범. (2015).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자기통제력과 가정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가해, 피해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pp.83-109
- 김재엽, 송아영. (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pp.99-125
- 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자녀학대피해 경험 중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2), pp.1-26.
- 김재엽, 이근영. (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pp.121-149.
- 김재엽, 이병화, 윤여원. (2011). 신체적 장애인의 아동기 폭력 경험과 성인기 가정폭력과의 관계 연구: 법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6), pp.201-225.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태도에 대한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 pp.31-59.
- 김재엽, 정윤경. (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요인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5), pp.5-28.
- 김정석. (2007). 고령화의 주요 사회이론과 담론. *한국노년학*, 27(3), pp.667-690.
- 김진희. (2013). 여성폭력 수사과정 및 절차. *한국여성의전화 45기 여성상담 전문교육자료집*
- 김태현, 한은주. (1997).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 8C.htm에서 2016. 11. 20. 인출.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복지시설현황. 서울: 저자.
- 보건복지부. (2015).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세종: 저자.
-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훈육과 아동학대 그 경계를 말하다. 아동인권증진사업 원탁토론회 사전자료집.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a). 201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저자.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b). 2013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 서울: 저자.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a).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저자.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b). 2015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 세종: 저자.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2015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세종: 저자.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사회보장위원회. (2014).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서울: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사전. 서울: 하우동설.
- 서윤. (2000). 노인학대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9, pp.155-188.
- 서윤. (2004). 한국 노인학대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개입 실천과제. 보건과복지, 7, pp.61-81.
- 서인균, 이연실. (2015). 노인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68, pp.7-35.
- 성홍재. (201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1(3), pp.177-206.
- 손능수, 김순양.(2015).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및 연계망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3),

pp.437-468.

- 송영민. (2003). 피학대 여성노인의 의존성에 관한 생애사적 고찰. 페미니즘연구, 3, pp.85-120.
- 송재홍, 김광수, 박성희, 안이환, 오익수, 은혁기, 정종진, 조봉환, 홍종관, 황매향. (20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지사.
- 신선인. (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pp.153-182.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 피해 증폭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pp.123-149.
- 아리에스, 필립. (2003). 아동의 탄생. 새물결.
-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8, pp.331-358.
- 안재진 등. (2011) 아동학대실태조사.
- 엄기욱, 박인아. (2015).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부상 및 인권침해 경험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pp.149-172.
- 여성가족부. (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
- 우국희. (2008). 노인학대 유형으로서 자기방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문가 관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0, pp.195-224.
- 우국희. (2014). 자기방임을 이해하는 대안적 관점에 대한 고찰 - 노인학대에서 불결의 문제로. 비판사회정책, 42, pp.177-211.
- 유성호, 강선아. (2008). 노인요양시설종사자의 노인학대 관련 법조항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 목적실태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위반자의 처벌에 대한 태도. 사회복지정책, 33, pp.311-333.
- 유숙영. (2014). 한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현황 및 과제. 2014 가정폭력방지본부 활동보고서. 가정폭력방지본부
- 유한희. (2015). 가족이론고찰 압축적 근대성과 압축적 개인화 논의를 중심으로

- 로. 아시아여성연구, 54(2), pp.173-207.
- 윤명숙, 조혜정. (2008). 청소년의 폭력경험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학교폭력, 중폭폭력 피해경험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8), pp.295-329.
- 윤혜미. (1997).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개입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인식조사.
- 원영희, 박영란, 김주현. (2012).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이대성. (2012). 학교 폭력문제의 사회과교육적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 제14차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25-55.
- 이미진. (2012). 한국사회 노인학대 문제와 노인학대 예방대책. 노인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대한의사협회.
- 이미진. (2015). 미국 장기요양 옴브즈맨 프로그램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 노인복지연구, 67, pp.133-166.
- 이미진, 김혜련. (2016). 노인학대 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분석. 노인복지연구, 71(3), pp.53-89.
- 이민홍, 박미은. (2014). 한국 고령 독거노인의 자기방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pp.123-142.
- 이봉주, 김광혁. (2007).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3(11), pp.333-359.
- 이상희, 하승수, 이해원. (2008). “한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아동과 권리, 12(3).
- 이서원, 조성상. (2005). 폭력목격경험 및 폭력허용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도 노인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3, pp.111-131.
- 이수정. (2014). 왜 떠나지 않았나요. 2014 가정폭력방지본부 활동보고서. 가정폭력방지본부.
- 이상균, 정현주. (2012).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

- 성, 2012년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pp.21-53.
- 이연호. (2004). 한국노인학대 개입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인간관계학보, 9(1), pp.237-260.
- 이유진 등. (2014).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윤경. (2007).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한국인구학, 30(2), pp.1-22.
- 이윤경, 정경희, 강은나, 오영희, 양찬미. (2015). 한국형 노인학대 유형 정의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인선, 최지현(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pp.259-281.
- 이인수. (2006).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pp.55-69.
- 이춘재. (1999).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1999년 심포지움, 학교폭력의 학술적 사회적 대안, pp.11-25.
- 이현주. (2013). 학대의 세대전이를 통해 본 노인학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자료 분석 활용 -. 사회과학연구, 29(3), pp.409-431.
- 이화숙. (2016).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엘킨드, 데이비드. (1999). 변화하는 가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가족과 문화, 27(3), 1-38.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3).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경섭. (2006) 한국인의 '가족피로'-압축적 근대성과 탈가족화 추세. 삶의 정치 콜로키움 26.
- 장미희, 박창기. (2012). 영과잉 가산자료(zero-inflated count data) 분석 방법을 이용한 지역사회 거주노인의 노인학대발생과 심각성에 미치는 위험 요인분석. 대한간호학회지, 42(6), pp.819-832.

- 장수한. (2010). 학교와 청소년문화복지론. 공동체.
- 장준오, 김미숙, 장미혜, 배상률. (2012). 청소년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지형, 강선경. (2015). 학대를 경험한 여성노인들의 삶의 대처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복지상당교육연구, 4(2), pp.81-109.
- 정경희, 오영희, 변재관, 유원선, 이윤경. (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 정경희, 이윤경, 오영희, 손창균, 윤지은, 이은진 등. (2010).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원, 서현숙. (2007). 가정폭력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비행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노출유형별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5), 49-73.
- 정선아. (2002).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변화과정 고찰: 인쇄술과 대중교육의 맥락에서. 아동과 권리, 6(2), pp.365-384.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pp.1-17.
-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pp.223-244.
- 정익중 등. (2012). 아동학대 사망관련 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정익중, 김세원. (2011). 아동·청소년 발달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잠재적 유형-간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2(3), 2011.8, pp.197-230.
- 정혜란, 김미원. (2014). 학대경험이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63, pp.7-33.
- 조대훈, 김승혜, 강민수, 전연진, 이유미, 최희영. (2013). 학교 폭력 예방 및 대

책. 박영사.

- 조애저, 김승권, 김유경. (1999). 노부모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애저. (2008). 노인학대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9월호, pp.16-29.
- 진혜경. (2012). 청소년 정책론. 학지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6).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서울: 저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5). 2015. 5. 22 보도자료 2014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 최선영, 장경섭. (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한국사회학, 46(2), pp.203-230.
- 최성재, 김미혜, 양철호, 이성국, 이수한, 장현. (2002).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노인의 전화.
- 최영. (2016)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아동·청소년 분야. 월간 복지동향, (217), 17-21.
- 최정혜. (2000). 성별에 따른 노인부부폭력 차이연구. 한국노년학, 20(3), pp.17-35.
- 최태진, 허승희, 박성미, 이희영. (2006). 초등학교폭력 양상 및 과정 분석. 상담학연구. 7(2). pp.613-632.
- 최혜지. (2014). 2015년 노인복지 예산(안) 평가. 월간복지동향, 193, pp.20-23.
- 최혜지. (2015).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노인분야. 월간 복지동향. 205, pp.21-26.
- 통계청. 연도별 사회조사 결과(2002, 2008, 2010, 2012, 2014).
- <http://kostat.go.kr/survey/society/index.action>에서 2016. 10. 27 인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6. 2. 개정).
- 한동희, 김정옥. (1994).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4), pp.45-56.
- 한은주, 김태현. (1997).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17(1), pp.51-73.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pp.115-128.
- 한혜경. (2006). 노인복지종사자의 노인학대 신고 및 서비스 전달체계 적합성 인식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노년학*, 26(4), pp.767-783.
- 허민숙. (2011).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비교연구: 시민의 권리인가? 가정에 대한 보호인가?. *가족과 문화*. 23(4), pp.95-121
- 홍봉선, 남미애. (2007).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 홍선영. (2015). 초점집단 논의를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성학회지*. 2(1). pp.1-10.
- 홍순혜. (2014).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방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황정임 등. (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Abdel Rahman, T. T., & El Gaafary, M. M. (2012). Elder mistreatment in a rural area in Egypt. *Geriat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 12(3), pp.532-537.
- Acierno, R., Hernandez, M. A., Amstadter, A. B., Resnick, H. S., Steve, K., Muzzy, W., & Kilpatrick, D. G. (2010).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motional, physical, sexual, and financial abuse and potential neglect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Elder Mistreatment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 pp.292-297.
- Ajdukovic, M., Ogresta, J., & Rusac, S. (2009). Family violence and health among elderly in Croatia.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8(3), pp.261-279.
- Allen, K. R., Blieszner, R., & Roberto, K. A. (2000). Families in the middle and later years: a review and critique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pp.911-926.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pp.1263-1289.
- Aström S., Bucht, G., Eisemann, M., Norberg, A., & Saveman, B. I. (2002). Incidence of violence towards staff caring for the elderly.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6(1), pp.66-72.
- Bair-Merritt, M. H., Holmes, W. C., Holmes, J. H., Feinstein, J., & Feudtner, C. (2008). Does intimate partner violence epidemiology differ between homes with and without children: A population based study of annual prevalence and associated risk facto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pp.325-332.
- Baldry, A. C.(2003). Bullying in schools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27(7), pp.713-732.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Winterstein, T., & Eisikovits, Z. (2009). "Aging out" violence: the multiple faces of intimate violence over the life spa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9(2), pp.164-180.
- Band-Winterstein, T., Doron, I. I., & Naim, S. (2012). Elder self neglect: A geriatric syndrome or a life course story?. *Journal of Aging Studies*, 26(2), pp.109-118.
- Barnett, R., & River, C. (2004). *Same difference: How gender myths are hurting our relationship, our children, and our job*. New York: Basic Books.
- Basile, K. C., Arias, I., Desai, S., & Thompson, M. P. (2004).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of intimate partner physical, sexual, psychological, and stalking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Women.

-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5), pp.413-421.
- Bauer, N. S., Herrenkohl, T. I., Lozano, P., Rivara, F. P., Hill, K. G., & Hawkins, D. (2006). Childhood bullying involvement and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Pediatrics*, 118(2)
- Beach, S. R., Schulz, R., Williamson, G. M., Miller, L. S., Weiner, M. F., & Lance, C. E. (2005). Risk factors for potentially harmful informal caregiver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3(2), pp.255-261.
- Biggs, S., Erens, B., Doyle, M., Hall, J., & Sanchez, M. (2009).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ople: Secondary analysis of UK prevalence study. *Kings College London,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London.
- Black, D. S., Sussman, S., & Unger, J. B. (2010). A further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witnessing interpersonal violence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6), pp.1022-1042
- Braye, S., Orr, D., & Preston-Shoot, M. (2011). Conceptualising and responding to self-neglect: the challenges for adult safeguarding. *The Journal of Adult Protection*, 13(4), pp.182-193.
- Breiding, M. J., et al. (2014).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stalking,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United States, 2011*. Surveillance Summarie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trieved from http://www.cdc.gov/mmwr/preview/mmwrhtml/ss6308a1.htm?s_cid=ss6308a1_e)
- Breiding, M. J., Basile, K. C., Smith, S. G., Black, M. C., & Mahendra, R. (2015). *Intimate partner violence surveillance uniform definitions and recommended data elements*. Center for Disease

- Control and Prevention. (retrieved from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df/intimatepartnerviolence.pdf>)
- Cadmus, E. O., & Owoaje, E. T. (2012).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lder abuse among older women i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in south western Nigeria.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3*, pp.973-984.
- Casanueva, C., Martin, S. L., & Runyan, D. K. (2009). Repeated reports for child maltreatment among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s: Finding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Child and Adolescent Well-being. *Child Abuse & Neglect, 33*, pp.84-93.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0).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Reported by Adults: Five States, 2009*.
- Chan, (2015). Family Polyvictimization and Elevated Levels of Addiction and Psychopathology Among Parents in a Chinese Household Sample.
- Chesney-Lind, M. (2002). *Perspectives on youth*.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Leaving your child home alone*. Washington, DC.
- Chokkanathan, S., Lee, A. E. Y. (2005). Elder mistreatment in Urban India: a community based study.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7*, pp.45-61.
- Chompunud, M. S., Charoenyooth, C., Palmer, M. H., Pongthavornkamol, K., Vorapongsathorn, T., & Jitapunkul, S. (2010). Prevalence, associated factors and predictors of elder abuse in Thailand. *Pacific Rim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4*(1), pp.283-296.
- Cohen, M., Halevy-Levin, S., Gagin, R., & Friedman, G. (2007). Elder abuse: disparities between older people's disclosure of abuse,

- evident signs of abuse, and high risk of abuse.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5, pp. 1224-1230.
- Coloroso, B. (2003). *The Bully, the bullied, and the bystander*. New York: Harper Collins.
- Comijs, H. C., Pot, A. M., Smit, J. H., Bouter, L. M., & Jonker, C. (1998). Elder abuse in the community: prevalence and consequence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6(7), pp.885-888.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1). General comment no. 13 : The rights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CRC/C/GC/13.
- Cook, F. L., & Kunkel, S. R. (2006). Age stereotype. *The encyclopedia of aging*, 1, pp. 45-46.
- Cooper, C., Selwood, A., & Livingston, G. (200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nd neglect: a systematic review. *Age and Ageing*, 37, pp.151-160.
- Copelon, R. (2003).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mension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other strand in the dialectic of feminist lawmaking, *Journal of Gender, Social Policy & the Law*, 11(2), pp.865-876.
- Davis, R. L. (2008). *Domestic Violence*. NW: CRC Press
- Day, M. R., Leahy-Warren, P., & McCarthy, G. (2013). Perceptions and views of self-neglect: a client-centered perspectiv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5(1), pp.76-94.
- Department of Health. (2000). *No secrets: Guidance o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multi-agency policies procedures to protect vulnerable adults from abuse*. Department of Health/Home Offices, London.

- Devine, J. & Lawson, H. A. (2003). The complexity of school violence: Commentary from the US. In P. K. Smith (Ed). *Violence in Schools*. London: Routledge Palmer, pp.332-350.
- Dobash, R. E., & Dobash, R. (1979).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London:Open Books
- Dong, X. Q. (2014). Do the definitions of elder mistreatment subtypes matter? Findings from the PINE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Medical Sciences*, 69A(S2), S68-S75.
- Dong, X. Q. (2015). Elder abuse: systematic review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3, pp.1214-1238.
- Dong, X. Q., Chen, R., Fulmer, T., & Simon, M. A. (2014).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lder mistreatment in a community-dwelling population of U. S. Chinese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 Health*, 26(7), pp.1209-1224.
- Dong, X., Simon, M. A., & Evans, D. (2012). Elder Self-Neglect and Hospitalization: Findings from the Chicago Health and Aging Project.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0(2), pp.202-209.
- Duncan, D. (1999). Maltreatment by parents and pe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bully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Child Maltreatment*, 4(1), 45-55.
- Dunne, M. P., Zolotor, A. J., Runyan, D. K., Miller, I. A., Choo, W, Y. et al.(2009). ISPCAN Child Abuse Screening Tools Retrospective version (ICAST-R): Delphi study and field testing in seven countries. *Child Abuse & Neglect*, 33(11), pp.815-825.
- Elder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pp.1-12.

- Eron, L. D. (1997).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from a learning perspective. In D. M. Stoff, J. Breiling, & J. D. Maser (Eds.), *Handbook of antisocial behavior*, pp. 140-147. New York: Wiley.
- Euser, E., P. Prinzie and M. Bakermans-Kranenburg (2010), "Prevalence of Child Maltreatment in the Netherlands", *Child Maltreatment*, 15(1), 5-17.
- Fearing, C., & Furman, W. C. (2000). When love is just a four letter word: Victimiz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Child Maltreatment*, 5, pp.293-298.
- Fergusson, D. M., Boden, J. M., & John Horwood, L. (2006). Examin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in a New Zealand birth cohort. *Child Abuse & Neglect*, 30(2), pp.89-108.
- Fehringer, J. A. & Hindin, M. J. (2009). Like parent, like chil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tner violence in Cebu, the Philippin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4(4), pp.363-371.
- Fingeld-Connett, D. (2013). Intimate partner abuse among older women: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 *Clinical Nursing Research*, 23(6), pp.664-683.
- Finkelhor et al. (2011). *Polyvictimization: Children's Exposure to Multiple Types of Violence, Crime, and Abus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US. Department of Justice
- Finkelhor et al. (2015).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Crime, and Abus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US. Department of Justice
- Finkelhor et al. (2015). Prevalence of Childhood Exposure to Violence, Crime, and Abuse: Result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JAMA*, 169(8), pp.746-754.

-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31*, pp.7-26.
- Finkelhor, D., Ormrod, R. K., Turner, H. A., & Holt, M. (2009). Pathways to poly-victimization. *Child Maltreatment, 14*, pp.316-329
- Finkelhor, D., Ormrod, R.K., and Turner, H.A. 2007b. Polyvictimization and trauma in a national longitudinal cohor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1), pp.149-166.
- Finkelhor, D., Shattuck, A., Turner, H. A., Ormrod, R., & Hamby, S. L. (2011). Polyvictimization in development context.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Trauma, 4*, pp.291-300.
- Finkelhor, D., Turner, H.A., Ormrod, R., and Hamby, S.L. 2009. Violence, abuse, and crime exposure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Pediatrics, 124*(5), pp.1-13.
- Franklin, C. A. & Kercher, G. A. (2012).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PV: Differentiating correlates in a random community sampl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7*(3), pp.187-199.
- Fulmer, T., Paveza, G., VandeWeerd, C., Fairchild, S., Guadagno, L., Bolton-Blatt, M., et al. (2005). Dyadic vulnerability and risk profiling for elder neglect. *The Gerontologist, 45*(4), pp.525-534.
- Garre-Olmo, J., Planas-Pujol, X., Lopez-Pousa, S., et al. (2009).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suspected elder abuse subtypes in people aged 75 and older.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7*, pp.815-822.
- Gilbert, R., C.S. Widom, K. Brown, D. Fergusson, E. Webb and S. Janson (2009), "Burden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in High-Income Countries", *The Lancet*, Vol. 373, pp. 68-81.
- Goergen, T. (2001). Stress, conflict, elder abuse and neglect in German

- nursing homes: A pilot study among professional caregiver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3(1), pp.1-26.
- Goergen, T. (2004). A multi-method study on elder abuse and neglect in nursing homes. *The Journal of Adult Protection*, 6(3), pp.15-25.
- Golding, J. M. (1999).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a risk factor for mental disorders: a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2), pp.99-132.
- Gomez, A. M. (2010). Testing the cycle of violence hypothesis: Child abuse and adolescent dating violence as predi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young adulthood. *Youth and Society*.
- Gordon, R., & Brill, D. (2001). The abuse and neglect of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4, pp.183-197.
- Griffore, R. J., Barboza, G. E., Mastin, T., Oehmke, J., Schiamberg, L. B., & Ann Post, L. (2009). Family members' reports of abuse in Michigan nursing home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1(2), pp.105-114.
- Hamby, S. L. & Finkelhor, D. (2001). *Choosing and using child victimization questionnaires* (NCJ186027).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Prevention.
- Hansan, F, et al. (2004). Physical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Chile, Egypt, India and the Philippines, *Injury Control and Safety Promotion*, 11(2), pp.111-116.
- Harris, D. K. (2005). *Abuse in nursing homes*. In E. B. Palmore, L. Branch, D. K. Harris. (eds.), *Encyclopedia of Ageism* (pp. 1-3). Binghamton, NY: Haworth Pastoral Press.
- Harris, S. B. (1996). For better or worse: spouse abuse grown old.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8, pp.1-33.

- Hardt, J. & Rutter, M.(2004). Validity of adult retrospective repor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2), pp.260-273.
- Htun, M. & Weldon, S. L. (2012). The civic origins of progressive policy change: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in global perspective, 1975-200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3), pp.548-569.
- Holt, M. K., Kaufman Kantor, G., & Finkelhor, D.(2008). Parent/child concordance about bullying involvem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related to bullying and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School Violence*, 8(1), pp.42-63.
- Hussey, J.M. Marshall, D.J. English, E.D. Knight, A.S. Lau, et al.(2005). Defining maltreatment according to substantiation: Distinction without a difference? *Child Abuse & Neglect*, 29(5), pp.479-492.
- Izaguirre, A. & Calvete, E. (2016). Exposure to family violence as a predictor of dating violence and child-to-parent aggression in Spanish adolescents. *Youth Society*.
- Jackson, S. L., & Hafemeister, T. L. (2012). Pure financial exploitation vs. Hybrid financial exploitation co-occurring with physical abuse and/or neglect of elderly persons. *Psychology of Violence*, 2(3), p.285.
- Jogerst, G., Daly, J., & Hartz, A.(2005), Ombudsman Characteristics Related to Nursing Home Abuse Report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6(1), pp. 85-98.
- Jogerst, G. J., Daly, J. M., Dawson, J. D., Peek-Asa, C., & Schmuck, G. (2006). Iowa nursing hom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reported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 Association*, 7(4), pp.203-207.
- Jones, J. S., Holstege, C., & Holstege, H. (1997). Elder abuse and neglect: understanding the causes and potential risk factors. *The 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15(6), pp.579-583.
- Juvonen, J., & Graham, S. (Eds.). (2001).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Guilford Press.
- Kashani, J. H., Shekim, W. O., Burk, J. P., & Beck, N. C. (1987). Abuse as a predictor of psychopatholog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 Kissal, A., & Beser, A. (2011). Elder abuse and neglect in a population offering care by a primary health care center in Izmir, Turkey. *Social Work in Health Care*, 50, pp.158-175.
- Kitzman, K. M., Gaylord, N. K., Holt, A. R., & Kenny, E. D. (2003). Child witnesses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2), pp.339-352.
- Kivela, S. L., Kongas-Saviaro, P., Kesti, E., et al. (1992). Abuse in old age: epidemiological data from Finland.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4, pp.1-18.
- Korbin, J. E., Anetberger, G., & Austin, C. (1995). The intergenerational cycle of violence in child and elder abus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7(1), pp.1-15.
- Kosberg, J. I. (1988). Preventing elder abuse: I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prior to placement decisions. *Gerontologist*, 28(1), pp.43-50.
- Kwong, M. J., Bartholomew, K., Henderson, A.I.Z., & Trinke, S. J. (200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elation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pp.288-301
- Lachs, M., & Berman, J. (2011). *Under the radar: New York State elder*

- abuse prevalence study*. Prepared by Lifespan of Greater Rochester, Inc., Weil Cornell Medical Center of Cornell University, and 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
- Lachs, M. S., & Pillemer, K. (2004). Elder abuse. *Lancet*, 364, pp.1263-1272
- Laumann, E. O., Leitsch, S. A., & Waite, L. J. (2008). Elder mis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estimate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4), S248-S254.
- Lereya, S. T., Samara, M., & Wolke, D. (2013). Parenting behavior and the risk of becoming a victim and a bully/victim: A meta-analysis study. *Child Abuse & Neglect*, 37(12), pp.1091-1108.
- Lindbloom, E. J., Brandt, J., Hough, L. D., & Meadows, S. E. (2007). Elder mistreatment in the nursing hom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8, pp.610-616.
- Lindert, J., de Luna, J., Torres-Gonzales, F., Barros, H., Ioannidi-Kopolou, E., Melchiorre, M. G., & Soares, J. F. (2013).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rsons in seven cities in seven countries in Europe: a cross-sectional communit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8(1), pp.121-132.
- Lowenstein, A., Eisikovits, Z., Band-Winterstein, T., & Enosh, G. (2009). Is elder abuse and neglect a social phenomenon? Data from the First National Prevalence Survey in Israel.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1(3), pp.253-277.
- Malmedal, W., Ingebrigtsen, O., & Saveman, B. I. (2009). Inadequate

- care in Norwegian nursing homes—as reported by nursing staff.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23(2), pp.231-242.
- Malone, M. L., Thompson, L., & Goodwin, J. S. (1993). Aggressive behaviors among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1(8), pp.853-856.
- Massinger, A. M. (2010). Invisible victims: same-sex IPV in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1), pp.2226-2243
- McDermott, S. (2008). The devil is in the details: self-neglect in Australia.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0(3), pp.231-250.
- McDonald, L. (2011). Elder abuse and neglect in Canada: the glass is still half full. *Canadian Journal on Aging*, 30(3), pp.437-465.
- McDonald, L., & Thomas, C. (2013). Elder abuse through a life cours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5(8), pp.1235-1243.
- McDonald, L., Sheppard, C., Hitzig, S. L., Spalter, T., Mathur, A., & Muihi, J. S. (2015). Resident-to-resident abuse: a scoping review. *Canadian Journal on Aging*, 34(2), pp.215-236.
- Mechanic, M. b., Weaver, T. L., & Resick, P. A. (2000).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talking behavior: Exploration of patterns and correlates in a sample of acutely batter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5(1), pp.55-72.
- Mihalic, S. W. & Elliott, D. (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model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1), pp.21-47.
- Moles, K. (2008). Bridging the divide between child welfare and domestic violence services: Deconstructing the change process. *Child and Youth Service Review*, 30(6), pp.674-688
-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2010 *Summary Report*.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3). *Elder mistreatment: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in an aging America Panel to Review Risk and Prevalence of Elder Abuse and Neglect*. R. J. Bonnie & R. B. Wallace(Eds.). Committee on National Statistics and Committee on Law and Justice, Divis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cs Press.
- National Task Force to End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2006). *Violence Against Women Act*
- Naughton, C., Drennan, Lyons, I., Lafferty, A., Treacy, M., Rhelan, A., O'Loughlin, A., & Delaney, L. (2012). Elder abuse and neglect in Ireland: results from a national prevalence survey. *Age and Ageing*, 41, pp.98-103.
- Nurminen, J., Puustinen, J., Kukola, M., & Kivelä, S. L. (2009). The use of chemical restraints for older long-term hospital patients: a case report from Finland.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1(2), pp.89-104.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 Ogg, J., & Bennett, G. (1992). Elder abuse in Britian. *Br Med J*, 305, pp.998-999.
- Ogioni, L., Liperoti, R., Landi, F., Soldato, M., Bernabei, R., & Onder, G. (2007). Cross-sectional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symptoms and potential elder abuse among subjects in home care in Italy: results from the Silvernet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5(1), pp.70-78.
- Oh, J., Kim, H. S., Martins, D., & Kim, H. (2006). A study of elder abuse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3, pp.203-214.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Springer US.
- Olweus, D. (1995). Bullying or peer abuse at School: Fact and intervention. *Current Direction in Psychological Science*, 4, pp.196-200.
- Olweus, D. (1996). Bully/Victim problems at School: Fact and effective interventio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5(1), pp.15-22.
- Omvedt, G. (1990). Violence against women: new movements and new theories in India. *Kali for Women*, 2, p.42
- Paveza, G. J., Cohen, D., Eisdorfer, C., Freels, S., Semla, T., Ashford, W., Gorelick, P., Hirschman, R., Luchins, D., & Levy, P. (1992). Severe family violence and Alzheimer's diseas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Gerontologist*, 32(4), pp.493-497.
- Payne, B. K., & Fletcher, L. B. (2005). Elder abuse in nursing homes: Prevention and resolution strategies and barri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 pp.119-125.
- Pereda, N., G. Guilerab, M. Fornsa and J. Gómez-Benitob (2009), "The International Epidemiology of Child Sexual Abuse: A Continuation of Finkelhor (1994)", *Child Abuse and Neglect*, 33(6), June, pp. 331-342.
- Pillemer, K. A. (1986). *Risk factors in elder abuse: result from a case-control study*. In K. A. Pillemer, & R. S. Wolf(Eds.), *Elder abuse, conflict in the family*(pp. 239-263). Dover, MA: Auburn House.
- Pillemer, K., & Finkelhor, D. (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 random sample survey. *The Gerontologist*, 28(1), pp.51-57.
- Pillemer, K., & Moore, D. W. (1989). Abuse of patients in nursing homes: Findings from a survey of staff. *The Gerontologist*, 29(3),

pp.314-320.

Podkieks, E. (1992). National survey on abuse of the elderly in Canada.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4, pp.5-58.

Price-Robertson, Higgins, Vassallo. (2013). Multi-type maltreatment and polyvictimisation-A comparison of two research frameworks. *Family Matters*, 93, pp.84-98

Prichard, J. (2007). Identifying and working with older male victims of abuse in England.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9, pp.109-127.

Ramsey-Klawnsnik, H., Teaster, P. B., Mendiondo, M. S., Marcum, J. L., & Abner, E. L. (2008). Sexual predators who target elders: Findings from the first national study of sexual abuse in care facilitie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0(4), pp.353-376.

Reay, A. M., & Browne, K. D. (2001). Risk factor characteristics in carers who physically abuse or neglect their elderly dependents. *Aging & Mental Health*, 5(1), pp.56-62.

Renner, L. M. & Slack, K. S. (2006).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understanding intra- and intergenerational connections. *Child Abuse & Neglect*, 30(6), pp.599-617

Rivera, J. (1996).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and the construction of multiple consciousness in the civil rights and feminist movements. *Journal of Law and Policy*, 4(2), pp.463-511.

Rhodes, K. V., Cerulli, C., Dichter, M. E., Kothari, C., & Bang, F. K. (2010). "I didn't want to put them through that": the influence of children on victim decision-making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cas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5), pp.485-493

Salzman, L. E., Green, Y. T., Marks, J. S., & Thacker, S. B. (2000).

- Violence against women as a public health issue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9(4), pp.325-329.
- Santana, M. C., Raj, A., Decker, M. R., Marche, A. L., & Silverman, J. G. (2006). Masculine gender roles associated with increased sexual risk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th adult men. *Journal of Urban Health*, 83, pp.575-585.
- Saunders, B. E. (2003). Understanding children exposed to violence: Toward an integration of overlapping fiel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4), pp.356-376.
- Saveman, B. I., Astrom, S., Bucht, G., & Norberg, A. (1999). Elder abuse in residential settings in Swede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1-2), pp.43-60.
- Scallan, E., De La Harpe, D., Johnson, H., & Hurley, M. (2000). Adult service refusers in the greater Dublin area. *Irish Medical Journal*, 93(7), pp. 208-211.
- Schwartz, D., Dodge, K. A., & Cow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pp.1755-1772.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4), pp.665-675.
- Sengstock, M. C., & Liang, J. (1982). *Identifying and Characterizing Elder Abuse*. Final Report.
- Shetgiri, R., Lin, H., & Flores, G.(2013). Trends i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child bullying perpetration in the United State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1), pp.89-104.
- Shields, A., & Cicchetti, D. (2001). Parental maltreatment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risk factors for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and Child Psychology*, 30, pp.349-363.
- Shugarman, L. R., Fries, B. E., Wolf, R. S., & Morris, J. N. (2003). Identifying older people at risk of abuse during routine screening practice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1(1), pp.24-31.
- Slep, A. M., Cascardi, M., Avery-Leaf, S., & O'Leary, K. D. (2001). Two new measures of attitudes about the acceptability of teen dating aggres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3, pp.306-318.
- Fuller-Iglesias, Smith, Antonucci. (2009). Theories of aging from a life-course and life-span perspective-an overview.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 Geriatrics*, 29, pp.3-25.
- Smokowski, P. R. & Kopasz, K. H. (2005). Bullying in School: An overview of types, effects, Family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Children & Schools*, 27(2), pp.101-110.
- Snowden, M., Sato, K., & Roy-Byrne, P. (2003). Assessment and treatment of nursing home residents with depression or behavioral symptoms associated with dementia: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1(9), pp.1305-1317.
- Sorenson, S. B. & Thomas, K. A. (2009). View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same-and opposite-sex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2), pp.337-352
- Spriggs, A. L., Iannotti, R. J., Nansel, T. R., & Haynie, D. L. (2007). Adolescent bullying involvement and perceived family, peer and school relations: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cross race/ethnicit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3), pp.283-293.
- Steinberg, L. (2000). The family at adolescence: Transition and

- trans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3), pp.170-178.
- Stith, S. M. et al. (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pp.640-654
- Stith, S. M., Smith, D. B., Penn, C. E., Ward, D. B., & Tritt, D. (2004). Intimate partner physical abus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risk factors: A meta-analy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 pp.65-98.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17, p.283.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pp.75-88.
- Straus, M. A. & Douglas, E. M. (2005). A short form of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and typologies for severity and mutuality. *Violence and Victims*, 19(5), pp.507-521.
- Symes (2011) Abuse across the lifespan- prevalenc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Nurs Clin North Am*, 46(4),391-411.
- Teaster, P. B., & Roberto, K. A. (2004). Sexual abuse of older adults: APA cases and outcomes. *Gerontologist*, 44(6), pp.788-796.
- Tremblay, R. E.(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pp.129-141.
- Turner, H.A., Finkelhor, D, & Ormrod, R. (2010). Poly-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8(3), pp. 323-330.

- UNICEF(2012) *Child Maltreatment-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 Veenstra, R., Lindenberg, S., Oldehinkel, A. J., De Winter, A. F., Verhulst, F. C., & Ormel, J. (2005).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elementary schools: a comparison of bullies, victims, bully/victims, and uninvolved pre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1*(4), p.672.
- Wang, J. J. (2005). Psychological abuse behavior exhibited by caregivers in the care of the elderly and correlated facto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Taiw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3*(4), pp.271-280.
- Wetzels, P., & Greve, W. (1996). Older people as victims of family violence. Results of a German victimization survey. *Zeitschrift fur Gerontologie und Geriatrie, 29*(3), pp.191-200.
- WHO (2006).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a guide to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2005).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2012).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retrived from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77432/1/WHO_RHR_12.36_eng.pdf
- WHO (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idom C., Raphael K., DuMont K. (2004). The case for prospective

- longitudinal studies in child maltreatment research: Commentary on Dube, Williamson, Thompson, Felitti, and Anda. *Child Abuse & Neglect*, 28, pp.715-722.
- Wolf, R. S. (2000). The nature and scope of elder abuse. *Generations*, 24(2), pp.6-12.
- Wu, L., Chen, H., Hu, Y., Xiang, H., Yu, X., Zhang, T., & Wang, Y. (2012).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elder mistreatment in a rural community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7(3)
- Yan, E., & Tang, C. S. K. (2001). Prevalence and psychological impact of Chinese elder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1), pp.1158-1174.
- Zhang, Z., Schiamberg, L., Oehmke, J., Barboza, G., Griffiore, R. J., Post, L. A., Weatherill, R. P., Mastin, T. (2011). Neglect of older adults in Michigan nursing home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3(1), pp. 58-74.
- Zink, T., Regan, S., Jacobson, C. J., & Pabst, S. (2003). Cohort, period, and aging effects: a qualitative study of older women's reasons for remaining in abusive relationships. *Violence against women*. 9(12), pp.1429-1441.
- Zolotor, M. & Puzia, A. (2010). Bans against corporal punishment: A systematic review of the laws, changes in attitudes and behaviours. *Child Abuse Review*, 19(4), pp.229-247.

신문기사

머니투데이(2016. 7. 18.) 한 학급씩 컴퓨터실 데려가...학교폭력 실태조사, 신뢰성 의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1813324540633&type=1>

35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데일리모닝(2016. 7. 26.) 학교폭력 감소했다는 실태조사 믿을 수 있나?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6256>

부록 1. 노인학대 경험률 및 발생률 관련 부표

〈부표 3-1〉 지역사회 노인인 학대 경험률: 한국,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연구들

연구	표본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행위자	학대 유형별 발생률
조애저 등 (1999)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한국 6대 대도시	865	자체 개발	지난 1년	가족	신체적: 0.3% 경제적: 2.1% 언어, 심리적: 7.7% 방임: 2.5% 기타: 1.0% 전체: 8.2%
최성재 등 (200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65세 이상의 노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349	15개의 학대 상황(도구)	지난 1년	명시되지 않음	신체적: 2.2-3.9% 경제적: 1.8-5.9% 언어적: 2.1-10.5% 방임: 4.5-8.6% 정서적: 7.7-19.9% 전체: 37.8%
Oh et al. (2006)	65세 이상 노인	한국 서울 송파구	15,230	자체 개발	1개월 (2-3회 이상 빈도)	명시되지 않음	신체적: 1.9% 경제적: 4.1% 언어적: 3.6% 방임: 2.4% 심리적: 4.2% 전체: 6.3%

연구	표본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행위자	학대 유형별 발생률
조애저(2008)	2007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한국 전국 자료	2,325	CTS1 CTS2 한국보건사회 연구원(1999) 노인학대척도 김미혜 등(2006) 노인학대 척도	1년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기타가족원	신체적: 0.2% 경제적: 0.4% 정서적: 5.2% 방임: 2.3% 전체: 6.0%
정경희 등 (2010)	65세 이상 노인	한국 전국 자료	6,745	한국형 노인 학대 선별도구	1년	배우자, 자녀, 자녀배우자, 기타동거가족, 기타비동거가족, 기타	신체적: 0.6% 경제적: 0.7% 정서적: 11.0% 성적: 0.1% 방임: 3.7% 자기방임: 1.8% 유기: 0.5% 전체: 14.6%
정경희 등 (2011)	만 63세 이상 노인 (2008년 기준 60세 이상)	한국 전국 자료	10,540	자체 개발	지난 1년	명시되지 않음	신체적: 0.5% 경제적: 1.5% 정서적: 9.4% 방임: 3.9% 전체: 12.7%
정경희 등 (2014)	65세 이상 노인 (2014년 기준)	한국 전국 자료	10,279	자체 개발	지난 1년	명시되지 않음	신체적: 0.2% 경제적: 0.3% 정서적: 7.3% 방임: 4.3% 전체: 9.9%

연구	표본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행위자	학대 유형별 발생률
Chokkanathan et al. (2005)	65세 이상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노인(확률표본)	인도 대도시 (Chennai)	400	CTS, 자체 개발 (Pillemer 기준을 따름)	1년	누구나	신체적: 4.3% 경제적: 5% 언어적: 10.8% (연간 10회 이상 행위) 발생: 4.3% (연간 10회 이상 행위)
Yan et al. (2001)	60세 이상 노인	중국 홍콩	355	modified CTS	1년		전체: 21.4%
Wu et al. (2012)	60세 이상 노인	중국 농촌	2,039	H-SEAT, VASS	1년	학대 유형별로 다름	신체적: 4.9%(가족) 경제적: 2.0%(누구나) 심리적: 27.3%(친한 사람) 수발자 방임: 15.8% 전체: 36.2%
Somjinda Chompunud et al. (2010)	60세 이상 인지능력이 양호한 노인 (case comparison design)	태국 방콕	233	자체 개발	1년	누구나 (방임만 신뢰관계에 있는 자)	신체적: 2.1% 경제적: 3.8% 심리적: 10.7% 방임: 3.0% 전체: 14.6%
Lowenstein et al. (2009)	65세 이상 도시거주노인 (인지능력 양호)	이스라엘 최초의 전국 조사	1,045	CTS2, 자체개발	1년	신뢰관계에 있는 자	신체/성적: 2% 경제적: 6.4% 언어적: 14.2% 방임: 25.6% 자유의 제한: 2.7% 전체: 35.0%

연구	표본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행위자	학대 유형별 발생률
Cadmus et al. (2012)	60세 이상 여성	나이지리아 Oyo주	404	WHO(2008)의 표준도구	1년	명시되지 않음	신체적: 14.6% 경제적: 13.1% 정서적: 11.1% 성적: 0.04% 방임: 1.2% 진체: 30%
Rahman et al. (2012)	60세 이상 노인	이집트 농촌	1,106	자체 개발	1년	가족	신체적: 5.7% 경제적: 3.8% 심리적: 5.1% 방임: 42.4% 진체: 43.7%
Pillemer & Finkelhor (1988)	65세 이상 노인 (타인 동거노인 과다 추출)	미국 전국 자료	2,020	CTS, OARS (방임)	1년	누구나	신체적: 2.0% 언어적: 1.1% (연간 1회 이상 행위) 방임: 0.4% (연간 1회 이상 행위)
Harris(1996)	65세 이상 노인(확률표본)	미국 전국 자료	842	CTS physical aggression subscale	1년	배우자	신체적 학대: 5.6%
Laumann et al. (2008)	57세 이상 성인 (National,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미국 전국 자료	3,005	H-S/SEAT, VASS	1년	가족	신체적: 0.2% 경제적: 3.5% 언어적: 9.0%

연구	표본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행위자	학대 유형별 발생률
Acireno (2010)	인지능력이 양호한 60세 이상 노인	미국 전국 자료	5,777	Interpersonal violence measure, Acireno EM measure	1년	경제적 학대만 가족으로 한정함.	신체적: 1.6% 경제적: 5.2% 정서적: 4.6% 성적: 0.6% 잠재적 방임: 5.1% 전체(경제적 학대 제외): 14.1%
Beach et al. (2010)	영어 사용 60세 이상 노인(심각한 인지적 손상이 없는 자)	미국 전국 자료	903	Quinn & Tomita (1986) modified CTS	6개월	경제적 학대: 누구나 심리적 학대: 신뢰관계에 있는 자	경제적: 3.5% 심리적: 8.2%
Lachs et al. (2011)	영어 또는 스페인어 사용 60세 이상 노인(인지능력 양호)	미국 뉴욕	4,156	CTS	1년	신뢰관계에 있는 자 (방임은 ADL 또는 IADL의 도움을 주는 자)	신체/성적: 2.24% 경제적: 4.21% 정서적: 1.64% 방임: 1.83% 전체: 7.60%
Dong et al. (2012)	65세 이상 노인	미국 시카고	4,627	Chicago elder self-neglect scale	-	-	흑인남성: 13.2% 흑인여성: 10.9% 백인남성: 2.4% 백인여성: 2.6%

연구	표본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행위자	학대 유형별 발생률
Dong(2014)	중국계 노인	미국 시카고	3,159	CTS, caregiver neglect assessment, financial exploitation assessment	60세 이후	누구나	신체적: 1.1% 경제적: 8.8-9.3% 성적: 0.2% 심리적: 1.1-9.8% 방임: 4.6-11.1% 전체: 13.9-25.8%
Dong(2014)	중국계 노인	미국 시카고	3,159	H-S/EAST, VASS	60세 이후	누구나	전체: 15.0%
Podkiels (1992)	65세 이상 노인	캐나다	2,008	CTS, OARS, 자체 개발	1년	누구나	신체적: 0.5% 언어적: 1.4% 경제적: 2.5%(65세 이후 최소 1회 이상) 방임: 0.4%
Ogg et al. (1992)	60세 이상 노인 (확률표본)	영국 전국 자료	589	자체 개발	최근	가족	신체적: 1.7% 경제적: 1.5% 언어적: 5.6%
Biggs(2009)	66세 이상 노인	영국 전국 자료	2,106	자체 개발	1년/65세 이후	가족, 친구, 돌봄제공자	신체적: 0.7%/1.2% 경제적: 0.4%/0.8% 성적: 0.2%/0.3% 방임: 2.5%/- 전체: 2.6%

연구	표본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행위자	학대 유형별 발생률
Wetzels et al. (1996)	60세 이상 노인	독일	5,711	CTS, 자체 개발	4년	누구나	신체적: 3.4% 언어적: 0.8% (연간 최소 10회 이상) 경제적: 1.3% 방임: 2.7%
Comijs et al. (1998)	65세 이상 노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797	CTS, 자체 개발	1년	누구나	신체적: 1.2% 경제적: 1.4% 언어적: 3.2% 방임: 0.2% (연간 최소 10회 이상)
Kivela et al. (1992)	65세 이상 노인, 치매 및 관련질환 노인 배제	핀란드	1,086	자체 개발	퇴직 후	누구나	전체: 6.7%
Garre-Olmo et al. (2009)	75세 이상 노인	스페인, Girona	676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screen	1년	누구나	신체적: 0.1% 경제적: 4.7% 심리사회적: 15.2% 방임: 16.0% 전체: 29.3%
Kissal et al. (2011)	인지상태가 양호하고, 심각한 65세 이상 노인 (확률표본)	터키	331	자체 개발	6개월	신뢰관계에 있는 자 (경제적 학대만 누구나)	신체적: 4.2% 경제적: 2.1% 성적: 0.9% 심리적: 9.4% 방임: 8.2% 전체: 13.elder abuse3%

연구	표본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행위자	학대 유형별 발생률
Naughton et al. (2012)	65세 이상 노인	아일랜드	2,021	WHO 정의 CTS, 미국과 영국 조사 활용	1년	신뢰관계에 있는 자	신체적: 0.5% 경제적: 1.3% 성적: 0.05% 심리적: 1.2%(연간 최소 10회 이상 등) 방임: 0.3%(연간 최소 10회 이상 등) 전체: 2.2%
Lindert (2013)	60세 이상 노인 (인지능력이 양호한 노인)	유럽 7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도시지역	4,467	modified CTS	1년	명시되지 않음	전체: 12.7-30.8%

주: Cooper, Selwood, & Livingston (2008)의 체계적 리뷰에서 연구 질이 우수한 연구 결과, Dong (2015)의 연구, 국내 경험적 연구를 통합하여 정리함.
 자료: 조예저(2008), 『노인학대실태와 정책방안』,
 장정희 등(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부표 3-2〉 시설 내 노인 학대 발생률: 한국 및 주요 국가

연구	분석 단위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학대 유형별 발생률
정경희 등 (2002a)	한국 106개 무료·실비 요양시설 종사자	전국 자료	1,260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 개념 틀 속에서 제시	지난 1년	신체적: 8.4-11.5%(목적) 정서적: 12.9-22.9%(목적) 경제적: 11.2%(목적) 성적: 32.4%(목적) 방임: 10.6-15.7%(목적) 자기방임: 48.2%(목적)
정경희 등 (2002b)	한국 9개의 무료요양시설과 2개의 실비요양시설 입소노인	전국 자료	337	인권침해 중 기존연구를 통해 발생이 빈번하다고 지적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	- (시설 입소자 인터뷰 가능자 모두 조사한 것으로 기간을 설정하지 않음)	신체적(강제노동): 3.6%(자기보고), 4.6%(목적) 신체·정서적(시설종사자에 의한 폭언·폭행): 6.0%(자기보고), 9.0%(목적) 경제적(노인재산사용): 3.9%(자기보고) 방임(의료처치): 15.9%(자기보고) 성적(옷 벗기기 수치심): 4.8%(자기보고), 11.2%(목적)

연구	분석 단위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학대 유형별 발생률
이인수(2006)	노인생활시설종사자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지역의 무로 및 우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131	한현미(1993)와 최혜영(1995)을 바탕으로 재 조정하여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비인격적 행동 3개 항목, 정서적으로 가해지는 6개 항목으로 구성	지난 1년	신체적: 3.8-10.7%(자기보고) 정서적: 3.0-35.9%(자기보고)
유성호, 강선아 (2008)	9곳의 무로요양시설, 3곳의 무료전문요양시설의 1년 이상 근무한 시설종사자	충남	132	노보 업무수행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중 시설발생 가능한 문항	지난 1년	신체적: 13.0% (목적) 정서적: 55.6%(목적) 재정적: 0.2% (목적) 성적: 0.2% (목적) 방임: 13.0% (목적) 자기방임: 14.8% (목적) 전체: 26.5%(목적)
원영희 등 (2012)	98개 노인복지시설 (요양 64개, 양로 34개)	전국 (수도권 48개, 강원/충청권 14개, 전라권 15개, 경상권 21개)	노인 516명 종사자 498명	자체 개발	지난 1년	신체적: 1.2%(노인), 14.7%(목적) 정서적: 6.4%(노인), 38.87%(목적) 경제적: 2.1%(노인), 4.07%(목적) 성적: 0.4%(노인), 5.9%(목적) 방임: 0.6%(노인), 2.7%(목적) 자기방임: 0.0%(노인), 10.9%(목적)

연구	분석 단위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학대 유형별 발생률
권금주 등 (2016)	86개 요양병원의 대표 작성자 1인	전국 자료	86	노인복지생활시설의 노인학대판정지표 (중앙노보, 2014)	지난 1년	신체적: 5.8%-39.5%(목적) 정서적: 22.1%-39.5% (목적) 성적: 22.1%(목적)
Nurminen et al. (2009)	1개 병원의 장기요양병동 노인환자(71세 이상)	핀란드	154	의료기록	2004/12/20 - 2005/01/09 (의료자료)	신체적 학대: 약물이 신체적 악제로 사용됨. 두 개 이상의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24%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46% 환자에게 부정기적으로 투약됨.
Góergen(2001)	27개 요양시설에서 간호를 정기적으로 하는 직원(18~64세)	독일	361	CTS를 시설용으로 수정	지난 1년	신체: 23.5%(자기보고), 34.9%(목적) 심리: 53.7%(자기보고), 61.8%(목적) 성적: 0.0%(자기보고), 1.1%(목적) 방임: 53.7%(자기보고), 59.6%(목적) 전체: 71.5%(자기보고), 71.2%(목적)
Góergen(2004)	8개 요양시설에서 간호를 정기적으로 하는 직원(16~60세)	독일	81	자체 개발	지난 1년	신체: 19.8%(자기보고), 21.0%(목적) 심리: 37%(자기보고), 56.8%(목적)

연구	분석 단위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학대 유형별 발생률
Ogioni et al. (2007)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노인	이탈리아	4,630	MDS-HC	1998-2002	방임: 27.2%(자기보고), 39.5%(목적) 전체: 70.4%(자기보고), 76.5%(목적) 신체: 억제 6.6%, 설명되지 않는 상처 등 0.2% 심리적: 8.1% 방임: 위생불량 2.6%, 공포 0.7%, 잘못된 케어 0.3% 전체: 10%
Malmedal et al. (2009)	16개 요양시설의 간호인력(16-74세)	노르웨이	616	자체 개발 (부적절한 케어개념으로 접근, 심각한 신체적, 성적 학대는 제외)	지난 2개월	신체: 억제 33%(자기보고), 억제 36-44%(목적) 경제: 1%(목적) 심리: 2-69%(자기보고), 20-40%(목적) 방임: 9-64%(자기보고), 20-68%(목적) 전체: 87%(자기보고), 91%(목적)
Saveman et al. (1999)	499개 비영리요양시설(1개만 영리시설)의 간호인력	스웨덴 2개 도시지역	499	-	지난 1년	신체: 8.2%(목적) 경제: 2.8%(목적) 심리: 7.8%(목적) 성적: 0.2%(목적) 방임: 6.2%(목적) 전체: 2%(자기보고), 11%(목적)

연구	분석 단위	지역	표본 크기	학대측정도구	기간	학대 유형별 발생률
Pillemer et al. (1989)	요양시설(intermediate and skilled nursing facilities) 간호인력	미국	577	CTS, 자체 개발	지난 1년	신체적: 10%(자기보고), 36%(목적) 심리적: 40%(자기보고), 81%(목적)
Jogerst et al. (2006)	Medicare 인증 요양시설의 관리, 감독자	미국 Iowa	409	Iowa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착취, 방임, 성적 학대)	지난 1년	1000명 거주자당 20.7사례 보고, 90%가 당국에 보고되고 29%가 학대로 실체화되었음. 응답자의 54%가 학대 보고나 경향이 있음.
Ramsey-Klawnsnik et al. (2008)	18세 이상 care facilities에 거주하는 취약한 성인	미국	429 (성적 학대로 의심된 사례)	Sexual Abuse Survey의 일부 활용	지난 6개월	27%가 성적 학대로 실체화됨. 성적 학대 124사례 중 49사례는 방임
Griffore et al. (2009)	노인요양시설 입소거주자의 친척	미국 Michigan	1,002	Michigan Survey of Households with Family Members receiving long-term care	지난 1년 (1회 이상)	신체적: 74.2% 경제적: 71.9% 심리적: 79.5% 언어적: 83.6% 성적: 40.0% 방임: 86.9% 부적절한 돌봄(caretaking mistreatment): 82%

주: McDonald(2011)의 리뷰에서 주요 국가의 치료와 국내 경험적 연구를 통합하여 정리함.

부록 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표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필수항목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응답내용은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전문가 조사

전문가 그룹	응답자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경험을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대·폭력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인구집단별 학대 및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생애주기별로 보다 통합적인 정책대응방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부폭력, 노인학대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학대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전문가 조사의 대상은 각 유형별 학대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셨거나,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전문가, 또는 학대 및 폭력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공무원 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학대·폭력 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바쁘시더라도 꼭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별적인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 조사표 파일 송부처 cw@khsa.re.kr

* 조사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류정희 아동복지연구팀장 ☎ 044-287-8112
담당자 : 이우연 전문연구원 ☎ 044-287-82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다음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적으시거나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I. 학대 및 폭력의 심각성 인식 정도

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학대 및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1-1. 생애주기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1-2. 아동학대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1-3. 학교폭력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1-4. 부부폭력, 배우자학대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1-5. 노인학대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2. 귀하께서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회 학대 및 폭력의 발생추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급격히 증가	정차로 증가	변화없음	정차로 감소	급격히 감소
2-1. 생애주기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2. 아동학대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3. 학교폭력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4. 부부폭력, 배우자학대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2-5. 노인학대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 생애주기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이란?

- 아동학대 및 방임, 학교폭력, 부부폭력(배우자폭력), 노인학대 등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기간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을 말합니다.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뿐 아니라 학교, 기관 및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및 폭력도 포함됩니다.
- 가정 외에서 타인 간 발생하는 폭력은 학교폭력과 노인학대 중 일부(시설내 학대)로 제한됩니다.

368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II. 학대 및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3. 다음은 현재 부분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대상 집단별 학대 및 폭력예방 및 대응프로그램들입니다.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류	필요성				효과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음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전혀 효과가 없다	효과적이지 않음 편이다	효과적인 편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실행되지 않고 있다
31. 아동학대									
가정방문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부모교육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발과 후 돌봄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아동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input type="checkbox"/>								
일반인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input type="checkbox"/>								
32. 학교폭력									
인성교육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철소선 삶의 기술 및 시초적 능력 개발훈련	<input type="checkbox"/>								
도라성당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학생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아울림 등)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input type="checkbox"/>								
학교 밖(전통시장) 폭력예방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교내 학교폭력예방 전문가 상시지원프로그램(매울리자립이 등)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학습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굿아이 학교폭력 앱 등)	<input type="checkbox"/>								
33. 부부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부부어울림 상담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생활기술 및 자립훈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부부상담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치료·호복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가해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34. 노인학대									
일반인 대상 노인학대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노인 대상 노인학대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신요양자 대상 노인학대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자립성 제고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비공식적 수발자(족수발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공식적 수발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가해자 대상 교육·치료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III. 학대 및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4. 다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아동보호체계 공공성의 제고
- ② 보호인력의 전문성 제고
- ③ 보호인력의 규모 확충
- ④ 관련 기관 간 연계성 제고
- ⑤ 아동보호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⑥ 가해자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재화해 방지 교육 등)
- ⑦ 사후관리 서비스의 확대
- ⑧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충
- ⑨ 아동보호관련 시설의 확대(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등)
- ⑩ 아동보호관련 예산의 확대
- ⑪ 아동보호 전담업무 공무원의 배치
- ⑫ 기타 (_____)

5. 다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청소년보호체계 공공성의 제고
- ② 보호인력의 전문성 제고 (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 ③ 보호인력의 규모 확충
- ④ 관련 기관 간 연계성 제고 및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연계성 제고
- 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⑥ 가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재화해 방지 교육 등)
- ⑦ 사후관리 서비스의 확대
- ⑧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충
- ⑨ 청소년보호관련 시설의 확대
- ⑩ 청소년보호관련 예산의 확대
- ⑪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 ⑫ 기타 (_____)

370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6. 다음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부부폭력 피해자 보호체제 공공성의 제고
- ② 보호인력의 전문성 제고
- ③ 보호인력의 규모 확충
- ④ 관련 기관 간 연계성 제고(예: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체계와의連携)
- ⑤ 피해자보호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⑥ 가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
- ⑦ 사후관리 서비스의 확대
- ⑧ 가족지원서비스의 확충
- ⑨ 피해자보호 관련 시설의 확대(쉼터 및 보호시설)
- ⑩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관련 예산의 확대
- ⑪ 기타 (_____)

7. 다음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아동보호체제 공공성의 제고
- ② 인력의 전문성 제고
- ③ 인력의 규모 확충
- ④ 관련기관 간 연계성 제고(예: 지역사회 내 공동·민간기관과의 협조관계)
- ⑤ 학대피해노인 보호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⑥ 가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확대(재학대 방지 교육 등)
- ⑦ 사후관리 서비스의 확대
- ⑧ 가족지원서비스 확충
- ⑨ 노인보호관련 시설의 확대(예: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 ⑩ 노인보호관련 예산의 확대
- ⑪ 기타 (_____)

Ⅳ. 학대 및 폭력 관련 실태조사

8. 국내에는 유형별 학대 및 폭력과 관련하여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구집단별 전국의 학대 및 폭력 발생률 및 실태 파악은 학대예방 및 대응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학대 및 폭력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얼마나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항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8-1. 아동학대	조사주기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도구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의 시행방법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발생률 등 결과의 타당도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시행주체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8-2. 학교폭력	조사주기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도구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의 시행방법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발생률 등 결과의 타당도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시행주체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8-3. 부부폭력, 배우자학대	조사주기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도구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의 시행방법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발생률 등 결과의 타당도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시행주체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8-4. 노인학대	조사주기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도구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의 시행방법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발생률 등 결과의 타당도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조사시행주체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 참고 사항

- 1) 아동학대실태조사(보건복지부)는 2011년 최초 실시된 바 있으며, 그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 실시)에 통합되어 실시되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실태조사에 비해 단순화된 아동학대관련문항(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학교폭력실태조사(교육부)는 2012년 최초 실시된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되고 있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내용은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경험과 예방교육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3) 가정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는 2004년 최초 실시되었으며, 3년 주기로 하여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3년에 실시되었습니다.
- 4) 노인학대실태조사는 2009년 최초 실시된(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후 '노인실태조사(2011년, 2014년, 3년 주기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음)에 의해 따라 노인학대실태조사에 비해 단순화된 노인학대관련 문항(학대경험 유무 및 가해자 대처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72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9.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V.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현황

10. 귀하는 각 폭력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정책대응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정책개선방향·방안
10-1. 아동학대		
10-2. 학교폭력		
10-3. 부부폭력, 배우자학대		
10-4. 노인학대		

11. 귀하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을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조치가 있다면, 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VI. 학대 및 폭력관련 법제화 수준

12.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학대 및 폭력과 관련된 법이 제정 및 개정되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세무유형별 법제화에 있어서 향후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1. 아동학대 관련 법
12-2. 학교폭력 관련 법
12-3. 부부폭력 관련 법
12-4. 노인학대 관련 법

VII. 학대 및 폭력에 대응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학대 및 폭력 유형별 또는 모든 종류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3.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의 각 학대유형별로 국가행동계획(NAP)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각 학대유형별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항	수립 여부		필요여부	
	수립	미수립	필요	불필요
5-1. 이혼학대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5-2. 학교폭력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5-3. 부부폭력, 배우자학대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5-4. 노인학대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5-5. 그 밖의 유형 (무엇? _____)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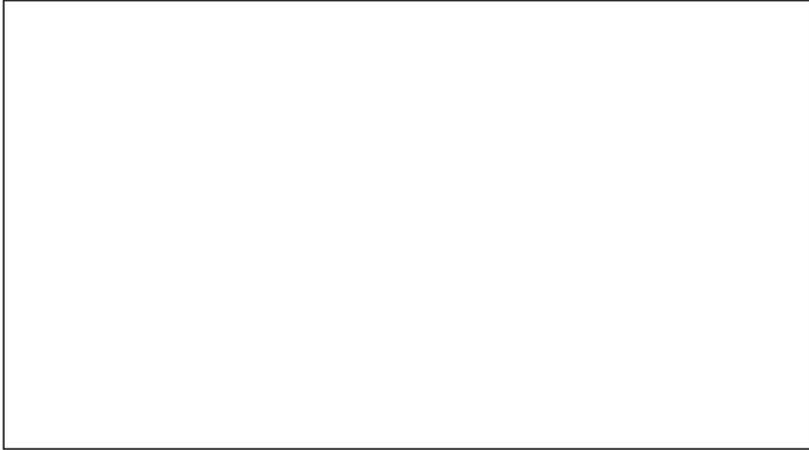
14. 귀하는 국민의 생애를 가로질러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귀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이 별도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결문 14-1로)
- ② 현행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개선(→결문 14-2로)
- ③ 아니요(→결문 15로)

➤ 참고사항

-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 수립되어 있으며, 국가의 인권정책의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행되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입니다.

14-1. (질문 14에서 ㉠로 응답 시)귀하는 확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적인 국가청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5쪽)



14-2. (질문 14에서 ㉡로 응답 시)귀하는 우리 사회의 확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하여 2007년 이후 수립 추진 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또는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III.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통합적 접근

15. 귀하가 전문적으로 연구 또는 종사하시는 대상 인구집단의 가해자 및 피해자들이 그들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서 다른 유형의 학대 또는 폭력(가해 및 피해경험을 모두 포함)을 얼마나 빈번하게 경험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전문영역	기타 폭력의 유형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경험하지 않는 편이다	중등 경험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 경험한다
이동학대 ()	15.1. 이동학대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15.2. 학교폭력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부부폭력()	15.3. 부부폭력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노인학대()	15.4. 노인학대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16. 귀하께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학대 및 폭력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학대·폭력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② 학대·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 국민 인식개선
 ③ 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개선과 기반확충
 ④ 학대·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화
 ⑤ 가족기능의 복원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⑥ 기타 ()

17.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접근에 기초한 통합적인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 현재 거주지역 ()	① 도시 ② 농어촌
2. 성 ()	① 남성 ② 여성
3. 연령	만 _____세
4. 소속 ()	①대학 ②연구기관 ③행정기관 ④민간기관 ⑤기타()
5. 학위특력 관련업무 ()	①아동학대 ②학교폭력 ③부부폭력 ④노인학대 ⑤기타()
6.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	_____년 _____개월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